

韓中 經濟協力과 在中國 同胞의 役割

政策研究 94-10

金 泰 弘
金 時 中

1994. 12



對外經濟政策研究院

韓中 經濟協力과 在中國 同胞의 役割

金 泰 弘
金 時 中

1994. 12



對外經濟政策研究院



序 言

지난 수 년간 韓國과 中國의 經濟交流는 급속한 증가를 보여왔다. 더우기 韓中間의 經濟交流 增加는 商品貿易의 증대에 그치지 않고 상당 규모의 資本과 人力의 移動에까지 이르고 있어서, 兩國 經濟의 相互依存度가 급속히 심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要素賦存의 상이성, 經濟發展 段階의 적절한 차이, 地理的·文化的 인접성 등 兩國 經濟間의 높은 補完性を 반영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兩國 經濟의 相互依存度가 심화되는 현재의 趨勢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韓國과 中國의 經濟協力이 증대되고 있는 과정에서 독특한 役割이 기대되는 集團이 존재하는 데, 이들은 中國에 거주하는 우리 民族인 이른바 朝鮮族同胞이다. 이들은 양국의 언어와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양국간의 經濟協力の 深化에 여러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韓國과는 오랜기간 단절되어 中國內의 少數民族으로 살아온 이들과의 접촉이 여러 방면에서 급격히 증대되면서 다소의 副作用도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韓中 經濟協力の 추진과 관련한 朝鮮族同胞의 役割 및 限界에 관한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研究가 이루어진 것은 시의적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本 研究는 東國大學校의 金泰弘 教授와 本 研究院의 金時中 博士가 공동 저술한 것으로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 研究가 본 주제에 관심을 가진 政府, 學界, 業界의 관련자들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著者들은 本 研究를 위한 資料收集에 큰 도움을 준 延邊大學의 朴承憲 教授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다. 또한 本 研究에 포함된 說問調査 발송 및 회수에 도움을 준 對外經濟政策研究院 北京駐在員 趙顯竣 씨, 설

문조사 결과분석에 도움을 준 本 研究院의 黃惠京 씨, 원고정리에 수고
를 해 준 鄭美善 씨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다.

1994年 12

對外經濟政策研究院

院 長 柳 莊 熙

目 次

I. 序 論	9
II. 中國의 少數民族 問題와 關聯政策	11
1. 中國의 少數民族 概念	11
2. 中國의 少數民族 現況	13
3. 中國 少數民族 問題의 特徵	20
4. 中國의 少數民族政策	23
III. 中國 朝鮮族同胞 社會의 現況과 特徵	31
1. 流入過程	31
2. 人口 및 地域別 分布	34
3. 朝鮮族의 民族自治 現況	38
(1) 幹部의 民族化	39
(2) 法規의 整備	42
(3) 經濟·財政上의 自治	43
(4) 言語·教育·文化側面의 民族自治	45
4. 經濟·社會生活의 特徵과 水準	49
5. 새로운 挑戰	52
IV. 韓·中 經濟協力과 朝鮮族同胞의 役割 및 限界	57
1. 韓國企業 中國進出에서의 役割과 限界	57
(1) 韓·中經協 擴大와 朝鮮族同胞	57
(2) 韓國企業人들의 朝鮮族 勤勞者에 대한 評價	60
(3) 朝鮮族 勤勞者들의 韓國企業人에 대한 評價	67
(4) 相互不信의 背景과 問題點	70

2. 國內勞動力 供給의 役割과 問題點	73
(1) 朝鮮族同胞 勞動者의 概念	73
(2) 合法的 就業의 事例	76
(3) 便法的 就業의 現況	79
(4) 不法的 就業의 實態	82
(5) 勞動環境과 問題點	84
3. 南北韓 經濟協力促進을 위한 役割과 限界	88
(1) 南北韓 間接交流의 仲介役割	88
(2) 羅津·先鋒地域 進出의 同伴者 役割	90
(3) 三角協力關係의 限界와 問題點	93
V. 對應方向 및 政策課題	95
1. 基本方向	97
2. 相互認識과 姿勢變換의 必要性	98
3. 教育訓練의 必要性	99
4. 延邊地域에 대한 社會經濟 開發支援	100
5. 關聯 民間團體活動의 活性化	101
6. 研修生 制度 및 出入國管理 政策의 改善	102
7. 海外僑胞問題 專擔機構의 設立	103
〈參考文獻〉	105
〈附錄〉	109
1. 附表	111
2. 說問調查 結果分析	116
3. 說問紙	127

表 目 次

〈表 II-1〉 中國의 主要 少數民族 人口	15
〈表 II-2〉 主要 少數民族의 居住地域 分布	17
〈表 II-3〉 少數民族 自治區域의 主要 經濟指標	19
〈表 III-1〉 中國 東北地方 朝鮮族 人口의 推移(1910-1942)	33
〈表 III-2〉 中國內 朝鮮族 人口의 推移(1953-1990)	34
〈表 III-3〉 朝鮮族 人口의 主要 分布地域	36
〈表 III-4〉 延邊朝鮮族自治州의 市·縣別 朝鮮族 人口 및 比重	37
〈表 III-5〉 延邊朝鮮族 自治州의 財政收支	45
〈表 III-6〉 教育程度別 人口比率(1990年)	49
〈表 III-7〉 中國百萬以上民族의 教育程度와 文盲半文盲率(1982年)	50
〈表 III-8〉 朝鮮族 人口의 職業構造(1982年)	51
〈表 IV-1〉 初期 中國進出時 朝鮮族同胞의 役割과 協力類型	61
〈表 IV-2〉 朝鮮族 從業員의 移職率	62
〈表 IV-3〉 朝鮮族 從業員의 生産性 寄與度	63
〈表 IV-4〉 朝鮮族 人力 活用上의 問題點	64
〈表 IV-5〉 韓國企業人과 朝鮮族 從業員間의 葛藤原因	65
〈表 IV-6〉 향후 韓國企業의 中國進出時 朝鮮族의 活用方案	65
〈表 IV-7〉 中國 朝鮮族同胞의 年度別 出入國者 現況	75
〈表 IV-8〉 合法的 就業관련 查證所有 朝鮮族同胞 數(1993年)	77
〈表 IV-9〉 朝鮮族同胞 船員의 國籍商船 乘船人員現況	78
〈表 IV-10〉 外國人 産業技術研修 查證 發給現況	80
〈表 IV-11〉 産業技術研修生 國家別 配定人員 및 入國者 數	81
〈表 IV-12〉 中小業體의 國家別 外國人研修者 必要人員	82
〈表 IV-13〉 中國 朝鮮族同胞의 不法滯留者 現況	84
〈表 IV-14〉 國家別 産業技術 研修生 離脫者 現況(94년 11월말 기준)	84

附表目次

〈附表 1〉 中國 朝鮮族人口의 地區別 分布	111
〈附表 2〉 朝鮮族人口의 東北地域內 分布推移	112
〈附表 2-1〉 吉林省 各市·縣의 朝鮮族 人口推移 (延邊自治州 地域除外)	112
〈附表 2-2〉 黑龍江省 各市·縣의 朝鮮族 人口 推移	113
〈附表 2-3〉 遼寧省 各市·縣의 朝鮮族 人口 推移	114
〈附表 3〉 中國의 朝鮮族 自治區域	115

I. 序 論

1980년대 후반 이후 中國과의 交流가 多方面에 걸쳐 확대되면서 등장하게 된 새로운 문제중 하나로서 흔히 ‘朝鮮族’이라고 불리우는 在中國同胞의 문제를 들 수 있다. 19세 중반 이후 거의 1세기에 걸쳐 中國에 유입되어 정착한 우리 民族의 존재가 中國과의 관계개선에 수반하여 우리 앞에 드러난 것이다. 해방 이후 40여 년간 우리와 단절된 상태에서 朝鮮族同胞들은 역사의 여러 굴곡 속에서도 中國내 少數民族의 하나로서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생존해 왔으며, 특히 우리의 言語·文化를 상당부분 유지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등장하였다.

더우기 최근에는 韓中間의 人的·物的 交流가 급격히 증대되면서, 200만에 달하는 在中國同胞의 役割에 대한 논의가 나타나게 되었다. 한편에서는 韓中兩國의 言語와 文化에 익숙한 朝鮮族同胞들이 兩國 經濟交流의 확대 과정에서 仲介者로서 혹은 代理者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타났고, 다른 한편에서는 中國과 核心的인 부문의 經濟協力を 증진시키는 방면에서는 朝鮮族의 役割의 限界가 뚜렷하다는 주장도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의 論議가 충분히 진전되지 못한 상태에서 최근 韓中間의 각종 交流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에 수반하여 中國 朝鮮族同胞와 관련한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朝鮮族同胞들의 國內流入 및 韓國人들의 中國訪問과 貿易·投資 활동의 전개 과정에서 나타난 朝鮮族同胞들과의 접촉에서 여러 副作用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言語·文化上的 미묘한 차이, 國籍의 상이성, 經濟的 水準의 차이, 經濟活動 方式의 차이 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상호간 접촉의 갑작스러운 증대가 여러 問題點을 야기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제는 韓中間 經濟協力を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朝鮮族同胞의 役割과 問題點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보고, 앞으로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야할

시점에 이르렀다.

본 연구는 韓中 經濟協力과 在中國同胞의 役割이라는 主題를 본격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제Ⅱ장에서는 中國의 少數民族 現況과 少數民族政策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어서 제Ⅲ장에서는 中國 朝鮮族同胞 社會의 現況과 特徵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본 연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제Ⅳ장에서는 韓中經濟協력에 있어서의 朝鮮族同胞의 役割과 限界에 대하여, 우리기업의 中國進出, 朝鮮族 勞動力의 國內流入, 南北韓 經濟協力の 仲介 등의 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어서 제Ⅴ장에서 이 주제와 관련한 국내에서의 對應方向 및 政策課題를 정리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끝을 맺었다.

본 연구의 共著者 사이의 역할분담은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로 第二章과 第三章은 金時中 博士가 집필하였고, 第四章과 第五章의 대부분은 金泰弘 教授가 집필하였다. 그러나 第四章의 一節의 기초가 되는 中國進出 企業에 대한 說問調査 및 分析은 金時中 博士의 책임하에 이루어졌고, 第五章의 政策課題 부분의 일부를 金時中 博士가 추가하였다.

II. 中國의 少數民族 問題와 關聯政策

세계의 여러 국가는 그 영토내에 多數의 民族이 거주하는 多民族國家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 多民族國家 중 일부는 큰 갈등없이 평화로운 공존을 유지하고 있지만, 상당 수의 국가에서는 民族間 問題 혹은 少數民族 問題가 잠재적 혹은 현실적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社會主義 體制의 몰락과 더불어 舊蘇聯에서는 민족문제가 주요 원인이 되어 국가의 분열이 나타났고, 舊유고슬라비아에서는 민족간 갈등이 內戰의 형태로 폭발하기도 하였다. 또한 다른 종류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美國에서도 흑인문제를 중심으로 한 人種間 葛藤이 지속적인 難題로 남아 있다.

이와 같이 多民族國家에 있어서의 民族問題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며, 內在的으로 갈등의 소지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中國은 오랜 역사를 통해 형성된 多民族國家로서 상당히 독특한 성격의 民族問題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中國內 少數民族의 하나인 朝鮮族 관련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中國의 少數民族 問題 전반과 中國의 少數民族政策에 대한 이해가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本章에서는 中國의 少數民族 問題 및 關聯政策에 대하여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中國의 少數民族 概念

中國은 오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여러 차례에 걸친 영토 확장과 漢族과 他 民族과의 뒤섞임 과정을 거쳐 형성된 多民族國家다. 이에 따라 中國內 현존하고 있는 여러 민족들이 중국내의 소수민족으로 존재하게 되는 과정이나 이유도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일부 민족은 漢族의 영토확장 과정에서 정복되기도 하고 또 다른 일부 민족은 중국을 정복하

여 일정기간 통치한 후에 중국에 흡수되기도 하였다.” 이밖에 이민을 통하거나 종교적 소수집단으로 형성되는 등의 경로를 통하여 중국내 소수 민족으로 등장하기도 하였다. 또한 中國이 漢族 중심의 국가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중국의 영토적 광대성과 긴 역사적 과정에서 漢族이 여러 유파로 갈라지게 되었다는 점도 문제를 복잡하게 한다.²⁾ 결국 이러한 연유로 中國에서의 民族 혹은 少數民族 概念은 상당히 독특한 성격을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과거 스탈린은 民族을 정의하는 객관적 기준으로써 “공통의 언어, 공통의 거주지역, 공통의 경제생활, 공통의 문화”를 제시하였고, 中國(中華人民共和國)에서도 이 개념이 대체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소련에 비해 중국에서는 이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았고, 특히 70년대말 이후에는 이 개념이 중국의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여러 측면이 부각되면서 民族 概念에 대한 논란이 나타났다. 결국 中國에서는 民族의 개념을 정의하는 데에 있어서 위와 같은 객관적인 기준과 더불어 주관적인 同類意識, 즉 民族意識의 존재 여부가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中國내 回族은 인종 및 언어에 있어서 漢族과 동일하고 지역적으로도 전국에 散在되어 있지만 (뒤의 <表 II-2> 참조) 宗教(이슬람)가 핵심적인 근거가 되어 별개의 민족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위구르족의 경우 터키어와 더불어 일부 몽골어가 사용되기도 하는 등 언어의 공통성이 불완전 하지만 동일민족으로 간주된다. 또한 中國의 일부 少數民族은 오랜 역사의 과정에서 자연

-
- 1) 中國 歷史에 있어서 여러 차례에 걸쳐 非漢族이 지배세력이 되어 다수의 漢族을 통치한 시기가 있었다. 대표적인 예가 여진족(만주족)의 金과 淸, 몽고족의 元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역사의 귀결이나 문화적 중심 그리고 人口의 구성으로 보아 中國이 漢族 중심의 국가라는 것은 명백하다.
 - 2) 漢族이 사용하는 언어에 있어서 또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 北京語, 蘇州語, 廣東語, 閩南語, 客家語 등 다양한 언어가 존재한다. 또한 客家와 같은 漢族내에서의 少數集團이 존재하여 깊은 연대감을 갖고 現代 中國歷史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客家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Erbaugh(1992) 참조.

적으로 혹은 강제에 의해 漢族에 문화적으로 상당히 동화되는 현상도 나타나, 개별 少數民族에 따라 민족을 규정하는 개념 자체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中國에는 명확하게 정의된 民族 혹은 少數民族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다양한 文化的·歷史的 요소들을 종합하여 民族을 정의하여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中國의 少數民族은 “漢族과 구별되는 文化的·歷史的 특성을 갖고 中國에 거주하는 集團”으로 광범하게 정의되고, 융통성 있게 적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中國政府가 1950년대초 少數民族을 지정하려고 했을 때 400여 집단이 少數民族으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1953~57년 기간중 엄밀한 연구·조사를 실시한 결과 많은 집단이 漢族에 속하거나 동일한 少數民族에 속하는 것으로 판정되어, 그 중 54개의 少數民族이 國務院에 의해 정식으로 인정되었다. 그후 1979년에 基諾族이 추가로 공인되어 현재는 中國에 漢族을 포함하여 56개 民族이 존재하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위와 같은 中國의 少數民族 概念이 갖는 특징으로서는 民族의 개념이 中國이라는 國家 개념에 종속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즉 中國은 民族國家의 필연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상당히 융통성 있는 개념으로써 역사상 中國의 통치권이 미쳤던 모든 民族을 “少數民族”으로 자국민의 개념 안에 포함하려고 한다고 판단된다.

2. 中國의 少數民族 現況

中國이 1990년 전국적으로 실시한 제4차 인구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中國에는 55개 少數民族이 존재하며, 그 인구는 9,057만명으로 中國의 총인구 11억3천만명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 中國의 少數民族의 인구총수는 1953년 제1차 인구센서스 시기의 3,401만(총인구의 5.9%),

1964년 제2차 인구센서스 시기의 3,988만(총인구의 5.8%), 1982년 제3차 인구센서스 시기의 6,643만(총인구의 6.6%)과 비교하여 볼 때, 특히 지난 10년간 뚜렷한 증가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³⁾ 즉 1982~90년 기간중 少數民族 인구총수는 35.8% 증가하여 연평균 3.95%의 증가율을 보인 셈이다. 이는 中國 總人口가 같은 기간중 연평균 1.5%의 증가율을 보인 것과 비교할 때 2.6배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기간 중 漢族人口의 연평균 증가율 1.3%에 비해서는 3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少數民族 人口가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모두 급증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로 中國政府가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는 家族計劃(中國에서는 計劃生育이라고 함) 정책이 少數民族에 대해서는 상당히 융통성 있게 적용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즉 漢族에 대하여 ‘일가구 일자녀’ 원칙이 철저히 적용되는 반면, 少數民族에 대해서는 일부 도시지역을 제외하고는 ‘일가구 이자녀 혹은 삼자녀’까지도 허용되고 있다. 또한 中國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보건·의료 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짐에 따라 특히 열악한 환경에 있던 少數民族의 사망율이 감소되는 효과도 있었다. 이 이유로 少數民族 人口의 자연증가율이 漢族 人口의 자연증가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이다.⁴⁾

少數民族 人口增加를 설명하는 두번째 중요한 요인은 과거 자신의 少數民族 귀속을 숨겨왔던 사람들이 여러 이유로 원래의 귀속 民族을 되찾는 현상이 나타난 것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舊 淸朝의 지배계층이었던 滿族의 경우 상당 정도 漢族文化에 동화되었고 또한 정치적 탄압의 우려 등으로 인하여 과거에는 자신의 民族을 漢族으로 등록하는 현상이 두드러졌었다. 그러나 改革·開放期의 전반적인 자유화 분위기에 편승하여, 또한 少數民族에 대한 몇 가지 특혜를 누리기 위하여 자신의 원래 민족귀속을 되찾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다. 이는 滿

3) 이상의 통계는 中國民族經濟(1993), p.263에 근거.

4) 이러한 현상의 유일한 예외가 朝鮮族으로, 인구증가율이 漢族 보다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族의 인구가 1982~1990 기간중 430만에서 982만으로 128%(연평균 11.9%) 증가한 것에서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⁵⁾(表 II-1 참조).

한편 中國의 少數民族들은 人口 수에 있어서 큰 편차를 나타내고 있

〈表 II-1〉 中國의 主要 少數民族 人口 (단위: 명, %)

민족별	1982년	1990년	연평균인구증가율
壯族	13,383,086	15,555,820	1.90
滿族	4,304,981	9,846,776	10.90
回族	7,228,398	8,612,001	2.21
苗族	5,021,175	7,383,622	4.94
위구르族	5,963,491	7,207,024	2.40
彝族	5,453,564	6,578,524	2.37
土家族	2,836,814	5,725,049	9.17
蒙古族	3,411,367	4,802,407	4.37
티베트族	3,847,875	4,593,072	2.24
布依族	2,119,345	2,548,294	2.33
侗族	1,426,400	2,508,624	7.31
瑤族	1,411,967	2,137,033	5.32
朝鮮族	1,765,204	1,923,361	1.08
白族	1,132,224	1,598,052	4.40
哈尼族	1,058,806	1,254,800	2.15
黎族	887,107	1,112,498	2.87
카자흐族	907,546	1,110,758	2.56
傣族	839,496	1,025,402	2.53
佤族	371,965	634,700	6.90
리수族	481,884	574,589	2.22
기타	2,581,646	3,834,839	3.88
소수민족 총계	66,434,341	90,567,245	3.95
漢族	936,674,944	1,039,187,548	1.31
총인구	1,003,913,927	1,130,510,638	1.50

資料: 『中國統計年鑑』, 1992, pp.83.

다. 最多 少數民族은 壯族으로서 1990년 기준 1550만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어서 滿族(982만), 回族(860만), 苗族(740만), 위구르족(721만), 彝族(657만), 土家族(570만)의 순으로 7개 소수민족이 人口 500만 이상의 대규모 민족을 형성하고 있다(〈表 II -1〉 참조). 朝鮮族은 192만으로서 13번째로 많은 少數民族을 형성하고 있는데, 人口 100~500만의 중규모 少數民族은 11개가 있다. 한편 珞巴族(2,312명), 高山族(2,909명), 赫哲族(4,245명), 塔塔爾族(4,873명) 등은 1990년 현재 人口 5,000명에도 못미치는 미미한 규모의 소수민족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人口 만명이하의 소수민족도 7개나 존재한다.

中國의 少數民族들은 거의 中國 전역에 걸쳐 거주하고 있다. 특히 中國정부는 少數民族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을 自治區域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현재 自治區域으로서는 5개의 自治區(中國의 省級 행정구역),⁶⁾ 30개의 自治州(地區級 행정구역), 121개의 自治縣 및 1,500여 自治鄉이 존재하고 있다.⁷⁾ 이 결과 55개의 소수민족중 45개 민족이 18개 省(5개 自治區 포함)에 걸쳐서 일정한 급의 民族自治區域들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少數民族自治區域의 총면적은 617만km²로서, 中國의 전체 국토면적의 6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는 약 7,100만의 少數民族 人口(해당지역 人口의 45.6%)를 포함한 1억 5,640만의 人口가 살고 있다(1992년). 이와 같이 少數民族自治區域의 면적이 큰 것은 新疆(166만km²), 티벳(120만km²), 內蒙古(114만km²) 등 변방의 광대하고 人口밀도가 낮은

5) 滿族 이외에 위의 8년 기간중 100% 이상의 人口증가를 보인 소수민족으로는 土家族(102%), 仡佬族(8배), 錫伯族(107%), 러시아족(4.6배), 赫哲族(2.9배)이 있다.

6) 中國의 30개 省級 행정구역 중에서 廣西 壯族自治區, 新疆 위구르自治區, 寧夏 回族自治區, 內蒙古 自治區, 티벳(西藏) 自治區가 이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雲南, 貴州, 湖南, 青海省 등에는 비교적 많은 수의 소수민족인이 거주하고 있다.

7) 中國民族經濟(1993), p.215, 이외에도 內蒙古에는 8개의 盟이 縣級으로, 51개의 旗와 3개의 自治旗가 鄉級으로 존재한다.

지역이 少數民族 自治區에 해당하는 것에 기인한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省級의 少數民族自治區에 있어서 少數民族 人口의 비중은 상당히 다양하여, 티벳(97.1%)과 같이 소수민족이 대부분인 지역, 新疆

<表 II -2> 主要 少數民族的 居住地域 分布

民 族	主 要 居 住 地 域
壯 族	廣西, 雲南, 廣東
滿 族	遼寧, 河北, 黑龍江, 吉林, 內蒙古, 北京
回 族	寧夏, 甘肅, 河南, 新疆, 青海, 雲南, 河北, 山東, 安徽, 遼寧, 北京, 內蒙古, 天津, 黑龍江, 陝西, 貴州, 吉林, 江蘇, 四川
苗 族	貴州, 湖南, 雲南, 四川, 廣西, 湖北, 海南
위구르族	新疆
彝 族	雲南, 四川, 貴州
土 家 族	湖南, 湖北, 四川, 貴州
蒙 古 族	內蒙古, 遼寧, 吉林, 河北, 黑龍江, 新疆, 青海, 甘肅
티벳族	西藏, 四川, 青海, 甘肅, 雲南
布 依 族	貴州, 雲南
侗 族	貴州, 湖南, 廣西, 湖北
瑤 族	廣西, 湖南, 雲南, 廣東, 貴州
朝 鮮 族	吉林, 黑龍江, 遼寧, 內蒙古
白 族	雲南, 貴州, 湖南
哈 尼 族	雲南
黎 族	湖南, 貴州
카자흐族	新疆, 甘肅
傣 族	雲南
佤 族	福建, 浙江, 江西, 廣東
리 수 族	雲南, 四川
畬 族	雲南

資料 : 中國統計年鑑(1993), p. 70.

(62.0%)과 같이 소수민족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지역, 廣西(38.6%), 寧夏(33.8%), 內蒙古(18.9%) 등 소수민족이 과반수에도 못미치는 지역 등이 있다는 사실이다.⁸⁾

中國의 少數民族중 고유의 언어와 문자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民族은 16개이며, 나머지 대부분의 民族은 고유의 언어를 가지고 있으나 문자를 갖지 못하고 있다. 한편 滿族과 回族의 경우는 언어와 문자를 모두 漢族의 것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한편 상당 수의 소수민족들은 고유의 종교를 갖고 있는데, 특히 이슬람교(回族, 위구르족, 카자흐족 등), 라마교(티벳족, 蒙古族, 土族 등)는 그 영향력이 큰 종교라고 할 수 있다.

少數民族의 경제적 발전 정도는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지난 십여 년간 경제성장이 가속화되어온 東南沿海地方에 비해서는 크게 뒤떨어져 있다. 이러한 상황은 대부분의 少數民族이 農業 중심의 經濟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少數民族은 아직도 수렵·목축 등의 자연경제를 벗어나지 못한 데에 기인한다. 더욱이 이들의 주요 거주지역은 內陸·邊方에 위치하여 改革·開放에 따른 經濟成長의 혜택을 상대적으로 덜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少數民族自治區域의 주요 經濟指標를 보여주고 있는 <表 II-3>에 잘 나타나 있다. 앞서서도 소개한 바와 같이 전국토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이 지역에는 총인구의 13.3%에 해당하는 1억5600여만 명이 거주하는데, 이중 약 46%가 소수민족이다. 이 지역의 經濟가 農業(목축 포함)위주의 低開發 經濟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통계에서 잘 드러난다. 즉 이 지역의 GDP는 전국의 9.1%를 차지하여 1인당 GDP는 전국 평균의 68.4%에 불과하며, 工農業總生産額은 전국의 7.0%를 차지하여 인구 1인당 工農業生産額은 전국 평균의 52.6%에 불과하다. 특히 工業總生産額은 전국의 5.3%를 차지하여 1인당으로는 전국 평균의

8) 中國統計年鑑(1993), p.69.

〈表 II-3〉 少數民族 自治區域의 主要 經濟指標

지 표	단 위	1985	1992	1986~1992 연평균성장률(%)	전국점유비 (1992)(%)
인 구	萬名	13548	15642	2.1	13.3
G D P	億元	n/a	2,186.6	n/a	9.1
공농업총생산액	億元	801.0	3,053.6	10.0	7.0
농업총생산액	億元	351.3	1,207.7	5.7	14.3
공업총생산액	億元	449.7	1,845.9	13.1	5.3
농업관계지표					
경지면적	萬ha	1,747	1,739	n/a	18.2
관개면적	萬ha	685	746	n/a	15.4
양곡생산량	萬톤	4,006	5,670	4.5	12.8
면화생산량	萬톤	19.36	67.89	19.6	15.1
대가축*보유두수(연말)	萬頭	4,749	5,343	1.5	39.6
양 보유두수(연말)	萬마리	9,757	12,133	1.5	58.5
공업관계지표					
철강생산량	萬톤	232.5	435.2	10.9	5.4
목재생산량	萬m ²	1,826	1,808	0.2	29.3
면포생산량	億m	5.42	6.93	3.4	6.2
발 전 량	億kwh	389.0	847.0	10.7	11.2
상업관계지표					
소매상품 총액	億元	211.60	1,021.81	13.4	9.3

* 소, 말, 나귀, 노새, 낙타를 포함.

資料: 中國統計年鑑(1993) 및 中國民族經濟(1993).

39.8%에 불과하여, 이 지역의 工業이 크게 낙후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 지역의 商品小賣總額도 전국의 9.3%를 차지하여 인구비중에 크게 못 미친다. 반면 農業總生産額은 전국의 14.3%로서, 인구비중을 약간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耕地面積 및 灌溉面積의 비중은 각각 18.2%, 15.4%로서 農業의 토지생산성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침을 알 수 있다. 다만 특

정으로서 80년대 중반이후 면화생산 증가율이 괄목할 만 하고 또한 각종 가축의 보유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한편 中央政府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少數民族自治地域에 대한 財政支援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온 것으로 나타난다. 즉 少數民族地域의 財政은 지속적인 적자를 보여왔고 이 財政赤字를 中央政府의 보조로 보전해 온 것이다.⁹⁾ 中央政府는 소수민족 주민들의 불만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이 지역의 자원개발 등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재정적 보조를 실시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당 수의 少數民族人들은 中央政府가 상대적으로 소수민족지역의 경제개발을 등한시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 지역의 經濟開發이 추진되는 경우도 그것이 다른 지역의 經濟開發을 위한 手段이거나 그 결실이 이 지역으로 이주한 漢族에게 돌아간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3. 中國 少數民族 問題의 特徵

中國도 다른 여러 多民族國家와 마찬가지로 매우 복잡하고 또한 잠재적으로는 심각한 少數民族 問題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中國은 역사적·문화적으로 다양한 특징을 갖고 중국내에 존재하게 된 여러 민족의 共存共榮, 즉 多樣性하에서의 共存과 發展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기본적인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中國은 漢族의 文化的 優越성과 中國의 政治的·經濟的 實力에 기초하여 異民族을 성공적으로 同化시켜 漢族 중심의 國家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도 中國이 큰 문제없이 少數民族의 불만을 흡수하여 나갈 수 있을 지는 쉽게 답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9) 1992년도 少數民族自治地域 전체의 財政收入은 210億元, 財政支出은 367億元으로 157億元의 財政赤字를 보였다.(中國民族經濟(1993), p.401)

中國의 少數民族 인구는 총인구의 8% 수준으로 100여개 少數民族이 총인구의 49%를 차지하고 있었던 舊蘇聯의 경우에 비하면¹⁰⁾ 그 비중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또한 最多 少數民族인 壯族 등 일부 少數民族은 실질적으로 漢族에 크게 동화되어 있기도 하다. 즉 전체 中國의 입장에서 보면 漢族의 비중이 워낙 압도적이고, 또한 同化가 상당정도 진행되어 있어서 少數民族問題가 통제 못할 정도로 심각해질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中國의 少數民族問題는 정치적인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모두 심각하게 드러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中國政府는 이 문제에 대하여 매우 진지하게 접근하여 왔다고 판단된다.

먼저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中國의 少數民族들은 상당 수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변경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¹¹⁾ 또한 많은 경우 접경상대국에 같은 민족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즉 舊蘇聯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접경한 新疆(위그르, 카자흐족), 인도 등과 접경하고 있는 티벳(티벳족), 몽골 및 러시아와 접경한 內蒙古(몽고족) 등 주요 변경이 그러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라오스와 접경한 지역에 苗族, 哈尼族이 집중되어 있고, 태국과 인접한 지역에 타이족이 있으며, 한반도와 인접한 지역에 朝鮮族이 집중 거주하는 것 등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결국 中國의 少數民族問題는 주변국가와의 관계와도 연계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궁극적으로 社會安定 및 國家安保와도 연관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10) 舊蘇聯은 15개 共和國으로 구성된 연방이었으며, 共和國 보다 낮은 級으로 自治共和國, 自治州, 自治區를 두고 있었다. 당시 소수민족중 가장 인구가 많은 것은 우크라이나로 4,419만(총인구의 15.5%)에 이르렀으며, 이어서 우즈벱(1,670만), 벨로루시(1,004만), 카자흐(814만)의 순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있다.

11) 中國에는 12개 국가와 접경한 지역에 20개의 少數民族이 거주하고 있다.

둘째로 少數民族 집중 거주지역은 광대한 天然資源 부존지역으로서 그 경제적 중요성이 뚜렷이 증대되고 있다. 즉 전국토 면적의 60% 이상이 소수민족 자치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넓은 지역이 소수민족과 연계되어 있으며, 이들 지역은 石油(新疆 등), 석탄(內蒙古, 新疆 등), 철광석(新疆, 티벳 등), 각종 비철금속(廣西 등), 森林資源 등 다양한 천연자원을 대량 부존하고 있다. 현재까지 각종 社會間接施設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러한 天然資源의 개발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그 중요성은 크게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少數民族地域 및 少數民族의 經濟와 所得 수준이 상대적으로 크게 낙후되어 있고, 資源開發 등을 통한 經濟成長의 果實이 상대적으로 漢族에게 귀속된다는 인식이 현지 少數民族에게 널리 퍼져있는 현상을 고려할 때 앞으로의 개발과 관련하여 문제의 소지를 갖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현재의 中國經濟 성장 방향을 분석해 볼 때, 沿海地方과 內陸地方의 경제력 격차는 앞으로 도 상당기간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로 內陸地方에 거주하는 少數民族의 불만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中國의 少數民族問題는 부분적으로는 이미 심각한 갈등으로 표면화되어 왔다. 즉 달라이 라마를 중심으로 한 티벳 분리독립 운동이 수 차례 걸친 폭동과 군사적 진압이라는 현상으로 연결되어 심각한 국제적인 이슈로 등장하여 왔다. 또한 新疆에서도 여러 차례 독립주창자들의 무력시위와 무력진압이 발생하였고, 內蒙古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中國의 정세변화가 나타나 中央政府의 지방 통제력이 약화될 경우, 民族主義가 발호하여 지방의 분리·독립운동이 격화되고, 이 결과 중국이 지역적으로 분할될 가능성까지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¹²⁾

12) 일부 학자는 登小平 死後의 귀결로 이러한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본고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논의를 삼가기로 한다.

4. 中國의 少數民族政策

中國은 역사적으로 漢族 中心의 사고에 기초하여 주변부 민족을 야만 오랑캐로 간주하는 우월감을 보여왔다. 즉 中國에서는 스스로를 世界의 中心이라고 생각하고, 中原의 文化를 전수하여 궁극적으로 教化시켜야 할 대상으로서 주변부의 民族을 바라보는 시각이 역사상 일관적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中華思想을 基底로 하여 中國 少數民族政策의 基本方向이 少數民族의 同化를 통한 궁극적 흡수에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中國의 少數民族政策의 기조는 때로는 매우 조악한 형태로 표출되어 少數民族에 대한 강압적인 同化政策으로 나타나기도 하였고, 때로는 少數民族 自治를 전면에 내세운 간접적·장기적 同化政策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본고에서는 現代 中國의 少數民族政策의 추이를 간략히 정리하여 살펴본다.

辛亥革命을 통하여 최초의 공화정인 中華民國의 성립에 중심적 역할을 한 孫文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大漢族主義에 기초하고 있었다. 즉 孫文은 부분적으로 소수민족의 존재를 인정하여, 中國이 漢族 이외에 몽고족, 만주족, 티벳족, 회족을 포함한 5개 민족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는 中國이 少數民族의 요구를 점진적으로 흡수·동화하여 단일한 문화적·정치적 공동체인 國家를 형성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¹³⁾ 또한 그의 뒤를 이어 國民黨을 영도하던 蔣介石은 더 나아가 소수민족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여, 모든 中國人은 동일 민족으로서 단지 지역적·종교적 차이에 따른 여러 유파가 존재할 뿐이고, 이에 따라 적극적인 同化政策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¹⁴⁾ 위와 같은 國民黨 수뇌

13) Sun Yat-Sen (1927), Die Grundleheren von dem Volkstum, Berlin 및 Sun Yat-Sen (1953), Memoirs of a Chinese Revolutionary, Taipei 참조. Heberer (1989), p.18, p.34에서 재인용

14) Chiang Kai-shek, 1947, China's Destiny, New York 참조. Herberer (1989), p. 18 및 全寅永 外 (1994), p.12에서 재인용

부의 인식은 非漢族에 대한 강압적인 同化政策으로 나타났고, 이는 곧 少數民族에 대한 차별·억압정책의 내용을 띠게 되었다.

한편 中國共產黨은 國民黨과는 대조적으로 유연한 少數民族政策을 채택하였다. 즉 제1차 國公合作이 결렬되고 공산당의 게릴라식 무장봉기가 가시화되던 1927년부터는 혁명에 대한 대중적 지지 확보와 도피처 확보의 차원에서 소수민족의 지지와 협조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다. 즉 中國共產黨은 소외집단으로서의 少數民族을 사회주의 혁명에 동참시키는 차원에서 소수민족의 독자성 인정과 권리의 보장에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시기에는 한 때 民族自決權을 인정하여 少數民族의 독립도 가능하다는 수준에까지 이르기도 하였다.¹⁵⁾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中國 共產黨의 少數民族政策도 민족간의 평등과 통일국가내에서의 자치를 주장하는 보다 현실적인 노선을 취하게 되었다. 다만 상대적으로 유화적인 중국 공산당의 소수민족 정책으로 인하여 많은 소수민족인이 공산당에 가입하고 또한 혁명과정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共產黨의 입장은 1949년 新中國 성립이후에도 기본적으로는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中國은 1949년 9월 국가성립을 선언하기 위한 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 共同綱領 (헌법의 전신에 해당)에서 大民族主義 (즉 漢族中心主義)를 부정하고, 民族間 平等, 少數民族 區域自治의 실시, 少數民族 고유문화 유지의 보장 등을 규정하였다.¹⁶⁾ 또한 1954년도에 최초로 제정된 憲法 제3조에서도 “각 민족 평등의 보장 및 차별과 압박의 금지”를 규정하였다. 또한 이러한 원칙을 구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조치로서 “中華人民共和國 民族區域自治實施綱要”을 제정하여 (1952년 8월) 民族區域自治를 제도화하였다. 즉 少數民族 집중 거주지역을 自治區域 (해당구역의 크기 및 중요도에 따라 自治區, 自治州, 自

15) 1931년 11월 선포된 「中華 소비에트공화국 憲法大綱」 제114조에서는 中國內 少數民族의 자결권을 인정하고 그들의 희망에 따라 분리독립도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徐鎮英(1988), pp.97-98 참조.

16) 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 共同綱領, 제9조, 제50조~53조.

治縣)으로 지정하고, 각 자치구역이 당과 국가의 영도에 추종한다는 전제하에¹⁷⁾ 행정·경제·문화 등 전반에 걸쳐 상당수준의 民族自治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다. 이에 따라 각 自治區域은 일정 범위내에서 독자적인 自治條例의 제정, 區域 幹部의 少數民族인 우선적 임명, 상급 人民代表大會에 소수민족 대표 파견, 독자적인 地方財政 관리 및 현지 상황에 맞는 經濟開發政策 실시, 고유언어·문화·풍습의 보존 및 창달 등을 도모하도록 허용되었다.¹⁸⁾

이러한 中國의 少數民族政策의 구체적 실시를 위한 핵심요소로서 이른바 幹部의 民族化라는 명목의 少數民族 출신 간부의 양성을 들 수 있다. 中國 指導部는 당에 충성하는 少數民族 幹部를 양성하고 이들을 통하여 少數民族地域의 自治를 실시함으로써 少數民族에 대한 중앙정책의 효과적인 실시와 政治的 統수를 유지해 가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中國은 1950년 11월 「少數民族幹部育成 施行方案」을 발표하였는데, 그 핵심내용은 少數民族 간부를 적극 육성하되, 政治幹部 육성을 중심으로 하고 전문·기술간부 육성을 보조로 한다는 것이다.¹⁹⁾ 다른 한편 “少數民族 출신 幹部를 육성함과 동시에 少數民族 사무에 종사하는 적정 수의 漢族 幹部를 육성한다”는 원칙도 실시되었다.²⁰⁾ 이와 같은 내용은 ‘少數民族을 통한 少數民族 統治’와 ‘漢族을 통한 監督 및 궁극적 同化’라는 中國 少數民族政策의 특징과 한계를 시사해주는 것이다. 중국은 소수민족 간부를 육성하기 위하여 ‘中央民族學院’을 비롯하여 여러 지방

17) 이른바 民主集中制가 기본원칙이다. 이 民主集中制는 선거·보고·비판·군중노선 등의 측면에서 하의상달의 民主制가 규정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영도·규율 등 集中制의 측면이 압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개인은 조직에, 소수는 다수에, 하급은 상급에, 그리고 모든 당 조직은 당 중앙에 복종한다는 원칙이 최우선한다고 할 수 있다.

18) 한편 國務院(즉 행정부)내에서 少數民族 사무를 전반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부서는 國家民族事務委員會이다.

19) 中國의 少數民族 간부 육성정책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金大洸(1993)을 참조.

20) 金大洸(1993), p.166.

에 民族學院을 설립하여²¹⁾ 少數民族 幹部 및 少數民族 사무에 종사할 漢族 幹部를 양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少數民族自治 중심의 유희적인 少數民族政策이 오래 지속되지는 못하였다. 사회전반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진전되고, 합리성보다는 좌파 이데올로기가 득세하는 시기에 접어들면서 少數民族의 特殊性에 대한 배려는 약화되거나 무시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즉 1958년부터 급속한 人民公社化를 특징으로 하는 大躍進運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少數民族 특유의 지역공동체가 크게 파괴되었고, 정치적으로는 많은 소수민족 엘리트들이 분파적 지방 민족주의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았다. 이 결과 少數民族 幹部에 대한 사상적 재교육이 강화되었고, 또한 사회주의적 개조의 큰 흐름속에서 少數民族의 特殊性에 대한 배려가 약화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1966년에 시작된 文化大革命과 더불어 더욱 심화되었다. 中國 共產黨 핵심층을 포함한 中國의 全社會를 뒤집어 놓았던 文化大革命은 少數民族에게는 더욱 큰 재앙이었다. 文化革命의 와중에서는 모든 사회모순이 계급모순으로 귀결지워졌으며, 따라서 民族問題도 계급문제의 한 측면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치부되었다. 이 결과 少數民族의 특수성을 주장하는 것은 곧 民族分離主義를 조장하는 反革命 修正主義로 매도되었고, 기존에 실시되던 少數民族 관련정책들이 실질적으로 폐기되었다.

먼저 기존의 少數民族 概念과 少數民族問題의 인식을 부정하여, 中國에서는 이미 民族問題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특별한 少數民族政策 자체가 필요없다는 주장이 득세하였다. 이에 따라 헌법상의 소수민족 관련규정이 삭제되거나 의미를 실질적으로 상실하였으며, 少數民族區域自治도 크게 후퇴하였고 일부 自治區域은 폐지되기도 하였

21) 1992년 현재 中央民族學院 이외에 11개의 지방 民族學院이 있으며, 中央民族學院의 2,366명을 포함하여 22,836명이 재학하고 있다. 中國民族經濟(1993), pp.442-443.

다. 또한 각종 민족문제 관련기관 (民族事務委員會, 民族學院, 民族文化機關 등)이 폐쇄되고, 각 민족의 언어·문자사용, 풍습, 종교, 문화행사 등이 금지되거나 크게 제약받게 되었다. 또한 少數民族에 대한 모든 특혜가 중지되고, 지역특유의 경제활동이 제약받는 현상도²²⁾ 발생하였다. 또한 많은 少數民族 간부와 지식인들이 民族分離主義를 조장했다는 이유로 관직을 박탈당하고 농촌으로 下放되는 등 박해를 받았다. 특히 內蒙古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는 분리독립을 도모했다는 이유로 수십만 명이 투옥되고, 수만명이 처형되기도 하였다.²³⁾

결국 少數民族政策의 측면에서 볼 때 文化革命 시기에는 강요된 同化政策이 매우 조악한 형태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이른바 民族間 구별의 철폐, 地方 民族主義의 청산 및 모든 민족의 일치단결과 社會主義 건설이라는 구호 아래 少數民族에게는 온갖 모욕과 박해를 가하고, 그들의 언어·문화·지도자 심지어 종교까지 말살하며, 그들의 경제활동 기반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았다. 즉 이 시기의 少數民族政策은 民族의 特性과 차이를 부정하고, 하나의 기준의 강요를 통하여 民族同化를 추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中國이 毛澤東 사망 이후 四人幫을 숙청하고 이어서 이른바 改革·開放을 표방한 實用主義 路線을 채택하면서 少數民族政策도 또 한 번의 변화를 겪게 된다. 이러한 政策轉換은 1980년 9월의 全人代 常務會議에서 여러 少數民族 代表들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공식화되었고, 文化革命 이전에 시행되었던 民族自治區域 중심의 정책으로 복귀하는 성격이 가졌다. 1982년에 전면 개정된 新憲法은 여러 측면에서 少數民族 自治

22) 예를 들면, 넓은 草地에 목축을 주로 하던 소수민족에게 草地를 뒤엎어 곡물 생산을 강요한다거나, 민족 특산공예품의 생산을 금지시키는 등의 일이 나타났다.

23) 毛澤東 사후에 숙청된 四人幫에 대한 기소장에 따르면, 문화혁명 기간중 內蒙古自治區에서 346,000명이 투옥되고 그중 16,222명이 처형되었다. Heberer (1989), p.26에서 재인용

權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헌법은 第1章 總綱의 第4條에서 民族의 平等·團結·互助 및 차별과 압박의 금지, 民族區域自治 및 分離獨立 불허용, 民族의 언어·문자·풍속·습관의 보존·개혁의 자유 등 기본적인 원칙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第3章 6節(第 112條~122條)에서 民族自治地域의 自治機構라는 題目 下에서 구체적으로 民族自治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自治區域 人民政府의 首長 및 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 主任(또는 부주임)의 해당 소수민족으로서의 보임(113條, 114條), 독자적인 自治條例 및 特別條例 제정권(116條), 地方財政의 자주적 관리(117條), 國家計劃의 지도하에서의 自主的인 地方經濟 건설 사업 추진(118條), 자체적인 교육·과학·문화·위생·체육사업의 추진 및 民族文化의 보호·육성(119條), 치안유지를 위한 자체적인 公安(警察)部隊 조직(120條), 민족언어·문자의 공식적 사용(121條), 國家(中央政府)의 지방 경제·문화사업 지원 및 少數民族 各급 幹部·專門人力의 육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84년 5월에는 少數民族에 관한 기본법인 ‘中華人民共和國 少數民族區域自治法’이 제정되어 보다 구체적으로 自治權의 範圍를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앞에서 소개한 憲法의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少數民族의 權限을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있다. 그 특징적인 내용으로는 中央의 政策·法規가 자치구역 현지의 실정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상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이를 현지 실정에 맞도록 융통성있게 시행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自治區域의 幹部를 뽑을 때 자격을 갖춘 少數民族人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이 法에 기초를 둔 少數民族 自治政策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中國의 少數民族政策은 大躍進 및 文化革命 時期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각 民族의 特殊性 인정, 소위 ‘當家作主’ 원칙에 따른 民族區域自治의 실시, 民族 고유의 언어·문화·종교·관습의 유지, 經濟的 支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희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여러 민족의 평화적 공존과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長期的 民族融合政策이 실시되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少數民族政策이 갖는 뚜렷한 한계도 지적할 수 있다. 中國의 少數民族政策의 핵심은 漢族 중심의 中國이라는 틀 내에서의 民族自治의 허용이라는 점과 궁극적으로는 中華文化로의 同化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中國은 少數民族의 自率에 의한 分離獨立의 가능성을 철저히 부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여러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먼저 少數民族自治地區는 漢族 中心의 上位級 행정단위의 지휘·감독하에 있으며, 自治權의 範圍도 상급의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내로 제한된다. 또한 少數民族 幹部에 대한 철저한 思想教育을 통하여 民族의 이익보다 黨에 대한 복종을 우선시 하도록 통제하고 있으며 自治區域이라고 하더라도 최고 실권을 가진 黨委員會는 漢族에 의하여 통제되는 암묵적인 원칙이²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中國의 少數民族自治는 民主集中制 원칙에 따른 上級機關의 통제, 黨優位 원칙에 따른 政治的 통제 및 해당 少數民族 幹部에 대한 思想教育 등 여러 통로를 통하여 그 한계를 넘어서지 않도록 통제받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 少數民族의 中國化를 유도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人口移動(migration)을 들 수 있다. 과거에는 少數民族地域에 대한 漢族의 이주가 政策的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大躍進運動과 文化革命 期에는 각각 경제적·정치적 명목으로 많은 漢族人口가 少數民族地區로 이주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의 강제적 이주가 현지 少數民族은 물론 이주 당사자들의 불만을 야기함에 따라, 개혁·개방 이후에는 상당 수 原 居住地로의 복귀가 이루어졌으며 또한 비슷한 類의 강제이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改革·開放과 더불어 沿海地方이 中國經濟의 성장을 선도함에 따라, 少數民族地域으로부터 이들 지방으로의 人口의 逆

24) 少數民族 自治區域의 행정기관의 首長이나 의회에 상응하는 人民代表大會 주요 간부가 해당 少數民族人이더라도, 실제 주요 權限의 행사는 黨이 주도하거나 혹은 黨에 의하여 제약받게 된다.

移動 現狀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비교적 연령이 젊고 질이 높은 勞動力들이 경제적 기회를 찾아 沿海地方으로 이주하는 현상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少數民族地方의 성장 잠재력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少數民族의 中國化를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나타낼 것으로 평가된다. 中國政府가 이러한 현상을 적극 유도하려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적어도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中國의 少數民族政策은 中國이 多民族 統一國家라는 大命題하에서 수립되고 실시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中國은 한편으로 少數民族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民族區域自治와 少數民族 언어·문화·풍습의 유지·함양을 기초로 하는 民族融和政策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民族幹部를 통한 民族區域自治는 漢族에 의한 統治를 되도록 눈에 띄지 않게 하는 의미를 가진 것이었다. 그러나 中國은 다른 한편 少數民族의 분리독립 가능성을 배제하는 여러 통로의 통제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결국 中國의 지도층이 희망하는 것은 이러한 정책을 통하여 민족분규의 방지와 장기적인 민족융합, 곧 中國化를 도모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정책은 현재까지 어느 정도 희망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성공여부는 많은 변수와 연관되어 있어서 그 성공이 보장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III. 中國 朝鮮族同胞 社會의 現況과 特徵

1. 流入過程

中國내 朝鮮族이 다른 少數民族들과 뚜렷이 구별되는 큰 특징은 그들이 상대적으로 근년에 移民해 온 集團이라는 점에 있다. 즉 대부분의 다른 少數民族들은 오랜 기간동안 현재의 中國 영토내에 살아 오면서 토착화되거나, 과거 中國의 東邦으로 유지되어오다가 合邦된 집단인 반면, 朝鮮族의 경우는 한반도에 거주하던 韓民族의 일부가 19세기 중반이후 약 100년에 걸쳐 現在의 中國 영토로 流入된 결과로 형성된 집단인 것이다.

여러 조사에 따르면 현존하는 中國內 朝鮮族의 선조들이 中國에 이주한 시점에 있어서 가장 이른 것이 1850년을 전후한 시기라고 한다.¹⁾ 즉 淸朝가 1677년 그들의 발상지인 백두산 이북지역을 封禁地로 지정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한 조치가 점차 약화되고, 또한 1860년대 朝鮮에 여러 차례에 걸친 자연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적지 않은 朝鮮人들이 이 지역에 이주하여 농토를 개간 하였던 것이 시작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1881년 封禁領이 해제되면서 朝鮮人의 이주가 본격적으로 증가하였다. 이 시기에는 주로 함경도·평안도의 주민들이 이주하여 주로 압록강과 두만강 연안에 정착하여 농토를 개간하고 촌락을 형성하였고, 이 주민구가 증가함에 따라 그 거주지역이 점차 확산되었다.²⁾

1) 金元石(1992), p.218; 그 이전에 중국으로 이주한 韓民族이 존재하였지만 소수에 그쳤고 일정기간에 걸쳐 中國化가 진행되어 현존하는 朝鮮族과 연계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 韓中間 국경문제와 관련되는 白頭山定界碑, 間島協約 등의 문제는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논의를 배제하였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申一澈(1988), pp.21-29를 참조.

이어서 韓民族의 제2차 대량이주는 1910년 이른바 ‘韓日合邦’과 더불어 나타났다. 즉 ‘韓日合邦’이 발생하자 일부 독립운동가들의 이주가 나타났다고, 이어서 1910년대 후반중 日帝의 ‘土地調查事業’ 시행의 결과로 경작토지를 잃게된 많은 농민들이 間島地域으로 이주하게 된 것이다. 한편 제3차의 대량이주는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켜 이 지역을 점령한 日本이 특히 30년대 후반에 朝鮮人の 計劃的·集團的 移住를 전략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나타났다. 이 시기에는 경상도·전라도 등 인구 밀집지역의 빈한한 농민들이 일정기간의 개간 이후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약속에 따라 集團으로 이주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들의 이주지역은 기존 韓民族 정착지역에 비해 보다 서북쪽으로 들어간 오늘날의 黑龍江省, 遼寧省 지역 등으로 확산되었다.

위와 같은 이주의 결과 1910년 20만명 수준이던 間島地方의 韓民族 인구가 1920년에는 46만명, 1930년에는 61만명, 1940년에는 131만명 수준으로 증가하였다(〈表 III-1〉 참조). 시기별 연평균 인구 증가율을 보면, 1910~20년 기간중에 8.56%에 달하였고, 1920~30년 기간중에 2.83%로 하락하였다가, 1930~40년 기간에는 7.99%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특히 1910년대 후반과 1930년대 후반에 급증한 것이 두드러진다. 1945년 해방 당시 중국에 거주하고 있던 韓民族 인구는 東北地方에 약 160만, 기타 지방에 약 10만이었고, 이후 수 년에 걸쳐 약 70만이 여러 경로를 통해 韓半島로 귀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³⁾

1945년 해방과 더불어 상당수 韓人이 남북한으로 귀환한 이후 中國에 거주하고 있던 100만여 韓人들은 中國住民으로 남게 되었다. 특히 1946~49의 國共內戰 기간중 일찍부터 共產黨의 통치하에 들어간 東北地方에 거주하던 韓人중 상당수는 공산혁명군의 일원으로서 이른바 해방전쟁에 참여하였다. 이들 中國居住 韓人들은 1949년 10월 中華人民共和國의 성립과 더불어 일정한 과정을 거쳐 中國公民이 되었다.⁴⁾ 이때에 이들이 中

3) 한상복·권태환(1993), p.35.

〈表 Ⅲ-1〉 中國 東北地方 朝鮮族 人口의 推移(1910-1942)

年度	인구 (人)	年度	인구 (人)	年平均增加率(%)	
				期間	增加率
1910	202,070			1910~15	6.90
1911	205,517	1926	542,185	1915~20	10.25
1912	238,403	1927	558,280		
1913	252,118	1928	577,052	1920~25	2.98
1914	271,388	1929	597,677	1925~30	2.68
1915	282,070	1930	607,119		
1916	328,288	1931	630,982	1930~35	6.37
1917	337,461	1932	596,573	1935~40	9.63
1918	361,772	1933	673,794		
1919	431,198	1934	761,593		
1920	459,427	1935	826,570	1940~42	7.46
1921	488,656	1936	925,531		
1922	515,865	1937	931,620	1910~20	8.56
1923	528,027	1938	1,056,308	1920~30	2.83
1924	531,857	1939	1,162,127	1930~40	7.99
1925	531,973	1940	1,309,053		
		1941	1,442,428	1910~42	6.49
		1942	1,511,570		

資料: 金哲 『韓國의 人口와 經濟』, 岩波書店, 1965年, p.28.

尹豪(1993), p.21에서 재인용.

國公民이 되는 방식은 韓人이 中國에 귀화하는 형식이 아니라, 中國 國內에 사는 少數民族의 하나로서 '朝鮮族' 中國公民이 된 것이었다.⁵⁾

4) 당시 中國政府는 在中國 韓人을 일시거주 성격의 僑民과 定住 성격의 居民으로 구분하고, 居民에 대하여 中國公民이 되도록 하였다. 이들이 공식적으로 中國公民이 된 것은 1952년이라고 한다.

5) 당시 中國과 北韓의 합의에 따라 東북지방의 居民인 韓人은 자동적으로 中國

2. 人口 및 地域別 分布

新中國(즉 中華人民共和國) 수립이후 최초로 실시된 1953년의 인구 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당시 中國內 朝鮮族 人口는 약 111만명에 이르고 있었다.⁶⁾ 이 인구규모는 해방전 최대 인구규모에 비해 약 60만명이 적은 숫자이다. 그후 中國內 朝鮮族 人口는 1964년의 제2차 인구센서스에서 137만, 1982년의 제3차 인구센서스에서 177만, 1990년의 제4차 인구센서스에서 192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中國內 朝鮮族 人口는 1953~1990의 37년간의 기간중 연평균 1.49%의 증가율을 나타내었으며, 그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表 III-2> 참조). 위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현재 中國內 朝鮮族의 人口는 약 200만에 달하는 것

<表 III-2> 中國內 朝鮮族 人口의 推移(1953-1990)*

(단위: 명, %)

	1953	1964	1982	1990
조선족인구	1,111,275	1,399,569	1,765,204	1,923,361
중국총인구중의 비중(%)	0.191	0.191	0.180	0.170
중국 소수민족인구중의비중(%)	3.101	3.350	2.630	2.101
기간중 연평균증가율(%)**		1.71	1.54	1.08

* 4차에 걸친 中國의 공식 인구센서스 결과에 근거한 인구통계. 현역군인은 포함되지 않음.

** 직전 인구센서스 실시시기 이후 해당시기까지의 연평균(기하평균)증가율을 계산한 것임.

資料: 中國民族經濟(1993), p.263.

公민의 지위를 얻은 반면, 그 밖의 지역의 韓人들은 중국이나 북한의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고 한다. 申一澈(1988), p.40.

- 6) 자료에 따라 당시 인구 센서스 결과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일부 자료는 당시 조선족 인구를 1,120,405명으로 보고하고 있고, 다른 자료는 1,111,274명으로 보고하고 있다. 다만 최근의 공식통계에는 후자의 숫자가 나타나고 있다. 中國民族經濟(1993), p.263 참조.

으로 추산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朝鮮族 人口의 증가추이에 있어서 특징적인 현상은 그 증가율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中國의 총인구가 위의 37년 기간중 연평균 1.83%의 증가율을, 漢族 인구가 동 기간중 연평균 1.77%의 증가율을 나타낸 것과 비교하여 1.49%의 朝鮮族 人口增加率은 매우 낮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앞의 <表 II-1>에서 나타났듯이 1982년 이후 朝鮮族 人口의 증가율은 漢族을 포함한 中國의 56개 민족중 가장 낮은 상황에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이 中國政府가 少數民族에 대하여 보다 온건한 人口抑制 政策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나타났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中國의 朝鮮族 學者들은 이러한 현상을 대체로 朝鮮族의 教育水準이 상대적으로 높고, 都市化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⁷⁾

中國내 朝鮮族의 거주지역은 吉林省을 중심으로 黑龍江省, 遼寧省 등 東北3省에 집중되어 있다. 1990년의 제4차 인구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192만의 朝鮮族 人口중 61.5%인 118만이 吉林省에 거주하고 있고, 이중 82만이 延邊自治州에 거주하고 있다. 이어서 黑龍江省과 遼寧省에 각각 23.6%, 12.0%씩 집중 거주하고 있었다. 東北3省 이외에는 內蒙古自治區에 2만여 朝鮮族이 살고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表 III-3> 참조). 이와 같은 기본적인 지역분포는 상당기간 유지되어 왔으나, 吉林省 및 延邊 朝鮮族自治州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한편, 黑龍江省(1952~82년 기간중)과 其他 地域(특히 82년 이후)의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改革·開放 이후에는 東北地域(內蒙古 포함)이외의 其他 地域⁸⁾에 거주하는 朝鮮族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 1990년에 3만 3천여에 이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정식 戶籍(中國에서 말하는 戶

7) 윤호(1993), 김명호(1992) 참조.

8) 기타 지역중 조선족 인구가 빨리 증가하는 대표적인 지역으로서 北京, 河北省, 山東省 沿海地方(청도, 위해, 연대 등)을 들 수 있다(<附表 1> 참조).

〈表 Ⅲ-3〉

朝鮮族 人口의 主要 分布地域

	총인구	吉 林	(吉林省中の 延邊)	黑龍江	遼 寧	內蒙古	기 타
53년	1,110,745	756,026 68.0%	557,279 49.2%	231,510 20.81%	115,719 10.4%	6,705 0.6%	n/a
64년	1,348,594	866,627 64.7%	623,136 46.5%	307,562 23.0%	146,513 10.9%	11,280 1.4%	n/a
82년	1,765,204	1,104,074 62.5%	754,706 42.8%	431,644 24.5%	198,252 11.2%	17,580 1.0%	13,654 0.8%
90년	1,920,597	1,181,964 61.5%	821,479 39.5%	452,398 23.6%	230,378 12.0%	22,641 1.2%	33,216 1.7%

資料: 각 년도 센서스 결과(윤 호(1993)에서 재인용).

口)의 이동없이 실제 타 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람까지 포함한다면 기타 지역의 朝鮮族 人口는 이 통계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논의에 기초해 볼 때 현재 中國內 朝鮮族 人口는 약 200만으로 吉林省에 약 120만(그중 延邊自治州에 약 85만), 黑龍江省에 약 47만, 遼寧省에 약 24만, 內蒙古自治區에 2만여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그외 약 10만이 전국에 산재하여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朝鮮族 人口의 전국적 분포 상황(1,2,3,4차 센서스 결과) 및 東北地域내 상세한 분포 상황은(1,2,3차 센서스결과) 〈附表 1, 2〉에 수록하였다.

한편 다음의 〈表 Ⅲ-4〉는 朝鮮族 최다 집중 거주지역인 延邊 朝鮮族自治州 내에서의 인구분포 추이를 나타내주고 있다. 절대 수의 측면에서는 龍井市, 延吉市, 和龍縣, 琿春市의 순서로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지역 총인구에 대한 비중에 있어서는 龍井市, 延吉市, 和龍縣, 圖們市의 순서로 집중되어 있다. 또한 朝鮮族 人口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延邊 朝鮮族自治州 전체를 보았을 때 1950~70년대초 기간중 漢族의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朝鮮族의 比重이 뚜렷이 낮아지는 현상을 보였으나 80년대 이후에는 그 추세가 상당히 약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延邊

自治州내에서는 80년대이후 延吉, 圖們 등 도시지역에 있어서 朝鮮族 人口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 반면, 和龍, 汪清, 安圖 등 농촌지역의 朝鮮族 人口는 절대적으로나 상대적 비중에 있어서 모두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延邊 이외의 吉林省 지역중에서는 吉林(市區, 永吉縣, 舒蘭市, 磐石縣, 蛟河市 중심 약 17만), 通化(柳河縣, 集安縣, 輝南縣, 通化縣 중심 약 8만), 長春(外縣 포함 약 5만) 등의 지역에 비교적 朝鮮族 人口가 집중되어 있다. 한편 黑龍江省에서는 牧丹江地區(寧安縣, 牧丹江市, 東寧縣 중심 약 13만), 松花江地區(五常縣 중심 약 8만), 하르빈(하르빈시 중심 약 5만) 등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遼寧省에서는 撫順(市區, 新賓縣, 清源縣, 撫順縣 중심 약 7만), 瀋陽(市區, 新民縣 중심 약 4만) 등의 지역에 朝鮮族 人口가 많은 편이다. 東北地域에는 이외의 지역에도 적지 않은 朝鮮族 人口가 산재하여 거주하고 있다(附表 2) 참조).

〈表 Ⅲ-4〉 延邊朝鮮族自治州의 市·縣別 朝鮮族 人口 및 比重

(단위: 천명, ()은 %)

연도	자치주계	연길	도문 ¹⁾	용정 ²⁾	돈화 ³⁾	화룡	왕청	훈춘	안도
1953	557 ³⁾ (60.2) ³⁾	47 (63.9)		208 (76.5)	19 (11.7)	112 (82.3)	72 (56.8)	68 (66.3)	32 (59.1)
1964	623 (48.1)	66 (60.9)	39 (57.9)	182 (68.2)	19 (7.0)	119 (66.8)	76 (43.9)	73 (62.4)	49 (46.7)
1982	755 (40.3)	100 (57.0)	55 (58.9)	205 (65.1)	24 (5.3)	146 (60.4)	90 (34.0)	83 (56.6)	52 (28.1)
1990	821 (39.5)	178 (60.6)	69 (56.4)	184 (65.8)	25 (5.2)	137 (57.3)	85 (31.7)	92 (50.1)	52 (24.0)

註: 1) 1953년 인구센서스 당시 도문시는 연길현(현재의 용정시)에 속함.

2) 용정시는 1982년 인구센서스 때까지 연길현이라고 하였음.

3) 1953년 인구센서스 당시 돈화현은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속하지 않았음. 그러나 본 表의 1953년 자치주 전체의 통계는 돈화현을 포함한 것임.

()은 해당지역 총인구중 조선족인구의 비중(%)

3. 朝鮮族의 民族自治 現況

제 II 장에서 소개한 바와 같은 中國의 民族區域自治政策에 따라서 中國내 朝鮮族 社會도 여러 급에 걸친 自治를 실시하고 있다. 中國 朝鮮族 자치의 핵심은 地區級 행정단위에 해당하는 延邊 朝鮮族自治州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吉林省 長白 朝鮮族自治縣이(1958년 9월 건립) 유일한 縣級의 자치단위로서 존재하고 있다. 그 이하 단위에서는 吉林省, 黑龍江省, 遼寧省의 朝鮮族 集居 지역에 42개의 朝鮮族自治鄉(鎮)이 존재하고 있으며,⁹⁾(이들 朝鮮族自治鄉(鎮)의 자세한 내역은 <附表 3>을 참조), 모두 1000여 村을 포괄하고 있다. 이들 朝鮮族 自治區域은 상대적으로 朝鮮族의 人口比重이 높은 곳으로서, 行政·經濟·教育·文化 등 각 측면에서 民族自治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자치구역 지정이 안된 기타지역에서도 朝鮮族 人口가 어느 정도 되는 경우 제한된 범위내에서 自治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절에서는 延邊 朝鮮族自治州를 중심으로 民族自治에 대하여 살펴본다.

朝鮮族 自治地域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延邊地區는 1952년 9월 3일 省級에 해당하는 延邊 朝鮮族自治區로 건립되었고, 1955년 12월 地區級의 延邊 朝鮮族自治州로 전환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52년 당시의 自治區 성립은 同年 8월에 공포된 「中華人民共和國 民族區域自治實施綱要」에 근거하였다. 당시에는 延吉市, 延吉縣, 汪清縣, 琿春縣, 和龍縣, 安圖縣 등 1市·5縣으로 구성되어 있었고,¹⁰⁾ 그 위치는 吉林省 동부에 두만강과 면하고 있는 과거 間島로 불리우던 地域과 거의 일치하였다.

9) 他少數民族과의 聯合鄉(鎮)을 포함한 것임. 한편 內蒙古에도 3개의 朝鮮族自治鄉이 있다고 보고되어 있으나(Lee(1986), p.67), 그 자세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10) 오늘날에는 延吉市, 龍井市, 圖們市, 琿春市, 敦化市, 和龍市, 汪清縣, 安圖縣의 6市 2縣으로 행정조직이 변화되었다.

1953년 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당시 延邊 朝鮮族自治州(敦化縣 제외)의 인구는 76만4천명이었으며, 이중 朝鮮族이 약 71%를 차지하고 있었다. 중국정부는 1958년 漢族人口가 대부분이고 경제활동면에서도 延邊과의 연계가 크지 않았던 敦化縣을¹¹⁾ 延邊自治州에 귀속시킴으로써, 自治州 전체의 朝鮮族 人口比率을 크게 하락시켰다.¹²⁾ 이 결과 1964년 인구센서스에 따른 결과에 따르면 延邊自治州의 朝鮮族 人口 비중은 48.1%로 과반수에 미달하게 되었고, 그러한 인구구조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1990년 현재 延邊自治州의 총인구는 208만이고, 이중 朝鮮族 人口는 82만으로서 그 비중이 39.5%에 그치고 있다. 오늘날의 延邊自治州의 면적은 4만2,700km²로서, 吉林省 총면적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며,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와 전라남도를 합한 면적과 비슷하다.

延邊自治州를 비롯한 民族自治區域에서의 民族自治의 주요내용은 黨政幹部의 民族化, 각종 條例의 제정을 통한 民族自治의 법적 체계화, 현지 실정에 적합한 독자적인 경제개발 추진 및 財政, 民族의 교육·문화·언어·풍습의 보존·발전 등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1) 幹部의 民族化

中國 少數民族政策의 핵심내용은 少數民族 幹部의 양성을 통한 해당 民族區域 統治에 있으며, 이 내용은 법적·정책적으로 보장되어 왔다. 中國의 憲法 및 「少數民族區域 自治法」 등에 따르면 자치구역의 人民政

11) 1953년 센서스에 따른 敦化縣의 조선족 인구비율은 11.7%에 불과하였고, 이 지역 산림개발을 위해 漢族人口의 전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조선족 인구의 비율은 64년 7.0%, 82년 5.3%, 90년 5.2%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한상복·권태환(1993), pp.54~59 참조.

12) 中國政府의 이러한 조치는 少數民族地域에 대한 漢族의 이주를 장려하고, 民族自治의 限界를 설정하며, 궁극적으로 中國文化에 同化시키려고 하는 少數民族政策의 기초와 연계되어있다는 해석을 할 수도 있다. 한상복·권태환(1993), p.55 참조.

府 首長¹³⁾과 해당구역의 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 主任 또는 副主任은 구역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少數民族의 公民이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自治區域 人民政府의 幹部를 임명하는 데에 있어 해당 소수민족인을 우선적으로 최대한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⁴⁾

中國共產黨의 초기 혁명운동 시기부터 항일·해방투쟁에 동참하였던 朝鮮族의 경우 다른 少數民族에 비해 상대적으로 幹部의 民族化가 진전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1952년 延邊 朝鮮族自治區가 성립할 당시 朝鮮族인 朱德海가 自治區 人民政府 主席(후에 自治州로 변경될 때 州長)으로, 역시 朝鮮族인 崔采가 2인의 부주석중 1인으로 선임된 것과 당시 地區 총간부중 78%가 朝鮮族이었다는 것에서도 드러난다.¹⁵⁾

그러나 文化革命 시기에는 中國의 少數民族政策이 크게 후퇴함에 따라 朝鮮族 幹部들이 심하게 박해를 받아 그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다.¹⁶⁾ 이에 따라 1971년 延邊 自治州 黨委員會를 재조직할 때에 州 전체 8개 市·縣의 정·부서기 26명중 朝鮮族은 7명으로 27%를 차지하는 데 그쳤고, 특히 각급 黨委員會 제1책임자 중에는 朝鮮族이 한 사람도 없게 되었다.¹⁷⁾ 그러나 1980년 이후에는 박해를 받았던 朝鮮族 幹部들이 명예 회복 혹은 복권되고 또한 少數民族 간부 등용정책이 적극 실시됨에 따라 朝鮮族 幹部의 비중이 다시 증가하게 되었다. 1980년 革命委員會가 폐지되고, 自治州 人民政府와 人民代表大會가 부활하게 되면서, 朝鮮族 幹部의 비중은 전국적 수준 및 지방수준에서 모두 朝鮮族 人口比重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었다.

13) 自治區의 경우 主席, 自治州의 경우 州長, 自治縣의 경우 縣長.

14) 少數民族區域自治法 제17조.

15) 「延邊 朝鮮族自治州 概況」 pp.114-115, p.119.

16) 文化革命 기간중에는 革命委員會가 설립되어 政府機能을 수행하였다. 특히 文化革命 초기에는 정상적인 黨政機能이 모두 마비되었다.

17) 「延邊 自治族自治州 概況」, p.121

이후에도 현재까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제7기 全國人民代表大會의 경우, 朝鮮族 대표는 20명으로(0.67%), 朝鮮族 人口 比重의 4배 이상이다. 그러나 점차 自治州내의 朝鮮族 人口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朝鮮族 幹部의 비율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82년 당시 延邊地域의 朝鮮族 人口比重은 약 40%이고, 朝鮮族 幹部는 州의 一級 黨 正간부중 50%, 全州 기관의 部·局 간부중의 54.3%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1992년 현재 延邊의 朝鮮族 人口가 총인구의 39.6%인 상황에서, 朝鮮族 幹部는 全州 幹部중 51%를 차지한다.¹⁸⁾ 한편 長白 朝鮮族自治縣의 경우 조선족 인구가 全縣 인구의 17.3%를 차지하는데 그치고 있지만, 朝鮮族 幹部는 全縣 간부총수의 23%를 차지하고 있다.¹⁹⁾

朝鮮族 幹部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朱德海와 趙南起, 李德洙를 들 수 있다. 朱德海는 이미 30년대에 중국 공산당에 가입한 후, 그들의 해방투쟁에 참여하였던 인물이다. 中華人民共和國의 창건을 준비하기위해 1949년 9월 개최된 「中華人民共和國 政治協商會議 第1基 全體會議」에 참가하여, 헌법의 전신인 「政治協商會議 共同綱領」 채택에 참여하였던 대표적인 초기의 朝鮮族 幹部였다. 그는 후에 中國共產黨 제8기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에 선임되는 등 중앙정치에 진출한 경력을 갖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문화혁명 시기에는 문화혁명 주도자들의 주요 공격대상이 되어 큰 박해를 받기도 하였다. 그는 1980년 복권된 이후 사망하였다. 趙南起는 주로 人民解放軍에서 경력을 쌓아온 간부로서 韓國戰爭에도 참가한 바 있다. 그는 延邊 自治州 黨委員會 서기, 中國共產黨 12~14기 中央委員, 吉林省 당서기, 人民解放軍 總後勤部 部長, 中央軍事委員會 委員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人民解放軍 軍事科學院 院長으로 있다. 그는 90년대 초기까지 朝鮮族 출신인사중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 직책상으로 다소 뒤로 물러서는 느낌을 주고 있다. 현재

18) 리동진 (1993), p.72.

19) 리동진 (1993), p.73.

朝鮮族 간부중 가장 눈에 띄는 직책에 있는 인물은 中國 共產黨 14기 中央委員으로 中國 共產黨 統一戰線部 副部長을 맡고 있는 李德洙이다. 그는 延邊自治州 黨書記, 吉林省 副省長, 國家民族事務委員會 副主任을 역임한 바 있다.

(2) 法規의 整備

中國의 憲法 및 「少數民族區域自治法」에 따르면 少數民族自治區域의 人民代表大會는 현지의 정치·경제·문화의 특징에 맞도록 自治條例 및 單行條例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延邊自治州도 이 규정에 근거하여 독자적인 법규의 제정을 실시하여 왔다. 이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1985년 4월 제8기 州人民代表大會 3차회의에서 채택된 「延邊朝鮮族自治州 自治條例」이다.²⁰⁾

延邊自治州의 基本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條例는 총7장75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자치주의 자치기관, 제3장은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 제4장은 경제건설과 재정관리, 제5장은 교육·과학·문화·위생·체육사업, 제6장은 自治州내의 민족관계, 제7장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 自治條例에 기초하여 각 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여러 單行條例들이 제정되었는데, 그 예로서는 「延邊 朝鮮族自治州 朝鮮語文 事業條例」, 「延邊 朝鮮族自治州 文化事業條例」, 「延邊 朝鮮族自治州 未成年保護條例」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자치조례에 의거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森林經營管理細則」, 「商業系統條例 實施細則」, 「糧食部門條例 實施細則」 등의 施行細則이 제정되었다.

위와 같이 법규의 정비를 통하여 自治의 規範化·法制化가 추진되고

20) 이 조례는 1984년 5월에 제정된 「少數民族區域自治法」에 의거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전국의 少數民族 自治區域중 최초로 제정한 것이라고 한다. 허원현·김하록(1993) 참조.

는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선 상위법인 「少數民族區域自治法」의 규정이 구체성을 결여한 부분이 많고 또한 이 법규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少數民族自治區域과 그 상급 행정기관과의 권한분배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民族區域自治法」에 따른 충분한 自主權 행사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그 하위체계에서 제정된 自治條例나 單行條例도 구체성을 결여하거나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것에 대한 제재가 미약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약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의 일부 법규나 정책이 「少數民族區域自治法」이나 「延邊自治州自治條例」와 모순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외에도 중요한 部門, 특히 自治州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시킬 수 있는 부문에 대한 單行條例나 實施細則이 충분히 제정되어 있지 못한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延邊自治州의 일부 전문가들은 森林資源의 관리·개발, 담배사업, 邊境貿易 등에 관하여 自治州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각종 單行條例를 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²¹⁾

(3) 經濟·財政상의 自治

中國의 「少數民族區域自治法」은 “少數民族區域의 자치기관은 地方財政을 관리할 수 있는 自主權을 가지며, 국가계획의 지도하에 자주적으로 지방경제 건설사업을 조직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근거하여 少數民族自治區域은 그 지방이 財政收入을 모두 자체 귀속시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延邊自治州도 독자적인 財政體制를 구축하고 있으며, 또한 현지 실정에 맞는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21) 森林資源 개발과 관련해서는 黑龍江省의 기업이 무상으로 채취하는 문제가, 담배사업에 관해서는 吉林省이 관련기업의 관리권과 수익권을 빼앗아 간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허원현·김하록(1993) 참조.

어느 정도의 성과도 이루고 있다.

延邊自治州는 法的으로 보장된 自主的 經濟建設 權限에 기초하여 몇 가지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UNDP의 두만강유역개발 계획(TRADP)과 연계하여 琿春을 특구로 지정하여 戰略的으로 개발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²²⁾ 이 琿春 開發戰略은 延邊自治州 개발에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韓國·日本과의 연계운송망 구축과 연관되어 있으며, 나아가 吉林省의 出海權 확보와 연관된 중요한 프로젝트로 인식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圖們-琿春間 철도부설 및 도로포장과 琿春 邊境經濟合作區의 초기건설이 완성되었으며, 러시아의 자루비노 및 북한 훈흥과의 철도부설 등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延邊自治州는 투자액이 1억원을 상회하는 대형 프로젝트로서 연변석유화학공업본공장, 연변화학공업본공장, 연길알루미늄공장 등을 이미 완공하는 등 자주적 經濟建設 事業을 추진하고 있다.²³⁾ 또한 민족적 연계를 활용하여 韓國企業의 延邊自治州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1994년 10월말 현재 延邊地域에 대한 韓國企業의 投資는 계약기준으로 294건, 1억6천만 달러, 실제이용기준으로 3,700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韓國投資企業의 연 생산액은 1억5천만달러에 이르며, 약 2만4천명을 고용하고 있다.

그러나 經濟的 自主權 행사에 있어서의 불명확성, 특히 吉林省과의 권한 분배상의 불투명성과 延邊自治州의 자주권 행사에 있어서의 소극성 그리고 자금동원 능력의 한계 등이 요인이 되어 經濟的 自主權이 충분히 행사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그 성과도 잠재적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自治州의 經濟的·財政的 기반이 미약하여 지속적으로 財政赤字

22) 延邊自治州는 이미 1991년부터 自治州의 최대역점사업으로 琿春特區 개발에 주력해 왔다. 이 결과로 中國 國務院은 1992년 3월 琿春을 변경개발도시로 지정하고, 계획면적 16.7km²(초기 개발면적 2.28km²)의 邊境經濟合作區의 설립을 허가하였다.

23) 허원헌·김하록(1993), P.35.

〈表 Ⅲ-5〉

延邊朝鮮族 自治州의 財政收支

(단위: 百萬元)

	1980	1990	1992
財政收入	105.8	576.4	615.2
財政支出	118.0	605.0	658.5
財政收支	-12.2	-28.6	-43.2

資料 : 延邊統計年鑑(1993).

를 기록하고 있는 것도 自主權의 積極적 행사에 장애가 되고 있다(〈表 Ⅲ-5〉 참조).

(4) 言語·教育·文化側面의 民族自治

中國의 少數民族自治政策에 있어서 매우 특징적인 것이 소수민족 언어의 積極적 보호 및 活用이다. 中國에서는 黨大會 및 全國人民代表會議에 있어서 우리 말 통역이 실시되고 있으며 相關 文건이 번역·인쇄된다. 특히 延邊自治州에서는 우리 언어·문자가 제1통용언어·문자로서 公認되어 政府의 포고·文건에 사용되고 있으며, 州·縣·鄉의 人民代表大會에서도 제1언어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自治州내의 모든 干辦도 한글과 漢字로 병기하되 한글이 우선 하도록 되어 있다. 더우기 學校에서의 公認 敎育은 물론 대학 입학시험 및 職場에서의 進級시험이나 朝鮮族 公民이 關連된 법률 송사에 있어서도 우리민족의 言語·文字가 公認적으로 使用되게 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言語·語文 측면에서는 民族自治의 수준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中國내 朝鮮族同胞들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언어와 문자 사용이 가능하다.²⁴⁾ 그러나 이들의 언어나 글은 북

24) 1990년에 실시된 한국 연구자들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延邊自治州내의 도시 지역의 朝鮮族의 경우 74%가 일상어로서 우리 언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農村地域의 朝鮮族의 경우 95%가 일상어로서 우리 언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

한의 언어와 문법체계를 많이 따르고 있으며, 또한 그들 조상의 출신지역 방언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늘날의 우리가 사용하는 南韓 言語와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²⁵⁾ 延邊地方의 경우 함경북도 출신이 많기 때문에 함경북도 방언이 유지되는 반면, 黑龍江省과 遼寧省의 경우에는 역시 출신지방을 반영하여 각각 경상도 방언과 평안도 방언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다. 또한 朝鮮族同胞들의 한국에서 흔히 섞어 쓰는 외래어(특히 영어) 어휘에 대한 이해는 극히 초보적인 수준이다. 다만 최근에 韓國과의 교류가 크게 늘어나면서, 中國 朝鮮族同胞의 언어가 南韓의 언어를 닮아가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다른 한편 朝鮮族들의 모국어 유지·발전은 朝鮮族의 전반적인 中國化라는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朝鮮族이 中國에서 사회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漢語 구사능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특히 改革·開放이 진행됨에 따라 지리적 이동이 빈번해지고, 이러한 활동지역의 확대는 漢語 사용의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켰다. 따라서 특히 젊은 층에 있어서 漢語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학교 교육도 漢語 위주로 변화되고 있다. 예를 들면 朝鮮族 學校에서도 漢語 사용시간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학생 및 학부모들의 수요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결국 中國의 改革·開放 擴大와 이에 따른 機會의 증가는 朝鮮族 사회의 개방확대와 中國化를 촉진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言語上的 中國化를 가속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韓國과의 교류증대에 따라 韓國語의 需要가 증대되고 있는 점과 일부 朝鮮族 指導者와 教育者들이 우리 언어 교육방법의 개선, 신교재의 편찬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이 朝鮮族 社會에서 우리 언

타났다. 또한 이들이외의 경우에도 漢語와 우리 언어를 병용하는 경우가 도시와 농촌에서 각각 12%와 3%를 차지하고 있어서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우리말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5) 이밖에 漢語의 영향을 받아 中國式 漢字語를 우리식 발음으로 사용하거나, 漢語 어휘를 우리말과 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흔히 있다.

어의 유지를 가능케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教育 측면에서의 民族自治는 朝鮮族 學校의 광범한 존재를 통하여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中國의 朝鮮族 集居地域에는 朝鮮族 學校가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보통 村 단위에 小學校(국민학교에 상당), 鄉 단위에 重點 小學校와 初級中學校(우리나라의 중학교에 상당)가 있으며, 縣 단위에는 小學校, 初級中學校, 高級中學校(우리나라의 고등학교에 상당)가 모두 존재한다. 또한 延邊에는 綜合大學 성격의 延邊大學과 專門大學(4년제)이라고 할 수 있는 延邊醫學院, 延邊農學院, 延邊師範專門學校, 吉林藝術學院 分院 등 5개의 高等教育機關이 존재한다.²⁶⁾ 그러나 延邊大學도 전국에 96개(종합대학 및 전문학원 포함)에 이르는 重點大學에²⁷⁾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등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데에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밖에 중등전문학교 수준의 사범학교, 위생학교, 재정무역학교, 체육학교 등이 다수 존재한다. 이들 朝鮮族 學校에서는 우리 언어를 중심으로 韓·漢語 二重言語 教育이 실시되고 있다.

中國의 朝鮮族同胞들은 일반적으로 자녀들을 朝鮮族 學校에 취학시키고 있다. 특히 거주지를 기준으로하여 學區가 설정되어 있으므로, 朝鮮族 集居地域의 경우 거의 자동적으로 朝鮮族 學校에 재학하게 된다. 그러나 延邊自治州 이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朝鮮族 居住地가 산재된 곳이 많기 때문에 中學校부터는 朝鮮族 學校에의 취학이 어렵게 되기도 한다. 더욱이 근년에 人口의 도시이동이 크게 늘어나면서 農村에서는 朝鮮族 學校의 학생 수 감소와 지나친 분산 현상 등이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최근들어 漢語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자녀를 漢族學校에 취학시키려는 朝鮮族 학부모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都市地域에 두드러지는데 이는 전반적인 中國化 현상을 선도하는 결

26) 1993년에는 韓國 및 在美同胞의 資金支援을 통하여 '延邊科學技術大學'이라는 사립대학이 설립되었다.

27) 중점대학으로 지정되는 학교는 재정지원 및 우수학생 선발 등의 측면에서 우선권을 부여 받는다.

과를 나타낼 수 있는 우려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民族의 正體性을 유지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朝鮮族 學校 教育의 질적 향상과 이를 위한 支援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한편 教育에 있어서의 民族自治는 뚜렷한 한계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즉 朝鮮族 教育에 있어서 언어·풍습 등에 관해서는 민족적인 내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歷史·民族意識 등에 있어서는 큰 제약이 존재하고 있다. 중등학교까지의 朝鮮族 學校의 경우 韓民族의 歷史나 심지어 朝鮮族의 歷史에 관한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로서는 南北韓間의 歷史記述의 차이, 학생들의 추가적인 학습부담 등이 운위되고 있으나, 政治的인 制約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민족적인 형태와 내용을 담은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大衆媒體(mass media)에 있어서도 신문, 잡지, 라디오, TV 등이 우리 글과 말로 발행·방송되고 있다. 특히 延邊에서는 州黨委員會 기관지인 延邊日報(조선어판 발행부수 2만9천부)를 비롯하여 30여종의 신문·잡지가 발행되고 있다. 延邊日報이외에는 黑龍江新聞, 吉林新聞이 비교적 많은 독자를 가진 일반 신문이다. 가장 높은 접촉빈도를 보이고 있는 TV의 경우 延邊 TV방송국이 1일 1~2시간 씩 뉴스와 어린이프로를 중심으로 우리말 방송을 하고 있다. 또한 민족적인 내용을 담은 문학, 예술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들이 民族文化의 유지·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民族文化의 유지에 따라 家族關係(예: 孝 의식 등), 혼인, 풍습 등의 측면에서도 다소의 변화를 거치기는 하였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문화가 유지되고 있다.

4. 經濟 · 社會 生活의 特徵과 水準

中國에 유입된 韓民族들의 초기 경제생활은 農業에 집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들은 각고의 노력 끝에 19세기말 中國 東北地方에서는 최초로 벼농사에 성공하여, 이 지역에 있어서의 朝鮮人들의 정착에 큰 기여를 하였다. 즉 稻作의 성공이 地主를 포함한 中國人들로 하여금 이 地方 開墾에 있어서의 朝鮮人들의 기여를 인정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이후로도 中國內 朝鮮族同胞들의 경제생활은 벼농사를 중심으로 한 農業이 주가 되었다. 그러나 朝鮮族들의 높은 교육열로 인하여 非農業部門의 專門職에 종사하는 인구비율도 비교적 높은 수준에 있으며, 改革 · 開放 이후에는 전반적인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都市 非農業部門에의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먼저 中國 朝鮮族同胞의 교육수준은 中國의 여러 민족 가운데 최고수준에 있다. 다음의 <表 Ⅲ-6>은 1990년에 있어서 延邊地域 人口의 教育水準을 전국평균과 비교하여 나타내주고 있는데, 延邊의 교육수준이 전국평균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 명백하게 나타난다. 이는 주로 延邊에 거주하는 朝鮮族 人口의 높은 교육수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表 Ⅲ-7>은 다소 오래되긴 하였지만 1982년의 각 民族別 教育수준과 文盲人口 比率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朝鮮族 人口의 교육정도는 최고수준에 있는 반면, 文盲/半文盲 인구의 비율은 가장 낮게 나타나 있다. 즉 대학 졸업 수준의 인구비율은 朝鮮族의 경우 19%(1000명중 19명의 비율)으

<表 Ⅲ-6> 教育程度別 人口比率, 1990年

(단위: %)

區分	大學本科	大學專科	中等專門	高等中學	初等中學	小學校	合計	文盲人口 ^b
全國	0.8	1.2	2.2	9.2	33.3	53.3	100.0	16.10
延邊	1.6	2.2	3.8	21.8	39.3	31.3	100.0	10.62

註: 1) 總人口에 접하는 文盲 · 半文盲人口 比率임.

資料: 제4차 人口調查(1990年 7月1日) 結果.

로 전국평균 및 漢族의 경우에 비해 3배 수준으로, 여러 民族 중 가장 높다. 또한 중학교 이상 교육수준의 인구비율이 朝鮮族의 경우 51%로 전국평균의 2배 이상이다. 반면 12세이상 인구의 文盲/半文盲率은 10.5% (남자 4.7%, 여자 16%)로서 전국평균 31.9%(남자 19.2%, 여자 45.2%)의 삼분의 일에 불과하다.

이러한 朝鮮族 人口의 교육수준은 就業構造에 있어서도 반영되어 나타나다. 다음의 <表 III-8>은 1982년 朝鮮族 人口의 취업구조를 全國, 漢

<表 III-7> 中國百萬以上民族의 教育程度와 文盲半文盲率 (1982年)

民 族	大學 및 中學教育程度(%)			小學(%)	12세이상 人口의 文盲率(%)		
	大學	高中	中學		合計	男	女
全 國	6.00	66.3	177.5	353.9	31.87	19.15	45.23
漢 族	6.18	67.8	181.5	357.7	31.16	18.46	44.52
蒙 古 族	8.12	79.4	168.2	341.2	28.48	21.05	36.41
回 族	6.94	63.5	166.5	262.1	40.71	29.45	52.29
藏 族	2.02	10.0	33.3	165.2	74.31	60.88	86.78
維 吾 爾 族	3.27	34.9	102.8	330.0	42.18	38.87	45.69
苗 族	1.18	19.3	71.5	247.2	58.11	39.54	77.69
彝 族	0.81	12.5	60.2	233.5	61.65	45.74	77.75
壯 族	2.19	52.9	138.0	369.7	31.37	15.73	46.99
布 依 族	1.38	17.5	87.0	265.4	55.53	33.43	77.69
朝 鮮 族	19.60	83.5	306.9	284.8	10.50	4.69	16.07
滿 族	3.74	91.5	231.7	382.9	17.02	11.88	23.13
侗 族	2.11	30.1	105.4	336.0	44.59	25.14	65.84
瑤 族	1.41	30.3	77.3	323.7	46.91	30.48	64.26
白 族	4.10	35.9	127.5	336.0	41.27	20.81	61.61
土 家 族	1.56	47.2	140.8	396.2	33.38	19.91	48.21
哈 尼 族	0.44	8.6	47.9	180.0	70.12	56.08	84.38

資料: 中國 1982年 제3차 人口센서스結果.

族, 少數民族의 평균과 비교하여 나타내주고 있다. 朝鮮族의 취업인구 비율(52%)은 전국평균과 거의 같은 수준이지만, 취업구조 분포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朝鮮族의 경우 1차산업인 農·林·牧·漁業 종사자의 비중은 57.6%로서 전국평균 72%에 크게 못 미치는 반면, 生産·運輸作業者和 專門技術職 종사자의 비중은 각각 20.8%와 10.2%로서 전국평균을 훨씬 상회한다. 이러한 결과는 朝鮮族 人口의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에 기인하여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改革·開放 이전의 朝鮮族同胞의 소득수준은 中國 전체평균에 비해 높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 이유로서는 朝鮮族의 교육수준이 비교적 높고 취업구조에 있어서 專門技術職 및 管理職 종사자의 비율이 높을 뿐 아니라, 農業에 있어서도 쌀 중심의 생산구조와 비교적 높은 生産性을 나타냈던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改革·開放政策 실시 이후 中國의 沿海地方이 그 혜택을 받아 고속의 經濟成長을 시현하고 주민의 생활수준이 크게 높아지는 것과 비교할 때, 朝鮮族의 생활수준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朝鮮族의 평균 생활수준은 여전히

<表 Ⅲ-8>

朝鮮族 人口의 職業構造 (1982年)

(단위: %)

	全 國	漢 族	少數民族	朝 鮮 族
專門技術的 就業從事者	5.1	5.2	4.0	10.2
管理的 就業從事者	1.6	1.6	1.1	3.0
事務從事者	1.3	1.3	1.0	2.2
商業從事者	1.8	2.0	1.2	2.7
서비스從事者	2.2	2.3	1.3	3.4
農林牧漁業從事者	72.0	71.2	83.8	57.6
生産運輸從事者	16.0	16.6	7.5	20.8
其他	0.1	0.1	0.1	0.2
就業人口의 比率	52.0	52.1	49.2	52.0

資料: 中國 1982年 제3차 人口센서스結果.

전국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東南 沿海地方을 비롯한 改革·開放 先導地域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1991년 延邊地域의 1인당 GNP는 2,184 元으로 전국평균을 27% 정도 상회하지만, 上海의 6,400元, 北京의 5,106元, 廣東省의 2,770元 등에는 크게 못 미친다. 더우기 延邊地域의 都市化 정도를 고려해 볼 때 전체 朝鮮族의 소득수준은 延邊의 평균 수준에 못 미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오늘날 朝鮮族의 생활수준은 중국평균을 다소 상회하는 정도에 머무르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근년에 각종 형태로 韓國에서 취업을 하는 朝鮮族 人口가 증가하고, 韓國으로부터의 방문객이 증가됨에 따라 비교적 높은 소득을 획득하는 朝鮮族 人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 긍정적인 요소라 하겠다.²⁸⁾ 朝鮮族 集居地域의 地經學的 위치를 고려할 때 앞으로도 韓國과의 經濟協力 擴大가 이 지역의 經濟開發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5. 새로운 挑戰

中國의 朝鮮族同胞 社會는 中國內의 少數民族 집단으로서 상당 기간 독특한 성격을 유지해 왔다. 여기서 독특한 성격이라는 것은 中國에서 짧지 않은 기간 동안의 역사의 우여곡절 속에서도 우리 民族 특유의 文化·言語를 유지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의 또 다른 측면은 中國內 朝鮮族 社會가 비교적 폐쇄된 상태를 유지했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즉 戶口制度 등 人口移動의 제약, 農業을 중심으로한 취업구조, 少數民族으로서의 한계 등에 기인하여 어느 정도 폐쇄된 성격을 유지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中國의 朝鮮族 社會는 큰 변화

28) 그러나 韓國과의 連繫여부가 所得水準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되는 것은 현지 朝鮮族 社會內의 葛藤要素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의 와중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변화를 촉발하는 계기가 된 것은 1979년 이래의 中國의 改革·開放 실시라고 할 수 있다. 즉 中國의 改革·開放은 中國 사회 전체의 흐름을 변화시킨 근본적인 변수인 동시에 中國 朝鮮族 社會에도 심각한 충격을 준 것이다. 中國에서 改革·開放이 전개됨에 따라 경제적 이득을 최우선시하는 사회적 가치가 전면에서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社會的 流動性(mobility)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는 곧 人口의 지역간 이동, 산업구조의 변화, 새로운 기회의 등장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延邊을 중심으로 中國의 東北地方에 집거하여 농업 중심의 취업구조를 갖고 민족 특유의 문화를 유지해 오던 朝鮮族 社會도 종래와 같은 폐쇄성의 탈피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朝鮮族이 쌀 중심의 農業生産으로 中國內에서 비교적 높은 소득을 획득하고 있었지만, 改革·開放과 더불어 제조업·서비스업 등 보다 附加價値가 높은 産業의 成長이 두드러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더우기 朝鮮族의 集居地가 東北의 內陸地方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東南 沿海地方에서 시작되어 전체 沿海地域으로 확산되어온 對外開放의 혜택에서 소외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에 따라 나타난 중요한 변화는 人口移動의 증대이다. 中國에는 여전히 戶口制度가 유지되는 등 人口移動에 대한 제도적 제약이 존재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과거에 비해 人口移動이 크게 용이해졌다. 우선 延邊 등 東北地域 內에서 農村으로부터 都市로의 이동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本章 2절의 논의 참조). 더우기 상당수의 인구가 延邊 혹은 東北地方을 떠나 경제적 기회가 보다 많은 沿海地方으로 이주하고 있기도 하다.²⁹⁾ 특히 이러한 인구이동의 핵심이 20~30대의 청년층에 있

29) 이들 중 대부분은 법적으로 戶口를 획득하여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호구를 얻어 이동하거나 혹은 무작정 도시로 유입하는 이른바 '盲流'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인구통계에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朝鮮族 集居地域중에서 특히 黑龍江省의 朝鮮族의 인구유출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는 점에서 변화의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이러한 변화들은 과거 朝鮮族 社會의 핵을 이루던 朝鮮族 農村마을(村)의 축소 혹은 해체, 朝鮮族 學校의 폐쇄 혹은 감소, 朝鮮族 文化의 약화, 나아가 朝鮮族 社會의 약화 내지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朝鮮族 社會의 폐쇄성이 점진적으로 약화되면서 地域的·文化的으로 中國化될 수 있는 소지가 증대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中國 朝鮮族 社會에 또 하나의 심각한 충격요소로 등장한 것이 韓國과의 접촉·교류 증대이다. 과거 朝鮮族 社會는 南韓과의 교류가 철저히 단절된 상태에서 北韓과의 제한적인 교류가 있었을 뿐이다.³⁰⁾ 中國의 朝鮮族同胞들은 역사적으로 많은 역경 속에서 中國의 少數民族 公民으로 생존하여 오면서, 나름대로의 正體性(identity)을 형성하여 왔다. 그들은 한편으로 韓民族임을 자랑으로 여기며 民族文化를 지켜온 한편, 수십년간 충실한 中國公民의 지위를 유지해 왔었다. 또한 中國의 한반도에 관한 정책과 선전이 北韓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었으므로, 中國內 朝鮮族들도 상당부분 객관적인 정보에 접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편향된 시각을 갖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특히 서울 올림픽이 열렸던 88년이후 韓國과의 각종 교류가 급증하면서 中國內 朝鮮族社會는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 이들은 南韓에 대한 새로운 情報에 접하게 되고 또한 여러 경로를 통한 접촉이 증대되면서 기존의 사고에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된 것이다. 그들은 먼저 경제적으로 성장한 韓國의 모습에 놀라고 또한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큰 기대도 갖게 되었다. 그러나 韓國人들의 中國 東北地域 방문, 朝鮮族同胞들의 한국방문 및 취업·거주, 韓國企業들의 이 지역과의 貿易·投資關係 발생 등 다양한 형태의 접촉이 증대하면서 그들

30) 북한과의 교류도 시기에 따라 그 정도에 차이가 있었는데, 건국후 초기에는 교류가 활발한 편이었으나 문화혁명기에는 교류가 단절되기도 하였다.

은 또 다른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언어상의 미묘한 차이, 사고방식의 큰 차이, 경제 거래방식의 차이, 기대와 현실의 괴리 등이 현실화되면서 상당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韓國과의 접촉증대는 이들의 二重正體性, 즉 中國公民인 동시에 韓民族의 일원이라는 현실을 더욱 뚜렷이 부각시키게 되었다.

결국 韓國과의 접촉 증대 역시 中國內 朝鮮族 社會에 대하여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지만, 다른 한편 큰 갈등과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들은 中國의 改革·開放에 따른 中國化의 요구와 韓國과의 접촉 증대에 따른 새로운 기회와 갈등요소의 등장이라는 새로운 환경하에서의 生存과 發展이라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IV. 韓·中 經濟協力과 朝鮮族同胞의 役割 및 限界

韓·中修交 및 經濟協力を 추진하는 과정에서 韓·中間의 오랜 단절과 언어상의 불편 등을 극복하는데 中國의 朝鮮族同胞들은 적지 않은 협력자적 역할과 기여를 해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中國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의 통역과 안내는 물론 사업상의 알선과 협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편의를 제공해 왔으며 中國內 韓國 投資企業과 國內 中小企業體 등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中國의 朝鮮族同胞들은 中國에서 태어나 성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言語, 文化的 異質性과 법적으로는 中國國籍의 外國人이라는 신분상의 특성 등으로 인해 국내와의 관계와 역할이 증대되고 다양화되어 감에 따라 새로운 갈등과 문제점이 점증하고 있는 것도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이에 따라 本章에서는 이러한 背景과 問題認識을 갖고 한국기업의 중국진출 과정과 현지 경영 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朝鮮族同胞의 役割과 限界, 國內企業에 고용되어 있는 朝鮮族同胞 人力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나아가 南北韓經協의 촉진을 위한 이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分析은 향후 韓中經協의 발전과 南北韓經協의 진전에 따른 朝鮮族同胞들의 바람직한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 韓國企業 中國進出에서의 役割과 限界

(1) 韓·中經協 擴大와 朝鮮族同胞

지난 92년 8월 韓國과 中國의 修交가 성사된 이후 약 2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兩國간에는 무역과 투자면의 괄목할 만한 발전과 人的交流의

확대로 다양한 형태의 경제협력 관계에 커다란 진전이 있었다. 물론 韓國의 입장에서 보면 中國經濟의 급속한 성장은 補完的 性格의 협력관계 뿐만 아니라 새로운 競爭關係의 심화라는 양면성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中國은 韓國의 거대한 新市場인 동시에 가장 주목받는 투자진출의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어 양국간의 경제협력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韓·中間의 貿易은 지난 89년-93년 기간중 연평균 43.5%로 급신장하여 93년에는 무역 규모가 91억 달러에 달함으로서 中國은 韓國의 제 3위 交易國이 되었다. 교역형태도 초기의 間接交易에서 민간기업의 支社 設置확대 등으로 90%이상 直交易으로 전환되었다. 投資면에서는 지난 93년 말 현재 許可基準 累計로 1,060여건에 약 10억 달러에 달했고 94년 상반기에는 약 6백여 건에 약 6억달러가 증가하여 中國은 韓國의 제 1위 海外投資對象國으로 부상하였다. 投資業種과 投資規模는 주로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 부문의 小規模 투자에 편중되어 있었으나 점차 중화학 공업 부문과 사회간접자본 부문으로 多樣化, 大型化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투자대상 지역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朝鮮族同胞가 주로 많이 거주하는 山東省과 東北3省 등지에 집중되어 있다.

한편 兩國 政府間에는 각종 經濟協力 協定이 체결됨에 따라 경제교류를 위한 法的, 制度的 장치가 마련되었으며, 民間企業의 支社 및 金融機關 등의 사무소가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해운항로와 항공노선의 확대로 人的·物的 交流의 급속한 신장은 물론 중국내 한국투자업체 및 商社들의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었다. 한국 투자기업과 商社들 간의 정보교환과 상호협조 등을 목적으로 지난 93년 결성된 中國韓國商會가 94년 7월 발간한 會員名簿를 보면 현재 투자기업 420개 업체와 상사 및 금융기관의 지사와 사무소 153개가 등록되어 있어 적어도 약 6백여 개의 한국투자기업과 지사 및 사무소가 활발한 사업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지난 88년 韓·中間에 교류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한 이래 불과 6년이

경과한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 투자기업들이 現地에 정착할 수 있기까지는 한겨레 한핏줄로서 언어가 통하고 믿음이 가는 朝鮮族同胞들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협조와 기여가 적지 않았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초기에 진출한 한국의 中小企業人들 가운데는 中國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부족은 물론 언어상의 불편 등으로 朝鮮族同胞들에게 의존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中國의 朝鮮族同胞들도 한국 기업인들과 연계를 맺으면 돈도 벌고 새로운 기회와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부푼 기대 하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韓國의 大企業들은 中國에 대한 사업정보와 관련지식을 전문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中小企業人을 포함하여 中國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은 불가피하게 朝鮮族同胞들의 통역과 안내를 받고 있으며, 현지에서 연계된 朝鮮族同胞들을 통해 초보적인 市場調査와 事業關聯 情報를 수집하게 된다. 이같은 관계가 발전하여 朝鮮族同胞들 가운데는 한국 기업인을 도와 현지 기업인을 소개 알선하거나 현지정부 상대의 로비활동에 협조하는 경우도 있으며 상담과정의 구체적인 諮問과 仲介役割을 담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물론 朝鮮族同胞들의 전문지식 부족과 현지 人脈 결여, 의사전달 과정의 실수 등으로 한국기업 가운데는 중국진출의 초기단계부터 적지 않은 차질과 부작용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일단 중국진출에 성공한 대부분의 韓國企業들은 朝鮮族同胞들을 통역이나 중간 관리자로 고용하거나 생산직근로자로 고용하여 활용하고 있다. 현재 한국업체들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靑島지역의 경우 약 2백여개 한국투자기업에는 약 4천명의 朝鮮族同胞들이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비공식 집계되고 있으며 北京, 天津, 瀋陽, 威海, 하르빈 등지의 한국투자기업에도 상당수의 朝鮮族同胞들이 취업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러나 처음 부푼 기대를 안고 한국 투자업체를 찾아 들었던 朝鮮族同胞들과 이들을 동포애와 믿음으로 맞아들였던 한국 기업인들 간에는

점차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失望과 不信의 새로운 갈등이 싹트고 있다. 최근 적지 않은 한국 투자업체에서는 조선족 근로자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해고되거나 무단 퇴직하는 현상이 빈발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 투자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山東省 靑島와 같은 지역에서 특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相互認識과 姿勢의 전환을 통한 상호이해와 협조의 새로운 信賴關係 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2) 韓國企業人들의 朝鮮族 勤勞者에 대한 評價

현재 中國에 진출한 韓國企業들이 朝鮮族同胞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어떤 문제에 부딪치고 있으며, 또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파악해 보기 위해 對外經濟政策研究院의 北京駐在員을 통해 우편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中國 전역에 걸쳐 322개 업체에 설문지를 발송하여 조사한 결과 94년 12월 15일 현재 약 1개월의 조사기간중 설문에 응답해 온 業體 數는 모두 56개 였다.¹⁾ 中國 全域에 산재해 있는 한국업체를 대상으로 우편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현실적인 제약과 1개월이란 짧은 調查期間등으로 인해 응답률(17.4%)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는 현지에서 朝鮮族同胞들을 고용하고 있는 한국 기업인들의 체험적 견해를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說問에 응답해 온 한국업체들의 母企業 分類는 30대 재벌기업 16개, 대기업 11개, 중소기업 23개, 기타 6개등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진출 형태는 支社 9개, 現地投資業體 41개, 金融機關 및 經濟團體의 대표 사무소 7개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進出業種은 섬유 의복 13개, 기타 제조업

1) 說問 項目 및 說問調查 結果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은 卷末附錄에 수록하였음.

11개를 비롯한 조립 금속, 무역, 음식료품, 신발 가죽등 12개 업종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進出地域은 北京12개, 延邊地域을 포함한 吉林省 10개, 山東省 9개, 天津 8개, 遼寧省 7개등 모두 11개 지역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같은 응답자의 업종별·지역별 분포는 한국업체의 진출 현황과 대체로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지리적 이유 등으로 北京 및 吉林省 地域의 응답률이 높은 반면 현지에 진출한 한국중소제조업체의 응답율이 저조하고, 특히 제조업체가 집중되어 있고 비교적 朝鮮族 근로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靑島 등 山東省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調查結果의 대표성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

韓國企業人들의 初期 中國 진출과정에 있어서 많은 朝鮮族同胞들의 협조와 도움이 있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조사결과에서도 큰 도움이 있었다고 응답한 업체수가 25개 (43.9%), 약간의 도움이 있었다는 업체 수가 27개 (47.4%)로 전체의 91.3%가 어떤 형태로든 도움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별로 도움이 없었다는 업체수는 5개 (8.8%)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있었는가를 조사한 설문에는(2개까지 선택이 가능) 다수가 단순통역과 관광안내의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시장조사 및 관련정보 제공, 현지기업인의 소개 알선, 상담과정의 구체적 자문 및 중계역할 등에도 비슷한 수준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 朝鮮族同胞들의 실질적인 역할이 있었음을 시사

<表 IV-1> 初期 中國進出時 朝鮮族同胞의 役割과 協力類型

설문내용	빈도수	비율 (%)
단순통역 및 관광안내	40	40.8
시장조사 및 관련정보제공	17	17.3
현지 기업인의 소개 알선	13	13.3
현지 정부상대의 로비활동 협조	7	7.1
상담과정의 구체적 자문 및 중계역할	12	12.2
기 타	9	9.2

하고 있다.

설문조사에 응한 韓國業體의 雇用規模와 朝鮮族 從業員의 비중을 조사해 본 결과 종업원수가 100명 이하인 업체 수가 28개로 전체의 49.1%, 100명에서 500명 사이가 16개 업체로 전체의 28.1%, 500명이상이 13개 업체로 전체의 22.8%를 차지했다. 전체 종업원중 朝鮮族同胞의 비중은 20%이하가 34개 업체로 61.8%의 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70%이상은 대부분 延邊地域 업체들인 8개 업체로 14.5%를 점하고 있다. 이같은 조사 결과로 보면 현지 한국업체들은 종업원 100명 이하의 中小業體 및 支社와 代表事務所 등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朝鮮族 從業員들의 비중도 평균 27.7%로 나타나고 있다.²⁾

최근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中國에 진출한 韓國業體에 고용되어 있는 朝鮮族同胞들 가운데는 사전 예고도 없이 무책임하게 離職하는 사례가 많다던가, 아니면 生産性은 낮은 반면 要求는 높기 때문에 한국기업인들이 조선족 근로자들을 기피하는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설문조사에 의하면 조선족 從業員들의 離職率은 다른 漢族 從業員들과 비슷하며 생산성도 결코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일부 특정한 事例가 과장되어 여론을 誤導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조선족종업원의 이직율이 높다는 응답은 전체의 29.6%

〈表 IV-2〉

朝鮮族 從業員의 移職率

설문내용	빈도수	비율 (%)
다른 종업원에 비해 높다.	16	29.6
다른 종업원과 비슷하다.	25	46.3
다른 종업원에 비해 낮다.	13	24.1

- 2) 이 숫자는 응답기업의 朝鮮族 고용비중을 단순 평균한 것으로서, 全體從業員數를 고려한 加重平均은 이보다 훨씬 낮으며 또한 설문회답 기업중 東北地域의 비중이 전체비중 보다 높기 때문에 실제 全國平均 朝鮮族 雇用比重은 이보다 낮을 것이다.

〈表 IV-3〉

朝鮮族 從業員의 生産性 寄與度

설 문 내 용	빈 도 수	비율 (%)
다른 종업원에 비해 높다.	23	41.8
다른 종업원과 비슷하다.	30	54.5
다른 종업원에 비해 낮다.	2	3.6

인데 비해 다른 종업원과 비슷하거나 낮다는 응답은 전체의 70.4%에 이르고 있다. 朝鮮族 從業員의 生産性 寄與度 面에서도 다른 종업원과 비슷하거나(54.5%) 높다는(41.8%) 응답이 무려 전체의 96.3%인데 반해 낮다는 응답은 3.6%에 불과하였다.

한국기업인들이 朝鮮族 從業員의 이직을 및 생산성 기여도에 대해 보여주고 있는 견해와 마찬가지로 한국기업인의 朝鮮族 從業員에 대한 満足度 조사도 응답자의 41.1%가 대체로 만족하거나, 48.2%가 만족도 불만도 아닌 보통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체로 불만과 아주 불만은 전체의 10.7%에 불과하였다. 이같은 한국기업인들의 朝鮮族 從業員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여 앞으로 한국업체들은 전체의 17.0%가 조선족종업원의 비중을 증가시킬 계획으로 있으며 74.5%는 현 수준을 유지시킬 계획인 것으로 응답한데 비해 8.5%의 少數만이 朝鮮族 從業員의 비중을 감소시키거나 管理職은 늘리고 生産職은 줄일 계획으로 응답하고 있다.

위와 같이 韓國 企業人들의 朝鮮族 從業員에 대한 전반적인 評價는 비교적 肯定的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인 활용 방안에 대한 설문에는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다는 점을 솔직히 지적하고 있다. 朝鮮族 人力을 중간관리자급 이상으로 활용하는 경우 42.7%가 능력있는 朝鮮族 人力의 부족을 지적하고 있고, 34.8%가 불성실, 높은 이직율, 과도한 대우요구 등 朝鮮族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는 응답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15.7%가 漢族 종업원과의 갈등을 우려하고 있으며, 주로 山東省 소재의 소수에 불과하지만 한국 업체간의 과당 스카우트경쟁을 우려하는 견해도 4.5%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朝鮮族 인력을 생산직으

로 활용하는 경우도 관리직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조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조선족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가장 많으며(39.4%) 이어서 中國의 人口移動 제한에 따른 해당 지역내에서의 朝鮮族 人力 확보의 어려움이 높은 비율(31.8%)로 지적되고 있다.

朝鮮族 從業員들과 심각한 갈등 혹은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란 설문에는 26개 韓國業體들이 「있다」, 27개 업체가 「없다」로 응답하여 대답이 반분되고 있다. 갈등을 경험한 경우 문제의 발단은 횡령 등 금전적 문제가 11개업체, 漢族 종업원과의 갈등 문제가 역시 11개업체로 가장 많았으며, 파업주도등 勞使問題를 지적한 업체도 4개로 나타났다. 기타 문제로는 9개업체가 갈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적한 사례를 보면 「기술을 숙련시키면 다른 회사로 간다」 「中國 企業의 사주를 받아 기술을 빼내려 했다」 「일을 가르쳐 놓으면 다른 생각을 한다」 「中國인들이 도둑질하는 것을 보고도 방관한다」등 대체로 같은 동포라고 믿었던 조선족종업원들에게 일종의 배신감을 느꼈던 경

〈表 IV-4〉

朝鮮族 人力 活用上의 問題點

설문내용	중간관리자급이상		생산직 인력	
	빈도수	비중(%)	빈도수	비율(%)
능력있는 조선족인력의 부족	38	42.7	-	-
해당지역내 조선족인력의 부족 및 이동의 어려움(호구문제등)	-	-	21	31.8
조선족의 자세문제(불성실, 높은 이직율, 과도한 대우요구등)	31	34.8	26	39.4
한족종업원과의 갈등우려	14	15.7	14	21.2
다른 한국기업의 스카우트등 과당 경쟁우려	4	4.5	5	7.6
기 타 ^{b)}	2	2.2	0	0.0

註 1) 한 기업의 경우 본사의 규정상 채용이 불가능함을 지적했으며 한 전자업체는 漢族과 달리 항명 및 거부 의사 표현이 강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힘을 토로하고 있다.

韓國 기업인들은 朝鮮族 從業員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같은 갈등과 불신이 발생하는 원인을 매우 다양하게 보고 있다. 그 원인으로서는 문화적·언어적 차이가 32.7%, 朝鮮族의 소양부족이 22.8%, 한국인들의 오만과 무지가 18.8%, 한국기업의 朝鮮族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14.9%, 그리고 기타가 9.9% 지적되는 등 매우 고르게 분포되고 있다. 이는 韓國 企業인들이 갈등의 원인을 쌍방간의 공동책임으로 보려는 비교적 합리적인 견해에서 비롯된 조사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表 IV-5> 韓國企業인과 朝鮮族 從業員間의 葛藤原因

설 문 내 용	빈 도 수	비율 (%)
문화적(언어포함)차이	33	32.7
중국조선족의 소양부족	24	22.8
한국인들의 오만과 무지	19	18.8
한국인의 조선족에 대한 과도한 의존	15	14.9
기 타 ¹⁾	10	9.9

註 1) 대체로 언어문화적 차이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 성장배경의 차이 및 사고방식의 차이등을 기타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表 IV-6> 향후 韓國企業의 中國進出시 朝鮮族의 活用方案

설 문 내 용	빈 도 수	비율 (%)
각종지원을 제공하여 적극적으로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	22	32.8
중국의 한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활용을 줄여야 한다.	9	13.4
연변조선족 자치주등 조선족집중 거주지역 에 한하여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	5	7.5
특별한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	9	13.4
기 타	22	32.8

앞으로 韓國企業의 中國 進出에 있어서 朝鮮族同胞를 어떻게 활용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各種 支援을 제공한다든가, 延邊 같은 朝鮮族의 집중 거주지역에 한해 적극적으로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업체수가 27개 (40.3%)로 다수를 점하고 있으나, 특별한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든가 아니면 漢族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활용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18개 (26.8%)로 나타나고 있어 朝鮮族 근로자에 대한 기피현상이 고개를 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타 의견을 제시한 응답도 22개 (32.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체로 이들의 견해는 같은 동포라 하여 무조건 활용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教育 訓練을 통해 필요한 人力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이다.

朝鮮族同胞가 産業研修 혹은 기타 경로로 국내에 流入되어 노동력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 中國에 진출해 있는 현지 韓國企業인들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를 묻은 질문에 대해 전체의 25.0%인 14개 업체가 다른 外國 勞働者보다 문제가 적을 것임으로 流入을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35.7%인 20개 업체는 문제가 더 클 수 있음으로 축소해야 한다거나, 17.9%인 10개 업체가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는 반응이다. 이러한 다소 부정적인 응답은 朝鮮族 人力의 국내유입이 현지에서의 조선족 인력활용에 장애요소가 되는 측면(예: 韓國에 다녀간 朝鮮族 從業員의 임금인상 요구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기타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업체도 전체의 21.4%인 12개에 이르고 있는데, 대체로 이들의 견해도 무단이탈 및 불법체류를 우려하는 등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韓國 기업인들은 초기 中國進出 과정에서 朝鮮族同胞들의 지원과 협조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현재도 많은 朝鮮族 從業員들이 일부의 추측과는 달리 성실히 근무하면서 비교적 높은 생산성을 실현하고 있으며 會社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대체로 肯定的인 評價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朝鮮族 從業員들의 자질과 소양부족, 언어·

문화적 차이와 사고방식의 차이로 적지않은 갈등과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도 솔직히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葛藤과 不信관계가 심화되는 경우 한국업체들의 朝鮮族 從業員에 대한 기피현상이 확산될 수도 있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韓國人들의 朝鮮族同胞들에 대한 無知와 偏見, 그리고 오만한 태도, 과도한 의존 등을 지적하면서 한국기업인의 認識轉換과 自省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韓國 企業人들은 같은 민족이란 따뜻한 동포애로 이들을 포용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않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韓國 企業人들은 어떤 형태로든 朝鮮族同胞들을 위한 精神教育과 職業訓練을 실시하여, 이들을 책임감있고 유능한 人力으로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先決課題임을 이구동성으로 제기하고 있다.

(3) 朝鮮族 勤勞者들의 韓國企業人에 대한 評價

韓國 기업인들이 朝鮮族 근로자들을 인식하고 평가하고 있는 視覺은 각자의 체험에 따라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兩分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朝鮮族 근로자들의 韓國 기업인들에 대한 평가도 각자의 好,不好에 따라 크게 두가지 상반된 견해로 갈라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朝鮮族 근로자들 가운데는 韓國 기업인들을 부정적으로 보려는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컨대 中國 吉林省 長春에서 발행되는 朝鮮族 新聞인 「吉林新聞」은 최근 山東省 靑島 소재의 30여개 한국투자업체를 직접 취재하여 게재한 企劃記事에서 韓國 기업인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朝鮮族 근로자들의 숫자가 약 80%에 이르는 절대다수였다고 보도하고 있다.³⁾ 직접면담의 방식으로 취재한 記事임으로 통계적 객관성은 결여되어 있으나 朝鮮族

3) 吉林新聞, 「불신의 장벽밖쪽 - 한국경영인과 중국조선족 일군사이의 합작난제를 두고」, 1994년 11월 3일.

근로자들이 느끼는 主觀的 感情의 단면을 이해하는 데는 오히려 설득력 있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이하 기사내용 요지)

朝鮮族 근로자들을 한국업체에 대한 「신비감, 한겨레 한핏줄에 대한 동경, 아세아의 네마리 용인 한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靑島의 한국업체들을 찾고 있다. 이들 중에는 大卒者와 高卒者도 있으며 中 高校 중퇴자도 있고 前職 敎員도 있어 실력과 의식수준이 천차만별이고, 생각과 요구도 다양각색이지만, 단 「돈벌고, 세상구경하고, 도시생활 해보자」는 것만은 대개가 일치한다. 처음 취업한 한국업체에 정착한 이들도 있고 몇 개 회사를 전전한 이들도 있으나, 이들은 한국경영인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主觀的인 감정과 견해를 갖게 된다.

「전 그들에게 많은 것을 배웠어요」 延邊大學 政治學部를 졸업한 전직 중학교 교사이며, 靑島 소재의 한 회사에서 工場長職을 맡고 있는 金氏의 말이다. 「잠을 못 자도 할 일은 꼭 해 놓고야 마는 정신, 오늘 일은 꼭 오늘 해야하고 절대 미루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한번 말했으면 한 대로 실시해요」 延邊農學院을 졸업하고 국제무역을 배우려고 왔다는 朴氏는 「우리들의 관계는 아래사람이 위사람에게 예물을 주고 초대하는 것이지만 이 회사에서는 사장이 수하사람들에게 예물을 주고 그들을 초대해요」라고 말하고있다. 전직 중학교 교사로서 현재 한 회사의 총무과에 근무하는 崔氏는 「사장이 손수 매 종업원들의 생일카드를 만들어 놓고 때가 되면 생일파티를 조직하지요.」라고 말하면서 「조선사람 함께 잘 살아보자」는 구호를 손수 내걸고 있다는 社長을 찬양하고 있다.

高等學校를 졸업하고 한 회사에서 무역업무를 맡고 있는 청년 金氏는 「회사의 엄격한 규율과 엄격한 관리가 자신을 단련시켰다.」고 하고 通化師範을 졸업하고 延邊農學院에 근무한 적이 있는 李氏는 「그들과 함께 생활하니 생활절주가 빨라지고 자연 생활이 충실해짐을 느끼게 됩니다」고 말한다. 전직 공무원으로 현재 한 會社의 과장으로 있는 李氏는 「부지런하고 주인공적이고 꾸물거리는 것을 싫어하고 부쩍부쩍 일을 축내는 본때는 배울만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한 회사의 총무과에 근

무하는 崔氏는 「순 실력으로 해 먹는 곳이지요, 누구나 실력만 있고 또 실력만 키운다면 중용 받고 신임 받아요」라고 하는 등 각자의 체험을 털어놓고 있다.

이같이 韓國 기업인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 절대다수의 朝鮮族 근로자들은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이들은 문명과 예절을 강조하는 한국인들을 존경하고 스스로 예절을 지키려고 노력했으나 점차 한국인들은 위선적이고 이기주의적일 뿐만 아니라 문명치 못한 쌍욕을 마구 해대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적지 않은 韓國 경영인들은 「거지놈」, 「개새끼들」, 「쌍놈」 따위의 쌍욕이 입에서 떨어질 줄 모른다. 아무리 고용된 처지라도 이런 수모는 참고 당할 수가 없었으며, 中國에서 이런 모욕은 당한 적이 없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한국인은 겉다르고 속달라요. 그들의 말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黑龍江省 출신으로 單科大를 졸업하고 한 회사의 총무과에서 일하고 있는 30대 근로자의 말이다. 하루는 社長이 술잔을 나누며 「이제 두달만 지나면 반년 사용기가 차는데 과장으로 진급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한다. 신바람이 난 그는 열심히 일했으나 석달, 녀달이 지나도 아무말이 없더라. 거의 일년이 지난 어느 날 사표를 제출했더니, 노임을 2백원 더 줄 테니 가지 말라고 하더라는 것이다. 이후부터 그는 한국인들을 믿지 않기로 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술집에서 돈 쓰는걸 보면 통큰 사람들 같은데 기실 수하사람들에게 주는 노임은 말할 수 없이 인색한 사람들입니다」 한 회사의 會計로 일하는 金氏의 말이다. 善心은 고사하고 마땅히 줘야 할 돈에서도 1-2원을 깎으려고 신경쓰는 것을 보면 당장 뿌리치고 가고 싶은 생각이 나지만 「그래 주는 만큼만 일해주면 되지」, 「내가 일한 만큼만 빼 가면 그만이다」라는 배신감이 생긴다는 것이다. 열성은 이래서 식어가고 떼 먹고 흠치는 것은 이래서 생긴다는 것이다. 「돈 있는 자량은 잘해도 실은 무섭게 인색한 사람들이래요」라고 말하는 조선족 근로자들이 의외로

많다.

심지어는 「그들은 냉혈동물 마냥 차가워요」라고 말하는 前職 教師 출신의 朝鮮族 근로자는 한 회사의 무역업무를 맡아 일 년 정도 일하다 이유없이 쫓겨 났다는 것이다. 解職되기 전날까지 아무런 기미도 눈치 채지 못했는데 어느 날 아침 출근하자 사무실에 불러 놓고 「할 일이 없으니 나가라」고 하더라. 「기실 그들은 우리 동포들이 예고없이 훌쩍 가버린다고 나무라지만 우리도 그들에게서 배운 겁니다. 쫓을 때는 전혀 고락을 함께한 사람들 같지 않게 말할 수 없이 차지요. 그들이 차니 우리도 자연 차지요」 그의 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렇게 우리를 깔보니 이런 사람들에게 충성하며 뭔가 배워보라고요? 천만의 말씀이라고 알려주십시오」라는 심한 反感을 표시하고 있다. 이런 감정을 지니고 있는 朝鮮族들 중에는 漢族 근로자들을 부추겨 물건을 훔치거나 과업을 선동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길림신문은 韓國 기업인들과 朝鮮族同胞들 간에 심화되고 있는 不信과 反目的 갈등관계를 안타까워 하면서 「거래의 장래와 민족경제의 발전을 갈망하는」 의미에서 「서로 상대의 입장과 처지를 이해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朝鮮族들이 자각하여 역사가 우리에게 준 이 기회를 틀어 잡아야 한다」는 말로 결론을 맺고 있다.

(4) 相互不信의 背景과 問題點

현재 中國에 진출해 있는 韓國 투자업체에서 韓國人들과 朝鮮族同胞들 간에 相互不信과 反目的 갈등관계가 점차 증폭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서로의 立場과 處地에 대한 사전지식의 부족과 이해의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韓國人이든 朝鮮族同胞든 간에 개인적인 자질과 소양의 부족으로 불필요한 마찰을 빚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中國에 진출한 한국업체들로서는 朝鮮族同胞들을 탓

하기에 앞서 中國과 中國人, 그리고 朝鮮族同胞들에 대한 事前 知識과 研究가 충분했던가를 먼저 自省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韓國人들은 中國과의 교류가 오랫동안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中國人은 물론 같은 민족인 朝鮮族同胞들에 대해서도 言語文化的 特性, 生活環境과 態度, 性格과 價値觀등을 이해하고 연구할 기회가 별로 없었다. 朝鮮族同胞들이 中國의 少數民族으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전통적인 가치관이 어떻게 중국적 특성과 공존하며 변모해 왔는가를 잘 알지 못하고 있다. 또한 오랫동안 社會主義 經濟體制 하에서 굳어진 작업방식 및 근로의식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 그러므로 韓國人들은 朝鮮族同胞들의 내면에 잠재해 있는 二重言語와 二重文化的 심리적 특성과 사고방식의 차이를 간과하기 쉽다.

韓國人들과 朝鮮族同胞들은 서로 언어가 통하는 같은 민족으로 처음에는 남다른 친근감과 믿음으로 만나 소박하고 순수한 인정을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주로 言語習慣과 思考方式의 차이에서 비롯된 사소한 오해가 발단이 되는 경우가 많다. 朝鮮族同胞들은 한국인들이 하는 말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韓國人들도 그들이 사용하는 用語나 말투를 오해하고 불쾌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직장의 朝鮮族 從業員들이 上下간의 각듯한 예절을 모른다고 비판받는 것도 社會主義 平等思想에 영향 받은 점도 있으나 대부분 언어생활과 태도의 차이에서 연유한다. 이런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과격한 말로 훈계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얼마든지 반목과 갈등의 불씨로 발전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社會主義體制 하에서 中國人으로 살아온 朝鮮族同胞들이 그들의 전통적인 民族性은 물론 생활태도와 윤리도덕면에 이르기 까지 우리와는 얼마나 다른 모습으로 변화해 왔는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해하려 하지도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中國人들은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社會主義하의 半世紀를 지나오는 동안 일부 계층이나 행정조직 및 기업단위에서

부정적인 태도와 단점이 만성화된 것도 사실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朝鮮族同胞들도 예외일 수 없다. 다시 말해 직장에서 시간 때우기식의 근무태도와 지시사항만 수행하는 무사안일의 근무자세, 上下平等의 고정관념 하에서 창의력과 협력의지가 결여된 책임전가식 업무처리 자세, 책임감과 능력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높은 대우만을 요구하는 불합리한 사고방식 등이 社會主義體制의 만성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改革·開放政策 실시 이후에는 복잡한 행정절차와 법령, 조직과 직위 등을 이용한 脫法과 不正腐敗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조직풍토와 환경속에서 中國人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해 온 朝鮮族同胞들이 市場經濟體制에 적응하기 위한 특별한 再教育과 訓練의 과정없이 한국업체의 고용원으로 채용되었을 때, 그리고 처음부터 그들에게서 소박하고 근면한 근로자의 자질과 소양만을 기대했다면 그것은 일종의 착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韓國 기업인들 가운데는 朝鮮族 근로자들이 책임감과 창의성은 부족한 반면 근무시간을 따지고 평소와 다른 일을 하게 되면 별도의 보수를 바라거나 작업수당의 배분에 있어 사소한 금액차이에도 불만을 나타내는 기질이 있다고 실망하는 이들이 늘어가고 있다. 또한 직장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부족하고 장래에 대한 생활설계와 목적의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불과 몇 푼의 임금차이에도 아무런 사전 예고도 없이 무책임하게 직장을 이탈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개탄한다. 심지어 漢族 근로자들과 합세하여 물건을 빼돌리거나 분쟁을 부추기는 경우도 없지 않다고 분개하는 한국 기업인들도 없지 않다.

물론 이런 문제의 배경과 원인에는 朝鮮族 근로자들의 자질과 소양부족에 일차적인 책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韓國 기업인들 가운데는 70년대 이후 韓國의 고도성장기에 형성된 권위주의적 경영방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등 노사관리의 미숙함을 드러낸 경우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韓國業體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우리 업체간의 스카우트경쟁 및 협조체제 결여가 이들의 무책임한 행동을 조장한

점은 없었는지 자성해 볼 필요도 있다. 또한 中國 진출기업의 경영자들이 中國의 현실에 대한 충분한 정보축적 없이 성급하게 진출한 결과로, 현지에서 朝鮮族 종업원에게 과도하게 의존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흔하다. 예를 들면, 朝鮮族 通譯에게 通譯 이상의 기여를 기대하다가 문제 해결이 안되는 경우 책임을 朝鮮族에게 돌리는 일도 있다고 보인다. 또한 初期에는 朝鮮族 人力의 도움을 받다가 시기가 지남에 따라 그 필요성이 감소하게 되고, 이에 따라 待遇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흔히 나타난다. 이유야 어디에 있든 이같은 상호 불신과 갈등관계의 증폭은 해당 기업과 근로자의 손실로 귀착되며, 나아가 朝鮮族同胞들에게는 한국업체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점차 감소하는 결과를 자초하게 되고 또한 韓國業體도 朝鮮族同胞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은 상호간에 자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2. 國內勞動力 供給의 役割과 問題點

(1) 朝鮮族同胞 勞動者의 概念

과거 해외에 勞動力을 대거 수출하던 韓國이 외국인 노동력의 輸入市場으로 변모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80년대 말부터 나타난 현상이다. 즉 韓國만이 아니라 東아시아 新興工業國家인 대만, 싱가포르 등의 경우에도 인접한 인구과잉 국가인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방글라데시, 中國 등으로 부터 노동력이 유입되는 하나의 커다란 흐름이 나타났다. 물론 이같은 勞動力 移動 현상의 배경에는 이들 동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의 經濟成長으로 人力不足 문제가 표면화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외국인 노동자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증대되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88년 서울올림픽대회 이후 이른바 3D業種(더

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의 기피현상으로 노동력 부족을 호소하는 勞動市場 부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單純 肉體勞動을 기피하는 풍조가 사회전반적으로 확산되면서 제조업 부문의 생산직 노동력이 서비스 부문으로 대거 이동하는 추세가 표면화되었다. 그 결과로 中小 製造業 部門과 建設業 部門에서 심각한 인력수급의 불균형 현상이 나타났으나, 그 부족한 노동력을 內國人으로 충원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인접한 東南亞지역의 외국인 노동력이 國內로 유입되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다.

이같은 國內 勞動市場의 구조적 전환기와 때를 같이하여 오랜 기간 단절되었던 韓國과 中國의 관계가 점차 개선되고 中國 朝鮮族同胞들의 母國訪問 機會가 확대되면서 이들 가운데 일부가 국내의 勞動市場으로 유입되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었다.

〈表 IV-7〉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入國條件과 審査가 강화된 93년도 이전에는 연간 3만명 이상의 朝鮮族同胞들이 입국하였으며 입국자수에 비해 출국자수가 현격히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朝鮮族同胞들이 언어와 외모면에서 우리와 같은 韓民族이라는 利點이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어렵지 않게 국내에 체재하면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던 당시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韓國은 법률상 외국인의 국내 취업을 기본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필수 불가결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외국인의 취업을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朝鮮族同胞들은 中國에서 태어나 성장하였고 법적으로 中國籍의 外國人이란 신분상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국내취업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간 韓國政府는 이들 朝鮮族同胞들을 포함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非合法的으로 취업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삼아 공식적으로는 항상 단속과 경고를 반복해 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심각한 人力難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들의 강력한 요청을 감안

〈表 IV-7〉

中國 朝鮮族同胞의 年度別 出入國者 現況

구 분	계	출 국	입 국	
'91	계	54,117	17,970	36,147
	남	29,493	9,963	19,530
	여	24,624	8,007	16,617
'92	계	53,319	22,314	31,005
	남	29,716	12,409	17,307
	여	23,603	9,905	13,698
'93	계	31,312	19,585	12,227
	남	18,993	11,473	7,520
	여	12,819	8,112	4,770

資料: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하여 사실상 그들의 취업을 묵인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産業技術 研修生이란 편법적 취업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함으로써 현실적 필요성에 대응해 온 것이 그간의 실정이다.

우리의 민족적 정서로 볼 때 단순히 外國籍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在 中國 同胞들을 외국인으로 표현하고 대우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못한 일이다. 그러나 현행 出入國管理法하에서는 이들의 永久歸國 및 장기체류는 내국인과의 婚姻에 의한 歸化와 외국인의 합법적 취업을 허용하는 극히 제한된 경우에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朝鮮族同胞들의 대부분은 限時的인 체류자격으로 입국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 하여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朝鮮族同胞 勞動者들이 모두 불법체류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취업의 適法性을 기준으로 朝鮮族同胞 人力을 분류해 볼 때 合法的 취업자, 便法的 취업자, 不法的 취업자 등 法的인 지위가 상이한 3가지 유형의 노동자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⁴⁾

4) 설동훈, 「국내거주 이민노동자의 생활실태」, 한백연구재단 포럼지 1994년 여름

첫째로 合法的 취업자의 경우는 극히 少數이기는 하나 출입국 관리법 상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한 상사주재, 기업 투자, 교육연구, 특정 전문 직업, 장기취재, 예술홍행 등의 체류자격을 얻어 입국한 朝鮮族同胞들을 말한다. 또한 엄격히 구분하면 외국인 入國者의 범주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우리정부의 적법한 자격심사를 거쳐 韓國籍 遠洋商船에 승선하고 있는 朝鮮族同胞 船員의 경우도 합법적 취업자로 간주할 수 있다.

둘째로, 便法的 취업자는 지난 92년부터 산업기술연수생 제도에 의해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하고 있으나 엄격히 구분하여 合法的 ‘勤勞者’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朝鮮族同胞 연수생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대부분 국내의 필요에 의해 中小 製造業體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은 研修란 공식적인 入國手段일뿐 실제로는 편법적 취업이 허용되고 있는 일종의 輸入勞動者라 할 수 있다.

셋째로 不法的 취업자는 친척방문등의 短期資格 查證을 얻어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불법 체류하면서 취업하고 있는 다수의 朝鮮族同胞들을 말한다. 또한 최근 산업기술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한 후 지정된 제조업체를 이탈하여 다른 직장에 불법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朝鮮族同胞들도 여기에 해당한다.

(2) 合法的 就業의 事例

韓國政府는 외국인의 국내취업을 內國人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특수분야에 한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별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신분인 朝鮮族同胞가 국내에 합법적인 취업의 기회를 얻기란 극히 어렵다. 현행 出入國管理法上 외국인의 합법적인 취업을 허용하고 있는 자격은 취재(D-5), 종교(D-6), 상사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

pp. 72-95.에서 외국인노동자를 합법취업 이민노동자, 편법적 산업기술연수생, 불법체류 이민노동자로 분류한 방식을 인용하여 朝鮮族同胞 노동자를 합법적 취업자, 편법적 취업자, 불법적 취업자등 3가지 유형으로 대별하였다.

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홍행(E-6), 특정직업(E-7)등 12개 부문이다. 현재 국내에 합법적으로 취업 중인 朝鮮族同胞는 <表 IV-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극히 少數에 불과하며, 그것도 商社駐在와 企業投資에 집중되고 있다. 商社駐在와 企業投資는 中國系商社나 投資企業에 고용된 형태이다.

다음으로 현행 出入國管理法上 국내에 체류중인 등록 외국인으로 분류되지는 않고 있으나, 정부 관계당국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정의 자격심사를 거쳐 韓國船主協會 會員船社에 고용된 朝鮮族同胞 船員의 경우는 국내의 합법적인 취업자로 간주할 수 있다. 이들은 國內法の 지배를 받는 國籍 外航船上에서 한국선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80년대 말부터 개별기업의 차원에서 朝鮮族同胞를 해외의 韓國 遠洋漁船이나 建設現場의 근로자로 채용한 사례는 있으나 정부의 공식 승인을 얻어 適法하게 朝鮮族同胞를 고용한 것은 國籍 外航商船의 경우가 처음이다.

國籍 外航商船의 경우 3D업종의 기피현상이 심화되어 海上職의 기존 선원들이 陸上의 他 職種으로 이직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신규 인력의 창출이 감소하여 일부 하위직급에 있어서는 심각한 선원부족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국적 외항상선의 운항에 차질이 발생하자 91년 7월 韓國船主協會와 全國船員勞動組合聯盟간에 부분적인 外國人 船員의 乘船에 합의했다. 그리고 동년 10월 北方經濟政策實務委員會의 심의를

<表 IV-8> 合法的 就業관련 查證所有 朝鮮族同胞 數(1993年)

구 분	체류자격							
	상사주재	기업투자	교 수	회화지도	연 구	예술홍행	특정직업	합 계
남	26	19	4	0	1	1	6	57
여	25	5	0	1	0	0	1	32
계	51	24	4	1	1	1	7	89

資料: 법무부, 「출입국관리통계 연보, 1993년도」, 1994. pp.238-239.

거쳐 朝鮮族同胞 인력의 선원고용 지침이 제정 시행케 되었다. 同 지침에 의거 한국선주협회는 선원 수입창구인 東北船舶(株)으로 하여금 中國의 선원 송출기관인 中海延邊公司와 中國 朝鮮族 선원의 양성·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下位職船員을 混乘시키기 시작했다.

지난 91년 11월 1차로 105명의 고용승인을 받아 척당 3명씩 승선시키기 시작한 이래 지난 3년간 모두 7차례에 걸친 고용승인을 통해 94년 11월 현재 국내 20개 船社의 국적 외항상선에 모두 324명의 朝鮮族同胞船員이 승선하고 있다. 朝鮮族同胞 선원의 경우는 척당 승선인원의 제한과 고용 승인절차의 복잡성등으로 인해 고용인원의 증가는 비교적 완만한 편이며 휴가선원 및 교체대기 선원을 제외하면 승선인원은 300여명 수준에서 안정되고 있다. 현재까지 朝鮮族同胞 선원들은 비교적 충실한 事前·事後 管理와 船上 근무라는 특수한 고용 환경으로 인해 陸上勤務의 산업기술연수생에 비해서는 無斷 離脫者數가 극히 적은 편이나 韓國 실정에 맞는 교육훈련과 정신자세의 부족 등으로 징계하선 및 고용취소의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朝鮮族同胞 船員들은 韓國船員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수준에도 불구하고 韓國 海運人力의 한 부분을 충원해주고 있으며 한국해운의 발전을 위해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表 IV-9〉 朝鮮族同胞 船員의 國籍商船 乘船人員現況 (1994년 11월 현재)

직급별 승선인원			합 계	고용승인차별 승선인원						
갑판원	기관원	사주부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159	137	28	324	21	43	57	21	105	36	41

資料 : 동북선박 (주).

(3) 便法的 就業의 現況

현재 시행되고 있는 外國人 産業技術研修生 制度는 공식적으로는 入國目的이 산업연수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研修라는 명목으로 입국하여 곧바로 생산현장의 근로자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합법적인 고용과는 구별되는 便法的인 외국인 고용제도와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같은 외국인 연수생 제도는 法務部 訓令 225號인 「外國人 産業技術研修 査證發給등에 관한 業務指針」에 의거하여 1991년 11월 1일 부터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이 지침에 의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은 外國換管理法에 의하여 외국에 기술을 제공하는 산업체(海外投資), 技術開發促進法에 의하여 외국에 기술을 제공하는 산업체(技術提供), 對外貿易法에 의하여 외국에 산업설비를 수출하는 산업체(産業設備輸出)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연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主務部處의 長이 추천하는 산업체(商工部長官 추천)등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연수생 수는 산업체별로 50명 범위 내에서 法務部長官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수기간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간 연장할수 있는 조건하에 외국인 미숙련노동자를 국내에 채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같은 産業技術研修生 제도의 시행으로 지난 92년부터 中國에 投資한 기업 또는 산업설비를 中國에 수출한 企業을 중심으로 朝鮮族同胞 노동자들을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시켜 인력부족에 대처하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후 국내 中小企業의 인력난이 계속 가중되고 이른바 3D업종에 대한 취업기피 현상이 확산되자 1992년 8월 정부는 심각한 求人難에 시달리고 있는 염색, 도금, 열처리, 주·단조, 기계류, 신발, 유리, 피혁, 전기, 전자등 10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商工部長官의 추천으로 1만명이내의 범위내에서 외국인 연수생의 도입을 허용하였다. 이같은 정부의 조치로 1992년에는 4467명, 그리고 1993년에는 5445명의 中國籍者가 산업기술연수 사증을 발급받게 되었는데, 그 가

〈表 IV-10〉

外國人 産業技術研修 査證 發給現況

국적 년도	중국	필리핀	태국	인도네 시아	스리 랑카	말레 시아	베트남	방글라 데시	도미 니카	기타	합계
92년	4,467	1,764	762	1,112	280	178	125	154	70	164	9,076
93년	5,445	1,754	485	964	414	75	527	0	0	561	10,225

資料: 법무부 「출입국관리통계연보 1992」, 1993, P.271. 「출입국관리통계연보 1993」, 1994, P.312.

운데 언어소통이 용이한 朝鮮族同胞 勞働者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였
다.

한편 93년 하반기부터 國內景氣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자 국
내 중소기업들은 극심한 인력난으로 생산직 인력 확보율이 더욱 하락하
는 현상이 나타났다.⁵⁾ 이를 반영하여 국내 근로자들의 3D업종 기피현
상, 특히 地方 中小企業과 小企業에 대한 취업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되
었으며 中小企業의 낮은 임금으로 이직율이 높아지자 이를 메꾸기 위해
외국인들을 불법으로 채용하는 中小企業이 급증하여 사회문제화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政府는 중소기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불법취업자를 대체할 목적으로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의 강력
한 건의를 받아들여 1993년 10월 2만명의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을 신
규로 받아드리기로 결정하였으며, 94년 11월부터는 섬유와 신발업체를
대상으로 1만명의 연수생 도입을 추가로 허용하였다.

이같은 정부의 조치에 따라 中小企業協同組合 中央會는 산하에 전담
기구인 「産業技術研修協力團」을 신설하고 1차로 93년 6월말 현재 인력
부족율이 5% 이상인 21개 업종의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초청희망 대

5)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전국 7만3천3백64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
한 「93년 중소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생산직 인력확보율이 11년
만의 최저수준인 84.8%를 기록했으며 小企業 (종업원 5-19인)의 경우는 75.7%
에 그쳤다.

〈表 IV-11〉 産業技術研修生 國家別 配定人員 및 入國者 數 (1994년 11월말 현재)

구 분	中 國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방글라데시
	漢 族	朝鮮族				
배정인원	2,000	6,022	3,008	2,540	1,000	1,600
입국자수	7,469		2,619	2,496	935	1,521
구 분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네팔	이란	계
	배정인원	800	1,000	930	800	300
입국자수	617	733	927	767	220	18,304

資料: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업기술연수협력단.

상국과 연수 인원수를 신청받았다. 그 결과 전국의 5355개 중소기업체로 부터 24,820명의 신청을 받아 4221개 업체에 2만명을 배정하였다. 연수업체별 인원 배정은 생산직의 常時勤勞者 規模에 따라 종업원 10-50명 업체는 5명, 51-100명 업체는 10명, 101명-200명 업체는 15명, 201-300명 업체는 20명을 기준으로 하고, 특히 93년 12월1일부터 15일간의 기간중 불법체류외국인을 자진신고한 고용업체중 공장등록이 되어있고 숙박시설을 갖춘 업체의 경우는, 신고된 인원을 우선 배정하였다. 그 결과 中國이 가장 많은 8천명이 배정되었으며, 그 가운데 절대 다수인 6천여명이 朝鮮族同胞로 배정되었다.

이같은 산업기술연수생의 추가허용으로 朝鮮族同胞 노동자들은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월등이 많은 약 6천여명이 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하여 국내 중소기업체에서 일하게 되었다. 이는 1차 配定 연수생 2만명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인원이며 中國에 배정된 8천명의 75%에 이르는 절대다수로서 國內 中小企業들이 언어소통이 자유로운 우리 동포들을 선호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95%가 입국을 완료한 94년 11월말 현재 이미 1천여명 이상의 朝鮮族同胞 연수생들이 불리한 임금수준 등을 이유로 직장을 이탈하여 다른 직장으로 불법 취업해가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 朝鮮族同胞 研修生들의 이탈사고로 연수업체의 생산차질은 물론 사후관리의 책임소재 문제 등이 제기됨에 따라 朝鮮族同胞 연수생들에 대한 국내업체들의 선호도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1994년 11월 16일 中小企業協同組合 中央會가 전국 1백 61개조합 1만6천3백62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外國人研修者 需要調査」 결과발표에 따르면 朝鮮族同胞에 대한 선호도가 中國 漢族, 필리핀에 뒤지는 3위로 하락함에 따라 앞으로 朝鮮族同胞들의 연수생 자격 입국 전망이 밝지 못함을 시사하고 있다.

〈表 IV-12〉

中小業體의 國家別 外國人研修者 必要人員

구 분 \ 국 별	中國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방글라데시
	朝鮮族	漢族				
필요인원	6,971	18,567	12,565	5,044	550	2,825
구 분 \ 국 별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네팔	계	
	필요인원	479	1,479	4,190	1,003	59,508

資料: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외국인 연수자 수요조사」, 1994.

(4) 不法的 就業의 實態

그간 朝鮮族同胞들이 국내에 입국하여 불법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類型을 구분해 보면 대체로 다음의 두가지 형태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그 하나는 비교적 폭넓게 친척방문을 허용했던 93년 이전에 주로 나타났던 현상으로, 最長 3개월의 체류가 가능한 短期訪問 査證을 발급 받아 입국한 후 국내업체에 취업하여 査證滿了 기간이 지나서도 출국하지 않고 계속 직장에서 일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다음은 친척방문을 목적으로 한 査證發給 조건이 강화되고 外國人 産業技術研修生제도가 도입된 93년 이후 최근에 급증하기 시작한 현상으로서 연수생 자격으로 입

국한 朝鮮族同胞들이 지정된 직장을 무단 이탈하여 다른 직장에 불법적으로 취업한 경우이다.

朝鮮族同胞를 포함한 외국인 불법취업자들은 그 特性상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대체로 1990년경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여 首都圈을 중심으로한 영세 중소기업, 건설현장 및 식당등에 최고 10만명까지 취업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그간의 반복시행된 단속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강제 추방되고, 그 과정에서 業主에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가하는 사례가 빈발하자 그 숫자는 현격히 감소하였다. 法務部 집계에 의하면 93년말을 기준으로 국내에 약 5만명의 불법취업 외국인이 체류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그중 약 2만 1천여명이 朝鮮族同胞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간 계속된 단속에도 불구하고 朝鮮族同胞 불법체류자의 숫자가 줄지않고 2만명선을 유지하고 있는것은 朝鮮族同胞들이 목돈을 벌기 위해 미리부터 불법체류를 계획하고 입국하는 데다 언어상의 불편이 없고 외모가 같은 동포이기 때문에 단속을 피하기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우리 정부의 朝鮮族同胞에 대한 政策不在와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일관성 없는 정책이 이를 조장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法務部는 지난 1992년 6월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의 일제신고를 받아 업주에 대한 처벌은 면제하고 業主 責任하에 1992년 12월 31일까지 국내 체류를 사실상 허용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조치는 業界와 經濟部處의 現實論에 밀려 1993년 6월말, 1993년 12월 말, 다시 1994년 5월말까지 4번이나 연기됨으로서 法務部의 단속에 적발되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불법체류할 수 있다는 인식을 朝鮮族同胞를 비롯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심어 준 결과가 되었다.

朝鮮族同胞들이 불법체류를 미리 계획하고 입국하는 현상은 친척방문 목적의 입국자뿐만 아니라 최근 산업기술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한 朝鮮族同胞들에게 까지 확산되어 이들이 제조업체에 배치되자마자 대거 무

단이탈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中小企業協同組合 中央會가 94년 5월부터 들여오기 시작한 朝鮮族同胞 연수생 6천여명 가운데는 불과 7개월 사이에 무려 1천여명의 무단 이탈자가 발생하여 이 기간중의 전체 외국인연수생 이탈자의 76%를 점하고 있다.

〈表 IV-13〉 中國 朝鮮族同胞의 不法滯留者 現況

년 도	계	남 자	여 자
92년	22,128	11,566	10,562
93년	21,387	11,161	10,226

資料：法務部 出入國 管理局

〈表 IV-14〉 國家別 産業技術 研修生 離脫者 現況 (94년 11월말 기준)

국 별	중국 ^{a)}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방글라 데 시	파키 스탄	스리 랑카	인도네 시 아	네팔	이란	합계
	이탈자수	비 율 ^{b)}									
이탈자수	1268	132	22	82	61	36	2	1	25	0	1,629
비 율 ^{b)}	76.39	6.63	1.44	5.36	3.99	2.35	0.13	0.07	1.64	0.00	100

註1) 總 이탈자중 각 국가별 이탈자의 백분율 환산임.

註2) 中國의 경우 漢族과 朝鮮族 이탈자가 구분되지 않았으나 대부분 朝鮮族 이탈자로 추정됨.

資料：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산업기술연수협력단.

(5) 勞動環境과 問題點

현재 국내에서 合法이든 不法이든 직장에 취업하고 있는 朝鮮族同胞 노동자들은 민족적으로는 같은 동포들이지만 法的으로는 國籍이 다른 외국인이란 신분상의 二重性으로 인해 적지 않은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체로 韓國에 처음 입국할 때에는 韓國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朝鮮族同胞들이 일단 도착하여 한국생

활에 적응하는 동안 점차 부정적으로 생각이 바뀌는 경향이 있는 것도 주로 이같은 二重性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간 朝鮮族同胞들에 대한 국내 일반의 인식과 정부의 정책도 상황 변화에 따라 이중의 잣대를 적용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중국동포들의 母國 訪問이 허용되기 시작한 초창기만 해도 일반 국민들은 따뜻한 동포애로 환대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出入國管理에 관대했다. 그 결과 朝鮮族同胞들의 친척방문이 급증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최장 3개월의 체제기한이 경과하고도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자로 남아 국내 노동시장에 유입됨으로써 불법취업이란 사회문제를 야기했던 것이다.

이같은 불법체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法務部 당국은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취업자의 자진신고를 받아 출국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전환했다. 또한 韓·中關係가 정상화된 이후에는 朝鮮族同胞들의 무절제한 韓國 訪問을 억제하기 위해 오히려 出入國管理를 더욱 엄격히 강화하였다. 즉 55세 미만의 친척방문을 불허하고 商用目的의 방문도 일정한 거래 실적을 입증하지 못하면 불허하는등 한국방문의 기회가 더욱 좁아짐에 따라 不法滯留子의 숫자도 현저히 줄어든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出入國 당국의 집계에 따르면 현재도 2만 명 이상의 朝鮮族同胞들이 불법체류 상태에서 불법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오히려 불법체류라는 약점 때문에 일을 하고도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한다든가 심지어는 임금조차 체불당하는 사례마저 발생하고 있다. 물론 朝鮮族同胞 노동자들은 言語의 불편이 없고 內國人과 용모가 같아 다른 외국인 불법 취업자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이다. 그러나 이들도 출입국당국의 단속을 피해 자주 직장을 옮기는 불안한 생활을 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또한 雇用主들도 이들의 離職을 방지하기 위해 旅券을 강제로 보관해 두는 사례가 적지 않아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열악한 노동환경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건강을 크게 위협받거나 産業災害를 당하는 이들도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노동착취와 인권유린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자 정부

당국은 朝鮮族同胞를 포함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事業主와 雇傭契約을 맺고 근로를 제공했다면 韓國의 勞動法상 정당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 지난 94년 2월부터는 불법체류 노동자에게도 産業 災害補償法에 따른 재해보상, 勤勞基準法상의 퇴직금, 휴업급여규정 등과 最低賃金法, 男女雇用平等法 등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朝鮮族同胞 불법체류자들은 주로 남자는 영세 제조업체나 건설 공사장에서 여자는 주로 식당 등에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질적인 法的 보호와 혜택을 받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결국 朝鮮族同胞 불법체류자들은 法的 身分의 불안정과 열악한 노동 환경속에서 韓國과 韓國人에 대한 심한 위화감과 실망감을 체험하게 되고 급기야는 母國에 대한 反感마저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문제 시되고 있다. 최근 경희대학교 황승연교수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韓國을 떠나는 朝鮮族同胞중 43%가 주변의 한국사람들이 자기들을 차별하고 무시했다고 응답하였고, 또한 69%가 노력한 만큼의 적절한 대우를 못 받고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32.8%가 일하고도 제 때에 보수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⁶⁾

한편 지난 1992년 6월 실시한 불법체류자 自進申告에 의한 출국 유도 조치도 그 후 出國時限을 4차례나 연기함으로써 韓國政府의 출입국정책에 대한 불신만을 증폭시킨 결과가 되었으며 불법취업자를 대체하기 위해 9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中小企業協同組合 中央會의 産業技術研修生 制度도 새로운 유형의 朝鮮族同胞 불법취업자를 양산하고 있다. 이 제도의 확대 실시로 朝鮮族同胞들이 입국하기 시작한 지 불과 7개월이 경과한 94년 11월말 기준으로 이미 1천명 이상의 연수생들이 지정된 직장을 이탈하여 다른 직장에 불법취업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어 새로운 문제가 되고 있다.

6) 경희대 황승연 교수가 「韓國訪問 中國同胞들의 문화적 적응에 관한 연구」를 위해 1994년 6월 仁川-天津간의 여객선상에서 韓國을 방문하고 출국하는 朝鮮族同胞 2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특히 朝鮮族同胞 연수생들의 무단이탈자가 예상보다 많은 것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신설된 전담기구인 産業技術研修協力團의 경험부족과 事前 및 事後管理의 미흡 등에도 원인이 있고, 朝鮮族同胞 연수생들이 언어나 용모 면에서 이탈하기 유리하고 이미 입국해 있는 朝鮮族同胞 친지나 악덕 중간알선업자의 주선으로 다른 직장을 구하기 용이하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朝鮮族同胞 연수생의 月給與가 기본급이 美貨 260달러 (韓貨 약 20만원)선으로 불법취업자 임금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황승연 교수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朝鮮族同胞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한달 수입은 30만원 미만이 19.2%, 30만-50만원이 31.5%, 50만-100만원이 가장 많은 42.5%였으며 월 1백만원 이상도 6.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朝鮮族同胞들의 절반 이상이 내국인과 별차이 없는 임금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므로 朝鮮族同胞 연수생 이탈자들은 이미 송출업체에 지불한 과도한 보증금과 수속비는 물론 비공식적 경비등을 충분히 만회하고 면목을 세울 정도의 돈을 벌여 귀국하자면 무단이탈하여 다른 직장에 불법취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계산하에 입국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⁷⁾

朝鮮族同胞 勞働者들의 입국이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産業研修生은 물론 심지어 不法就業者들도 국내 勞働市場의 공백을 메워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朝鮮族同胞 노동자들이 취업하고 있는 職種은 국내의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3D 業種과 같은 작업장이 대부분이어서 내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들이 건설, 섬유, 봉제, 피혁등 일부업종

7) 朝鮮族同胞 연수생들은 공식적인 보증금 및 수속비명목으로 일인당 人民幣 1만8천元을 송출업체에 지불하고 선발되었으며 소개비조의 비공식경비를 포함 人民幣3만元정도를 지불하고 선발된 이들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연수생들은 이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리의 부채를 지고 왔다는 것이 그들의 증언이다.

의 單純人力 不足問題를 해소해 주고 경쟁력을 어느 정도 유지시켜줄 뿐만 아니라 낮은 임금과 용이한 노동통제를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지속적인 流入은 중소기업체의 産業構造 조정을 지연시키고 이들 업체들의 임금구조를 왜곡시켜 노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므로 朝鮮族同胞를 포함한 외국인 노동자의 輸入문제와 관련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와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특히 최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産業技術研修生 制度에 대한 적절한 補完策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韓國經濟의 발전단계와 인력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볼 때 어느 정도 外國人力에 의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적어도 朝鮮族同胞를 포함한 해외교포의 2-3世代에 대한 합법적 장기체류 및 취업의 기회를 허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불법취업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같은 동포간의 위화감과 갈등을 해소하고 人力難의 일부나마 해결하는 代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南北韓 經濟協力促進을 위한 役割과 限界

(1) 南北韓 間接交流의 仲介役割

延邊을 비롯한 東北3省지역에 주로 거주하고 있는 中國의 朝鮮族同胞들은 豆滿江과 鴨綠江을 사이에 두고 北韓과 인접해 있는 관계로 邊境貿易과 親戚訪問 등을 목적으로한 北韓과의 접촉과 왕래가 비교적 자유로운 입장에 있다. 동시에 이들 朝鮮族同胞들은 韓·中關係의 개선을 계기로 韓國訪問의 기회도 확대되고 있어 南北韓 양쪽을 모두 드나들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中國의 朝鮮族同胞들은 北韓을 방문하는 기회에 中國의 改革과 開放政策 이후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中國의 변화상과 그들이 알고 있는 韓

國에 대한 단편적 지식을 복한 내부에 은밀히 口傳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이들이 北韓 방문기간중 보고들은 北韓의 실상이 자연스럽게 韓國에 전달됨으로서 폐쇄적인 北韓의 내부사정을 이해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南北韓間의 냉전적 사고와 긴장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南北은 분단과 대립의 당사자들이지만 中國 朝鮮族의 입장에서는 南이나 北이나 모두 한 핏줄을 나눈 同胞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공정한 입장에서 서는 仲介者가 될 수 있다고 그들은 믿고 있다. 中國의 朝鮮族들은 이같은 南北韓 관계에서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유리한 입장을 활용하여 南北韓간의 민족적 화해와 경제교류를 촉진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실제로 延邊, 北京, 丹東, 瀋陽 등지에서 北韓과 연계를 맺고 있는 朝鮮族들 가운데는 南北韓 商社간의 상담을 주선하고 仲介貿易을 알선하면서 자신들도 돈벌이의 기회를 포착하려고 열심히 뛰고 있다.

그간 北韓을 직접 방문할 수 없었던 韓國企業들은 延邊과 北京 등지의 朝鮮族同胞들을 北韓에 들여보내 상담을 추진한 사례가 적지 않았으며, 北韓의 商社들도 주로 北京의 韓國商社와 직접 접촉하거나 아니면 中國의 朝鮮族을 중개자로 내세워 交易과 賃加工을 추진해 왔다. 그리고 최근에는 延邊에 기반을 두고 있는 朝鮮族 事業家들 가운데는 北韓當局으로부터 특정한 事業權을 확보한 후 韓國의 기업들과 접촉하여 3角協力 方式의 合作事業 및 仲介貿易을 추진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中國 延邊朝鮮族自治州에 소재한 延邊航運公司(대표: 전용만)는 94년 초 北韓當局의 허가를 얻어 釜山-淸津間의 直航路를 개설한 사례가 있으며 94년 11월에는 북한당국과 5년간의 장기계약을 체결하고 청진항을 통해 매년 1백만톤의 北韓産 건축자재용 모래를 국내에 반입할 수 있는 길을 텃다. 또한 같은 延邊 소재의 鮮虎企業集團(대표: 이철호)은 93년 北韓當局과 청진-회령간 고속도로 및 청진항 부두건설의 합작계약을 체

결하고 자금과 기술을 제공할 韓國의 合作先을 모색했던 사례가 있으며, 94년 10월에는 북한 당국으로부터 羅津·先鋒지역 토지의 임대·개발 및 이용권을 얻어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北韓의 羅津·先鋒지역 개발사업 및 대형 인프라 개발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對外經濟協力推進委員會(위원장: 김정우)는 주로 朝鮮族同胞 사업가들을 내세워 對南接觸의 중개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金日成 사후에는 한국과 대만 등 非修交國과의 경제협력을 위한 창구로 高麗民族産業發展協會(회장: 이성록)를 설립하고 中國의 北京에 사무소를 개설함으로써 한국 기업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적극적 자세로 전환하고 있다.

한편 韓國 政府當局도 美國과 北韓간의 제네바 核協商이 타결됨에 따라 기업인의 訪北등 남북간 경제인사의 상호방문을 허용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 이를 계기로 쌍용그룹 투자조사단의 북한방문이 실현되었으며 삼성, 대우, 현대등 大企業은 물론 中小企業들도 北韓訪問 및 對北韓經協의 창구를 열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의 직접적인 접촉과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北韓當局은 여전히 北京의 창구를 통해 韓國 기업인을 직접 접촉하거나 延邊의 朝鮮族 중개인을 통해 간접 접촉하는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北韓의 제한적인 對南 접촉 및 간접적인 접촉방식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앞으로도 韓國企業이 北韓과 경제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北京과 延邊을 중심으로 北韓과 연계를 맺고 있는 朝鮮族同胞들의 중개적 역할을 계속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인다.

(2) 羅津·先鋒地域 進出의 同伴者 役割

대내외적으로 극히 폐쇄적이고 경직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北韓은 나진·선봉지역 개발문제에 있어서는 비교적 유연하고도 기민한 추진력

을 보여 왔다. 北韓이 나진·선봉 지역을 自由經濟貿易地帶로 지정하고 外國資本을 유치하여 국제적인 貨物수송 중계지와 수출가공기지로 개발 하겠다는 것은 외부충격의 완충과 흡수를 전제로 제한적인 開放을 시도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일련의 關聯法令 改定 및 制定은 일종의 초보적인 改革措置로 해석할 수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北韓은 평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다른 지역과 격리·차단된 나진·선봉 지역에 한국기업을 받아들여도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을 뿐 아니라 다른 外國企業의 유치를 위해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계산하고 있는 것 같다. 실제로 北韓의 外國人投資法 제 5조, 合作企業法 제 5조, 外國人企業法 제 6조, 自由經濟貿易地帶法 제 7조등에 규정되어 있는 “공화국 영역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라는 용어에 韓國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해석이 직간접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므로 현 단계에서 습습이나 單獨投資에 의한 韓國企業의 나진·선봉 지역에 대한 진출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기업의 나진·선봉 지역진출은 北韓이 이 지역개발의 초기단계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해 줌으로서 南北韓 經濟協力の 필요성과 실효성을 인식시켜 주고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유도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나진·선봉지구 개발계획의 성패는 장차 北韓의 보다 적극적인 開放과 改革의 시금석이 될 것이며, 統一 실현에도 지대한 파급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南北韓 관계는 비록 核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人權問題라든지 정치, 군사적 문제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긴장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南北韓 經協은 언제든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韓國의 對北投資企業은 일단 南北韓間의 긴장이 고조되는 경우 北韓의 韓國人에 대한 출입봉쇄등 돌발적인 위험부담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취약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事前 대비에 철저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나진·선봉지역이 비록 北韓이 법적으로 보장한 자유경제구역지대라 하더라도 우리 기업이 진출할 때에는 인접한 中國 延邊朝鮮族

自治州의 朝鮮族同胞 企業과 협력하여 同伴 진출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진출방식의 하나가 될 수 있다. 특히 韓國의 中小企業의 경우는 人力과 組織면에서 대기업에 비해 열세에 있기 때문에 비교적 北韓當局과 연계가 있는 朝鮮族同胞의 협력과 지원하에 진출함으로써 예측불허의 돌발 사태하에서도 北韓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 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中國의 延邊地域은 우리와 오랜 역사적 연고를 지닌 지역인데다 다수의 朝鮮族이 거주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의 개혁과 개방정책에 의해 개발 붐이 일고 있을 뿐만 아니라 琿春經濟特區를 비롯한 豆灣江 開發의 열기로 한껏 기대가 부풀어 있다. 그러므로 이 지역의 朝鮮族同胞들은 많은 한국기업들이 延邊地域에 진출하여 투자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다시 北韓의 나진·선봉지역에 진출할 경우 지원과 협력을 제공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며 가능하다면 同伴進出하기를 희망하고 있다.⁸⁾

中國의 延邊地域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朝鮮族同胞들과 同伴者가 되어 나진·선봉지역에 다시 진출하는 방안은 위험부담에 대한 예방적 차원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南北韓 直接經協을 촉진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다. 과거 臺灣이 中國의 深圳經濟特區에 처음 투자할 때 홍콩등지의 華僑나 現地法人을 통한 間接進出로 큰 성과를 거둔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한국 기업들의 延邊地域 진출은 나진·선봉지역 진출의 교두보 내지 背後據點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우리 경제의 새로운 資源 供給地와 市場으로 개발하여 統一 이후에는 韓半島와 연계된 民族經濟圈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8) 延邊大學의 부총장을 역임한 바 있는 정관룡교수는 최근 발표한 「中國朝鮮族의 상황으로 본 세계속의 韓民族」이란 기고문에서 「우리가 할 일이라면 남북 모두와 접촉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이용하여 될수록 민족의 화해와 상호신임을 촉진하는 실제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이다.」라고 결론짓고 있다.

(3) 三角協力關係의 限界와 問題點

中國의 朝鮮族同胞들은 中國의 정치, 경제, 사회에 적응해 가면서 우리 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보전해 가야 하는 二重의 부담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지난 2백여년을 이어 온 中國 朝鮮族의 역사는 불가피하게 二重文化, 二重言語, 二重心理를 지닌 中國의 少數民族으로 생존해 가면서 中國에 정착하는 갈등과 고통의 과정이었다. 이같은 朝鮮族同胞들에게 있어서 母國인 南北韓의 분단과 대립은 三重의 갈등과 혼란을 안겨다 주고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이들은 南北韓이 中國의 朝鮮族同胞들을 서로 자기들 편에 끌어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다. 그러므로 자신들은 부득이 南韓의 눈치도 보아야 하고 北韓의 눈치도 보아야 하며, 또한 자신들이 살고 있는 中國의 눈치도 보아야 하는 난감한 처지에 있다고 호소하는 이들도 있다. 이같은 갈등과 혼란으로 中國의 朝鮮族同胞들 가운데는 南北韓간의 상황논리에 적당히 영합하여 편리한 대로 처신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다. 그러므로 南北韓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事業上의 中繼役割을 하고 있는 朝鮮族同胞들이 언제나 韓國企業의 立場과 利益만을 대변해 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현재 中國朝鮮族들의 경제활동은 주로 農業에 집중되어 있으며 非農業 부문에서는 商業, 유흥음식업, 무역업, 제조업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中國이 改革과 開放政策을 실시한 이후 自營業에 뛰어난 朝鮮族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 家族 위주의 경영활동으로 영세성과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다만 延邊 朝鮮族自治州政府산하의 무역업체 및 제조업체로서 대부분 朝鮮族으로 경영진을 형성하고 있는 中企業 水準의 集體企業들 가운데 延邊自治州 政府의 지원하에 대외적 공신력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다. 그러나 이들도 市場經濟하의 경영관리 지식과 경험의 부족으로 사업전망이 확실치 못한 편이다. 그러므로 韓國 기업들이 北韓의 나진·선봉지역 등에 투자진출하는 경우 朝鮮族同胞들

을 사업상의 同伴者로 삼아 三角協力方式으로 합작 진출하기에는 아직 이들의 經濟力量이 미흡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 동안 中國의 朝鮮族들은 中國政府의 少數民族優待政策등에 힘입어 朝鮮族自治州 및 自治鄉등을 운영하면서 언어와 문화를 보존하고 사회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었다. 그러나 中國이 급진적인 改革과 開放政策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만약 경제적 불안정과 사회, 정치적 혼란 등이 야기된다면 中央政府의 少數民族優待政策은 무력해지고 中國 朝鮮族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활동은 물론 이들의 교량적 중개자 역할 및 동반자적 역할은 중대한 위기를 맞게 될지도 모른다는 문제점도 유념해 둘 필요가 있다.

V. 對應方向 및 政策課題

지난 수년간 韓·中經協 관계의 진전과 더불어 현지 韓國投資業體 및 國內企業들은 中國 朝鮮族同胞들을 다양한 형태의 人力으로 활용하여 왔다. 이들은 韓·中간의 오랜 단절과 언어상의 불편을 극복하는데 적지 않은 중개자적 역할과 기여를 해 왔을 뿐 아니라 다수의 朝鮮族同胞들이 현지 한국투자업체에서 근로자의 신분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친척 방문 및 산업기술 연수 등의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朝鮮族同胞들이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들은 우리와 한 핏줄을 나눈 같은 민족인 동시에 대부분 中國에서 태어나 성장한 中國國籍의 外國人이란 신분상의 특성과 이질성등으로 인해 이들과의 관계와 역할이 증대되고 다양화됨에 따라 예기치 못한 새로운 갈등과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中國에 진출한 韓國投資業體에 고용된 대다수의 朝鮮族同胞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 하겠으나 언어생활과 사고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불신과 반목의 갈등관계로 발전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韓國企業人들은 朝鮮族 從業員들이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반면 요구는 높고, 아무런 사전 예고도 없이 직장을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을 개탄하면서 이들을 기피하는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다. 반면 朝鮮族 근로자들은 같은 동포인 韓國企業人들이 자신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거나 지나치게 인색하게 대우할 뿐만 아니라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무단해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원망하는 목소리를 높여 가고 있다.

반면 韓國에 입국한 朝鮮族同胞들 가운데는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불법 체류하면서 영세 중소기업체, 건설현장, 유흥음식점 등에 불법 취업하는 숫자가 줄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산업기술연수 목적으로 입국한 다수의 朝鮮族同胞 근로자들이 직장을 무단이탈하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국내의 인식과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그러나 朝鮮族

同胞들은 韓國 政府當局이 같은 동포인 자신들을 다른 외국인들 보다는 불리하게 입국자격을 제한하는 등 차별하고 있으며 불법체류의 경우도 단순히 외국인으로 분류하여 대우하는데 대하여 심한 소외감과 실망감을 털어놓고 있다. 심지어 韓國에서 고생하여 모은 돈을 사기당하거나 사업주에게 임금도 못 받고 불법체류자로 고발당해 벌금만 물고 추방당하는 등 노동착취와 인권유린 문제등을 제기하는 사례마저 나타나고 있다.

현재 朝鮮族同胞들이 현지 한국투자업체나 국내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은 지난 50년대와 60년대는 물론 심지어 최근까지도 우리가 美國이나 日本 등과의 관계에서 경험했던 과거의 우리 문제라 할 수 있다. 또한 향후 韓·中關係의 발전과 더불어 朝鮮族同胞들과의 바람직한 관계와 역할을 정립해야 할 오늘의 문제인 동시에 南北韓間의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이 본격화되는 경우 北韓同胞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겪게 될 미래의 문제라는 차원에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政策課題인 것이다. 물론 朝鮮族同胞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은 대부분 오랜 시간적·사상적 단절과 문화적·경제적 격차로 인해 파생되고 있는 것임으로 그 격차의 폭을 단시일 내에 메우기는 어려운 과제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인정하고 근본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응의 기본방향은 中國 朝鮮族同胞의 이중적 현실, 즉 中國公民인 동시에 우리 民族인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장기적인 협력관계의 구축을 추구하는 것에 있다고 하겠다. 보다 구체적인 과제로서 中國進出 韓國企業들이 보다 温情主義的인 企業經營方式을 정립하고 地域別 情報共有 協助體制를 모색하는 한편, 민간과 정부의 협력하에 적절한 교육·훈련 방안을 마련하고 延邊地域에 대한 社會經濟的 開發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國內에서는 해외교포관련 민간단체 활동의 활성화, 산업기술연수생 제도의 개선, 차별적 출입국 규제조치의 완화, 해외교포 전담기구의 설립을 정책

과제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基本方向

우리가 在中國同胞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고 中長期的인 共存·協力 관계를 모색하기 위한 출발점은 그들의 현실을 인정하는 것에 있다고 하겠다. 물론 그들은 우리와 언어·문화·역사를 공유한 동일민족이다. 그러나 그들은 대부분 社會主義 中國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교육받고 앞으로 그곳에서 살아가야 할 中國公民, 특히 少數民族 中國公民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사고·행동하고,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 일해주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¹⁾ 결국 우리는 그들의 二重 正體性(dual identity)을 인정한 상태에서, 이웃 국가에 거주하는 同一民族으로서 中長期的인 連繫와 協力を 도모하는 방향으로 관계를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韓國의 政府 및 民間은 한편으로 中國의 朝鮮族同胞가 中國의 國民으로서 中國社會의 발전에 기여하며 그 社會내에서 번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 그들이 韓國과 中國의 中長期的인 協力關係 構築에 적절히 기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노력의 핵심적인 부분은 政府보다는 民間이 담당해야 할 것이며, 政府는 이러한 民間의 노력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支援은 朝鮮族同

1) 우리는 흔히 美國에 이민한 僑胞 2-3세가 美國式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을 당연시하면서도 이민 3-4세에 해당하는 中國僑胞가 중국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들간에 차이가 있다면 中國僑胞가 우리 말을 비교적 잘 한다는 것 뿐이다. 결국 우리는 흔히 中國僑胞가 우리말을 한다는 이유로 그들이 우리와 비슷한 사고방식을 갖는다고 착각하는 실수를 저지른다고 보인다.

胞들이 中國化의 커다란 흐름속에서도 民族의 언어·문화·풍습을 지켜 나가, 장기적으로도 우리와 연계를 가질 수 있는 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2. 相互認識과 姿勢轉換의 必要性

中國에 진출한 韓國 기업인들은 朝鮮族 勤勞者들을 질책하고 개탄하기에 앞서 인내심을 갖고 이들을 이해하고 설득하는 한편 同胞愛와 溫情主義的 經營方式으로 이들을 선도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설사 문제가 있다 하여 손쉬운 解雇의 수단을 남용한다던가 이들의 채용을 기피하는 경향은 상호불신과 반목을 더욱 조장하는 결과가 되기 쉽다. 현지의 韓國 기업인들 가운데는 온정주의적 경영방식과 솔선수범의 企業家 정신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朝鮮族 從業員들의 존경과 자발적 협조를 얻어 企業을 성공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례도 적지 않다.

우선 현지의 韓國 企業人과 管理者들의 인식과 자세의 전환이 필요하며 국내 母企業에서 현지 투자기업에 신규로 管理者를 파견할 때에는 사전에 中國에 대한 지식과 노사관리 방식등에 대한 충분한 教育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韓國業體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中國韓國商會등이 중심이 되어 인사관리 정보를 공유하고 과당 스카우트 경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간다면 韓國 기업인과 朝鮮族 근로자간의 불신과 반목을 어느정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朝鮮族同胞들도 새로운 認識과 姿勢로의 轉換이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中國企業이든 韓國企業이든 간에 회사가 필요로 하는 유능하고 성실한 종업원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朝鮮族同胞들 스스로가 먼저 市場經濟와 企業經營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있어야하며 創意性과 責任感을 갖고 자신의 責務를 다하려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 中國의 朝鮮

族同胞들이 같은 동포인 韓國 企業人들에게 기대를 걸고 의지하려는 생각을 그르다고만 말할 수는 없지만, 지나친 의타심에서 책임은 소홀히 한 채 대우만을 높게 요구한다든가 눈앞의 이익에 급급한 나머지 장기적 안목에서 실력을 기르고 신임을 받으려는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어디서든 환영받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할 필요가 있다.

3. 教育訓練의 必要性

단순히 言語가 통하는 같은 朝鮮族同胞라고 하여 마치 韓國의 근로자들처럼 일해 줄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다. 또한 朝鮮族同胞들을 단순히 값싼 노동력으로 이용하려는 근시안적 자세도 지양되어야 한다. 반드시 朝鮮族同胞들을 유능한 管理者와 技術者로 양성하여 동고동락을 함께하며 企業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식과 이를 위한 투자와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社會主義 體制하에서 성장하였으며 학력, 직업, 연령, 출신지역 등이 천차만별인 朝鮮族同胞들을 현장의 근로자 혹은 관리자·기술자로 양성하자면 반드시 합당한 정신교육과 직무 교육이 필요하다. 먼저 일반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유능한 朝鮮族 人力을 양성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²⁾, 현지투자기업 등에서의 教育訓練을 통하여 中間管理者級 이상의 高級人力 양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훈련은 朝鮮族同胞들이 中國社會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할 뿐 아니라, 우리 기업의 中國進出에 적절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대체로 朝鮮族 근로자들은 市場經濟와 企業經營을 이해하고 배우려는 진취적인 태도, 責任感과 創意力을 지닌 성실한 직무수행 자세, 직장의

2) 특히 韓國語 및 韓國文化, 英語 등 外國語, 技術, 經營 部門의 教育에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발전을 통해 자신의 성장을 실현하려는 職業意識, 눈앞의 금전적 이익보다 能力과 信用을 중요시하는 장기적 안목 등이 부족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같은 意識과 德目は 적절한 教育과 訓練을 통해서만 얻어 질 수 있는 無形의 資産이다. 그러므로 韓國 投資業體들은 朝鮮族 勤勞者들을 위한 다양한 自體 教育訓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韓國業體들이 집중해 있는 山東省의 靑島나 朝鮮族同胞들이 많이 거주하는 延邊自治州의 延吉등에는 민간경제단체 또는 정부기관의 출자로 職業訓練院을 개설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4. 延邊地域에 대한 社會經濟 開發支援

延邊朝鮮族自治州는 吉林省에 속해 있는 일정한 구역내의 自治州이기는 하나 전체 인구의 41%인 약 80만이 朝鮮族이며 中國全體 朝鮮族의 教育과 文化事業을 지도할 수 있는 다수의 關聯機關들이 설치되어 있다. 일부 韓國의 민간기업과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延邊의 教育기관등을 지원한 사례는 있으나 韓國政府의 공식적인 지원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일부에서는 少數民族 문제에 과민한 中國政府를 의식하여 延邊에 대한 지나친 관심의 표시를 禁忌視하는 경향마저 없지 않다. 그러나 앞으로 朝鮮族同胞와의 갈등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경우 韓中關係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政治的 要素를 배제한 순수한 教育文化 事業의 지원은 民間은 물론 政府次元에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韓中關係의 진전과 더불어 朝鮮族同胞들의 역할이 더욱 多樣化되고 專門化될 전망임을 감안해 볼 때 매우 바람직스러운 지원이 될 것이다.

延邊地域은 교통이 불편한 邊境地域이란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山東省 등 다른 지역에 비해 韓國企業의 투자진출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편이다. 전통적으로 1차 산업위주의 낙후한 産業構造를 지니고 있는 延邊

이지만 中國의 改革·開放政策과 때마침 불어온 두만강개발 열기에 부풀어 산업경제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고 있는 延邊同胞들은 한국기업들의 보다 많은 투자진출과 경험관계의 증대를 희망하고 있다. 延邊地域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韓國政府의 지원은 延邊經濟의 發展과 延邊同胞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이며 최근 타지역으로 이주하고 있는 延邊同胞들의 이동현상을 억제하는데도 일정한 작용을 할 것이다. 이는 延邊同胞들과의 관계를 원만히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근본대책의 하나가 될 것이며 나아가 延邊經濟의 역량이 향상되면 장차 南北經協과 交流의 증진에도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5. 關聯 民間團體活動의 活性化

朝鮮族同胞들은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일반 외국인 불법체류자들과 똑같은 대우를 하고 있는 韓國政府 當局의 처사에 대해 몹시 서운해하고 있으며, 특히 불법체류자에 대한 과도한 벌금의 징수에 대해 심한 反感을 표시하고 있다. 심지어 국내에서 비인간적인 차별대우, 노동착취와 인권유린 등의 불법행위를 당하고 분노와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동포들도 있다. 이같은 朝鮮族同胞들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표면화되자 최근 몇몇 종교단체, 사회단체, 학계 등에서는 中國同胞相談所, 中國同胞勞働者센터, 中國同胞法律相談센터등을 개설하고 이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이들 민간단체들은 朝鮮族同胞들이 국내에서 겪고 있는 고통과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關聯 企業體와 政府當局을 직접 방문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을 건의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朝鮮族同胞들이 국내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기초 소양교육 및 각종정보, 나아가 이들이 값싸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등을 제공하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 한다. 朝鮮族同胞에 대한 법적인 지원체제가 미비한 현재의 여건하에서는 불가피하게 政府보다는 民間의 役割이 더욱 중요할 뿐아니라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 이들 민간단체들의 활동은 朝鮮族同胞들을 보호하고 돕는다는 인권차원의 배려는 물론 장차 北韓同胞問題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때도 민족적 차원의 포용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많은 국민의 관심과 지원 하에 활성화되어야 할 사업이다.

6. 研修生 制度 및 出入國管理 政策의 改善

현재 中小企業協同組合 中央會가 주관하고 있는 産業技術研修生 制度는 新設專擔機構의 경험부족과 제도상의 미비 등으로 적지않은 시행착오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本國의 송출기관등에 과도한 보증금과 소개비를 지불하고 선발되어 온 朝鮮族同胞 연수생의 경우, 국내 불법체류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임금수준 등으로 무단이탈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이로 인한 국내의 비난 여론과 함께 중소기업체들이 朝鮮族同胞 연수생을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향후 朝鮮族同胞들의 연수기회가 더욱 좁아지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産業研修生 制度를 적절히 활용하면 朝鮮族同胞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文物을 배우고 母國語를 익히며 경제적 혜택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연수생 제도의 實施 初期부터 적지 않은 차질을 빚고 있어 朝鮮族同胞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의 의미는 크게 퇴색되고 있으며 오히려 새로운 社會問題를 자초한 결과가 되었다. 우선 시급한 대로 中國當局과 협력하여 송출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입국후에는 精神教育과 事後管理를 강화하고 임금 및 수당등을 국내수준에 접근하도록 現實化하는 改善策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朝鮮族同胞들에 대한 출입국 관리정책에 있어서 현재와 같은 차별적인 제한조치가 계속되는한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 朝鮮族同胞들은 입국자격 심사의 엄격성, 친척방문을 55세 이상으로한 연령제한등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入國查證을 발급 받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산업연수생 제도만 해도 朝鮮族同胞들의 便法的 入國手段으로 이용됨으로서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자초하고 있다. 差別的 출입국관리의 엄격한 적용은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불법체류자의 증가는 사후단속은 물론 소재파악조차 力不足인 현행 출입국관리 행정의 한계를 노출시키는 악순환의 반복을 자초한 결과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政府當局은 朝鮮族同胞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規制一邊度의 행정편의주의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朝鮮族同胞들이 합법적으로 故國을 방문할 수 있는 門戶를 더욱 개방하고 사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朝鮮族同胞를 포함한 해외교포 2세와 3세들을 대상으로한 就業研修 비자 발급을 허용하고 留學의 門戶도 더욱 개방하여 세계속의 韓民族으로 육성하는 정책적 배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다른 外國人들과 차별하여 海外僑胞들에게 出入國管理上의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 外交的인 問題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면, 就業비자 및 留學비자 발급의 자격요건에 韓國語의 解得 및 구사 능력자를 우대하는 조항을 두어 運營의 基를 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장차 南北交流의 活性化에 따른 北韓同胞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政策課題의 하나이다.

7. 海外僑胞問題 專擔機構의 設立

中國同胞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적 혼선과 불법체류의 사회문제화는 中國同胞들의 特殊性에도 원인이 있겠으나 근본적으로는 정부의 일관된 僑胞政策과 專擔機構의 不在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의 수는 약 5백만명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僑胞政策의 주무부서인 外務部의 소극적 자세와 關聯業務의 분산

등으로 豫算과 人力이 전반적으로 부족하고, 그나마 해외동포에 대한 支援事業이 施行 部處間에 상호 연관성없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海外僑胞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지역별, 나라별로 차이가 나며 居住國의 少數民族政策 역시 다양하여 우리 政府의 지역별, 국가별 세부 僑胞政策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問題點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海外同胞의 重要性을 재인식하고 관련정책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機構과 人力을 육성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일관성 있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관련예산의 분산과 사업시행의 중복에 따른 예산낭비를 억제할 필요성과 해외동포 사회의 강한 열망등을 고려하여 海外同胞 專擔機構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專擔機構의 형태는 그 동안 가장 많이 거론되었던 國務總理室 산하의 「僑民處」 또는 外務部 산하의 「僑民廳」을 신설하는 방안 등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의 실현이 어렵다면 海外同胞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主體로서 정부출연방식의 「海外同胞財團」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³⁾ 이같은 전담기구가 설립되고 정부의 해외동포정책이 종합적이고도 일관성 있게 추진될 때 中國同胞 문제도 장기적이고도 근본적인 해결의 방향을 찾아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 李宗勳, 海外同胞政策의 改善方案 - 專擔機構問題를 中心으로, 국회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 1994.

〈參考文獻〉

- 가도 다게시, 연변조선족 사회의 위기에 대한 몇가지 생각, 「중국조선족 우렐성연구」, 연변인민출판사, 1994. pp.127-134.
- 經濟企劃院, 韓·中經濟協力便覽, 1994.
- 國家民族事務委員會 經濟司·國家統計局 綜合經濟司(編), 中國民族經濟 (1993), 中國統計出版社, 1993.
- 길림신문, 불신의 장벽양쪽에 - 한국경영인과 중국조선족사이의 합작난 제를 두고, 1994. 11. 3.
- 김광익, “北方僑民에 대한 政策을 위한 論議”, 1993.4, 대륙연구소 발표 논문.
- 金大洸, “中國 少數民族 幹部政策”, 계간 中國研究, 1993년 가을호, pp. 162-182.
- 金斗鉉, 中國의 勞動力現況과 産業人力輸入問題, 「北方經濟研究」 제3호, 한국북방경제학회, 1992. pp.101-112.
- 김 락, 조선족민족의식의 장점과 단점, 「당대중국조선족 연구」, 연변인민출판사, 1993. pp.217-229.
- 김병호, “중국 조선족의 인구발전과 분포변화의 추세”, 東亞研究, 서강대 동아연구소, 1992.12.
- 金成勳, 金泰弘, 沈義變, 동북아경제권- 21세기 국가 경영전략, 비봉출판사, 1992.
- 金成勳外, 동북아시아의 한민족, 도서출판 경실련, 1993.
- 金泳謨(編), 中國 朝鮮族社會 研究, 1992,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 김용범, “중국내 조선족의 국적과 이중정체성”, 北韓, 1992년 10월호, pp. 168-173.
- 金元石, “中國 朝鮮族의 遷入史에 대한 研究”, 東亞研究, 서강대 동아연구소, 1992, 12, pp.211-238.
- 金泰弘, 豆滿江開發과 韓半島統一問題, 「北方經濟研究」 제5호, 한국북방

- 경제학회, 1994. pp.9-24.
- , 韓·中投資協力の 現況과課題, 金時中편, 「韓·中經濟協力の 新構圖」,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 pp.19-38.
- 當代中國의民族工作 編輯部 編, 當代中國民族工作大事記 1949-1899, 民族出版社, 1989, 北京.
- 對外經濟政策研究院 지역정보센터, 中國便覽(증보판), 1994.
- 동북아지역개발연구편찬위원회, 동북아지역개발연구, 연변인민출판사, 1992.
- 리동진, “중국의 민족정책과 조선족: 중소기업합작진출시 상호이해를 위하여”, 中小企業論集, 1993, pp.67~78.
- 문일한, 21세기 한민족의 역할 - 중국에서 한민족의 위상과 향후 담당할 역할, 「세계속의 한민족」,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pp. 365-378.
- 문홍복, 동북아시아 경제권 형성과 동북아시아 조선족문화, 「동북아세아 조선족문화의 계승과 발전」, 연변대학출판사, 1993. pp.107-117.
- 朴承憲(編著), 延邊朝鮮族自治州 工業經濟概觀, 延邊大學出版社, 1993.
- 朴英凡 외, 外國人力の 活用과 政策課題, 중소기업연구원, 1994.
- 朴治正, “中國의 少數民族政策과 朝鮮族의 장래”, 中國研究 건국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1993년 12월, pp.5-36.
- 法務部, 出入國管理統計年報 1993年度, 1994.
-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편) 中國政治經濟事典, 1990, 민음사.
- 徐鎭英, “中國의 少數民族政策-延邊朝鮮族自治州를 중심으로”, 洪承稷 編 延邊朝鮮族自治州研究(1988,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중, pp.87-120.
- 설동훈, 국내거주 이민노동자의 생활실태, 「포럼지」, 제10집, 한백연구재단, 1994. pp.72-75.
- 申一徹, “延邊朝鮮族自治州的 成立過程”, 洪承稷편, 延邊朝鮮族自治州研究(1988,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중, pp.21-54.

- 延邊朝鮮族自治州概況 執筆蕭條編, 延邊朝鮮族自治州概況, 1984, (대륙 문화연구회(1989) 발간본).
- 尹豪, “中國朝鮮族의 人口動向”, 韓國人口學會誌, 제16권 1호, 1993, pp. 19-36.
- 이동욱, 동북아 한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연변동포의 역할, 「동북아시아의 한민족」세미나 자료집, 중앙대 동북아 연구소, 1994. pp. 91-101.
- 李宗勳, 海外同胞政策의 改善策, 국회도서관 입법조사 분석실 현안분석 제92호, 1994.
- 장세화, “중국의 개혁·개방과 ‘조선족’의 역할”, 北韓, 1993년 11월호, pp.90-99.
- 전 우, 중국조선족과 해외한민족의 래왕정황 및 그 발전추세, 「중국조선족 우령성연구」, 연변인민출판사, 1994. pp.135-147.
- 全寅永·金昭中·金旺植·琴喜淵, “中國의 少數民族政策과 政治社會의 安定에 관한 研究: 정치적 충원, 경제발전 및 교육문화정책을 중심으로”, 1994, 서울대학교 지역종합연구소 주최 세미나 발표논문.
- 정관룡, 중국조선족의 상황으로부터 본 세계속의 한민족, 「세계속의 한민족」,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pp.7-22.
- 中國韓國商會, 會員名簿, 1994.
- 韓康隆, 한국계 중국인선원고용실태와 개선책, 해사신문, 1993. 11. 1.
- 한상복·권태환, 중국 연변의 조선족: 사회의 구조와 변화, 서울대학교 지역연구총서1, 1993, 서울대학교 출판부.
- 허용호, “中國 黑龍江省의 朝鮮族社會”, 북한, 1993년 5월호, pp.148-159.
- 허원헌·김하록, 연변조선족자치주 민족구역자치법제건설에 대한 몇가지 문제를 논함, 「當代 中國 朝鮮族研究」 연변인민출판사, 1993, pp.32-44.
- 황승연, 한국방문 중국동포들의 문화적 적응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1994.

China News Analysis, "Autonomy for the Minority Nationalities in China",
Aug. 15, 1989

Erbaugh, M.S., "The Secret History of Hakkas: The Chinese Revolution
as a Hakka Enterprise", Dec. 1992, China Quarterly.

Heberer, Thomas, China and Its National Minorities: Autonomy or
Assimilation, M.E. Sharpe, 1989.

Lee, Chae-Jin, China's Korea Minority, Westview Press, 1986.

〈年鑑〉

吉林統計年鑑 1994, 중국통계출판사.

中國統計年鑑, 各年판, 중국통계출판사.

黑龍江經濟統計年鑑, 1993, 중국통계출판사.

附 録



〈附表 1〉 中國 朝鮮族人口의 地區別 分布

(단위: 人, %)

地 區	第一次 人口調査 (1953. 7. 1)	第二次 人口調査 (1964. 7. 1)	第三次 人口調査 (1982. 7. 1)	第四次 人口調査 (1990. 7. 1)
全 國	1,111,274 (100.00)	1,348,594 (100.00)	1,765,204 (100.00)	1,920,597 (100.00)
北 京	384 (0.03)	2,909 (0.22)	3,905 (0.22)	7,689 (0.40)
天 津	108	-	816	1,788
河 北	68	1,376	1,737	6,250
山 西	24	310	525	1,085
內 蒙 古	6,705 (0.60)	11,280 (0.84)	17,580 (1.00)	22,641 (1.18)
遼 寧	115,719 (10.40)	146,513 (10.86)	198,252 (11.23)	230,378 (12.00)
吉 林	756,026 (68.03)	866,627 (64.26)	1,104,071 (62.55)	1,181,964 (61.54)
黑 龍 江	231,510 (20.83)	307,562 (22.81)	431,644 (24.45)	452,398 (23.56)
上 海	35	245	462	734
江 蘇	25	133	305	916
浙 江	4	28	103	237
安 徽	9	111	228	619
福 建	1	45	55	113
江 西	17	31	133	153
山 東	122	512	939	2,830
河 南	-	246	545	1,099
湖 北	17	112	652	1,874
湖 南	3	56	221	329
廣 東	7	83	154	524
廣 西	-	67	248	199
海 南	-	-	-	70
四 川	10	155	418	611
貴 州	-	9	167	217
雲 南	7	49	96	230
西 藏	-	16	19	11
陝 西	79	338	643	1,056
甘 肅	3	220	415	560
青 海	-	79	245	306
寧 夏	-	113	30	321
新 疆	-	344	320	1,037
其 他	-	9,025	-	-

資料: 各 年度의 人口센서스結果.

〈附表 2〉 朝鮮族人口의 東北地域內 分布推移

〈附表 2-1〉 吉林省 各市·縣의 朝鮮族 人口推移 (延邊自治州 地域 除外)

市·縣	1953年	1964年	1982年
永吉縣	20,663	25,663	42,655
吉林市	8,188	16,436	30,622
舒蘭縣	17,179	22,088	29,619
磐石縣	18,987	21,541	29,545
蛟河縣	20,595	21,489	27,652
海龍縣	13,672	20,706	27,032
柳河縣	13,657	15,376	20,643
長春市	2,120	11,244	18,366
輝南縣	7,400	11,736	16,374
集安縣	17,048	17,270	14,851
長白縣	10,278	10,976	13,153
通化縣	11,489	10,222	11,448
九臺縣	1,753	3,929	11,191
樺甸縣	6,960	5,231	8,814
雙陽縣	1,852	3,056	7,481
渾江市	-	6,176	6,786
通化市	2,790	3,254	5,815
榆樹縣	2,371	2,503	4,427
遼源市	71	1,092	3,674
公主嶺市	3,036	2,430	3,516
東豐縣	1,920	2,178	3,402
撫松縣	1,618	1,619	1,959
伊通縣	2,219	1,047	1,880
前郭縣	798	1,044	1,293
梨樹縣	1,847	782	1,265
德惠縣	362	304	1,084

註：市·縣은 1982年 當時의 행정구역에 따름. 현재 市로된 縣들이 있지만 管轄구역에는 變化가 없음.

資料：各 年度人口센서스 結果.

〈附表 2-2〉

黑龍江省 各 市 · 縣의 朝鮮族 人口 推移

市 · 縣	1953年	1964年	1982年
五 常 縣	18,532	27,998	38,536
寧 安 縣	20,044	25,861	33,207
海 林 縣	25,966	22,487	32,409
哈 爾 濱 市	8,381	20,583	30,609
牧 丹 江 市	9,014	17,596	25,816
密 山 縣	18,421	32,046	23,643
尚 志 縣	12,150	16,303	22,220
湯 原 縣	-	-	21,893
稷 稜 縣	8,454	9,552	16,096
阿 延 縣	8,799	10,982	13,814
延 壽 縣	6,882	8,712	13,186
東 寧 市	9,018	8,617	12,028
勃 利 縣	13,859	11,432	11,633
齊 哈 爾 市	7,583	9,477	10,594
林 南 縣	5,759	7,648	8,315
鐵 力 縣	719	5,090	8,096
佳 木 斯 市	3,667	7,128	7,801
綏 化 縣	3,816	5,110	7,300
樺 川 縣	1,293	8,903	7,221
夢 北 縣	4,509	4,254	6,496
依 蘭 縣	2,337	4,117	6,165
通 河 縣	690	2,875	5,037
方 正 縣	3,355	3,387	4,592
鶴 崗 市	4,208	-	4,518
大 慶 市	2,736	3,227	4,091
伊 木 市	1,408	2,601	3,965
木 蘭 縣	3,597	1,593	3,732
集 賢 縣	1,008	3,347	3,684
虎 林 縣	-	-	3,390
北 安 市	2,750	2,236	3,208
雙 陽 縣	2,032	1,967	2,931
龍 江 縣	953	2,266	2,881
泰 來 縣	1,860	3,195	2,681
七 台 市	467	1,922	2,490
訥 安 縣	1,759	1,798	2,138
賓 州 市	327	1,464	2,025
饒 河 縣	1,370	1,431	1,894
海 倫 縣	1,542	990	1,824
清 河 縣	1,173	1,222	1,818
寶 清 縣	-	-	1,662
賚 寧 縣	1,096	1,283	1,536
海 龍 縣	1,113	1,028	1,489
寶 清 縣	1,042	-	1,484
海 倫 縣	765	994	1,064
清 河 縣	843	321	1,005

資料：各 年度人口센서스 結果.

〈附表 2-3〉

遼寧省 各 市・縣의 朝鮮族 人口 推移

市・縣	1953年	1964年	1982年
撫 順 市	12,313	9,757	23,486
瀋 陽 市	27,579	48,338	21,105
新 賓 縣	13,276	11,638	13,038
開 原 縣	7,413	7,272	9,564
袒 仁 縣	10,662	10,757	7,572
鞍 山 市	2,714	5,363	7,418
鐵 嶺 縣	4,950	4,356	7,149
大 縣	-	-	6,405
寬 甸 縣	11,124	9,017	6,100
清 原 縣	6,747	4,505	5,056
盤 山 縣	1,521	1,899	4,569
鐵 嶺 市	-	-	3,692
鳳 城 縣	5,401	3,306	3,669
撫 順 縣	-	12,752	3,602
遼 陽 市	218	1,066	3,348
新 民 縣	715	1,391	2,461
丹 東 市	1,459	1,627	2,388
本 溪 市	1,352	1,874	2,272
蓋 縣	-	-	2,096
營 口 縣	906	1,515	2,072
大 連 市	507	1,306	2,042
營 口 市	136	392	1,192
東 清 縣	-	-	1,058
燈 塔 縣	-	-	1,057

資料：各 年度人口센서스 結果.

〈附表 3〉 中國의 朝鮮族 自治區域

自治州：延邊 朝鮮族自治州 (吉林省)

自治縣：長白 朝鮮族自治縣 (吉林省)

自治鄉·鎮*

<p>黑龍江省 (19개)</p>	<p>해림현 신안조선족 진, 해림현 해남 조선족향, 영안현 와룡 조선족향, 영안현 강남 조선족향, 영안현 성동 조선족향, 밀산현 하평 조선족향, 밀산현 광개 조선족향, 동녕현 삼차구 조선족향, 탕원현 탕왕 조선족향, 화천현 성화 조선족향, 아관현 영관현 조선족향, 리북현 동명 조선족향, 오상현 민락 조손족향, 계동현 계림 조선족향, 계동형 명덕 조선족향, 상지현 하동 조선족향, 복안시 주성 조선족향, 철력현 연풍 조선족향, 수화시 홍화 조선족향</p>
<p>吉林省 (11개)</p>	<p>교하시 오림 조선족향, 길림시 토성자 만족·조선족향, 유수시 연화 조선족향, 매하구시 소양 만족·조선족향, 매하구시 화원조선족향, 휘남현 루가 조선족향, 류하현 강가정 조선족향, 류하현 상원포 조선족진, 통화현 금두 조선족향, 통화대천원 조선족·만족향, 집안시 양수 조선족향</p>
<p>遼寧省 (12개)</p>	<p>무순시 순성구 전전 조선족진, 무순시 순성구 리석체 조선족진, 신빈 만족자치현 왕청문 조선족진, 무순현 대남 조선족·만족향, 청원만족자치현 남팔가 조선족향, 개원시 팔보 만족시비족 조선족진, 환인 만족자치현 이하 조선족향, 환인 만족자치현 괴마 조선족진, 성양시 우흥구 대광 조선족향, 심양시 동룡구 혼하집 조선족향, 안산시 구부구 송삼대자 조선족·만족진, 관전 만족자치현 하로자 조선족향</p>

* 多民族 聯合鄉·鎮을 포함.

資料：吉林新聞 1994, 11.3.

〈附 錄〉 說問調查 結果分析

1. 說問調查 實施方法

- 본 설문조사는 中國에 진출한 韓國企業들이 朝鮮族同胞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며 그들의 기여가 어떠한지, 또한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되었음.
- 說問紙(뒤에 수록)는 中國韓國商會 會員名簿(1994년 7월 발간)로부터 322개 기업을 추출하여 송부되었으며, 對外經濟政策研究院이 北京과 서울 양쪽에서 회수하였음.
 - 322개 조사대상기업은 무작위 추출을 원칙으로 하되, 朝鮮族 주요 거주지역인 東北3省의 경우 선택비율을 다소 높이고, 山東省 이남지역(山東省 포함)은 선택비율을 다소 낮추었음.
- 설문지는 1994년 11월초 北京에서 발송되었으며, 12월 10일까지 회수된 57개의 회수된 설문을 대상으로 분석이 행해졌음.

2. 회수된 說問(標本)의 性格

(1) 모기업의 형태

구 분	30대 재벌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계
전수	16	11	23	6	56
(%)	(28.6)	(19.6)	(41.1)	(10.7)	(100)

* 기타는 정부투자기관 등임.

- 전체 중국진출 기업과 비교해 볼 때 중소기업의 비중이 다소 낮음.

(2) 진출형태

구 분	지 사	현지투자기업	대표사무소	계
건수	9	41	7	57
(%)	(15.8)	(71.8)	(12.3)	(100)

(3) 진출업종

구 분	음식 료품	섬유 의복	신발 가죽	목재 가구	비철 금속	1차 금속	조립 금속	기타 제조	무역	건설	운수	기타	계
건 수	3	13	3	2	2	2	6	11	5	2	1	4	54
	(5.6)	(24.1)	(5.6)	(3.7)	(3.7)	(3.7)	(11.1)	(20.4)	(9.3)	(7.4)	(1.9)	(3.7)	(100)

—전체 54건중 제조업이 42건(77.8%)으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그중 가장 높은 것은 섬유·의복으로 13건(전체의 24.1%), 기타제조 11건(20.4%), 조립금속 6건(11.1%)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노동집약적 제조업을 중심으로 중국투자가 활발한 것을 반영함.

(4) 고용규모

구분	1인 이상 -100이하	100인 이상- 500이하	500이상	계
건수	28	16	13	57
(%)	(49.1)	(28.1)	(22.8)	(100)

—고용규모 100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이 전체의 50%가량을 차지하고 있음.

(5) 중국내 소재지

구 분	山東	北京	天津	遼寧	吉林*	黑龍江	上海	廣東	浙江	河北	江蘇	계
건 수	9	12	8	7	10	3	1	4	1	1	1	57
(%)	(15.8)	(21.1)	(14)	(12.3)	(17.5)	(5.3)	(1.8)	(7)	(1.8)	(1.8)	(1.8)	(100)

* 이중 8개는 延邊.

-전체 중국진출기업과 비교해 볼때 山東의 비중이 다소 낮고, 吉林과 北京의 비중이 다소 높음.

· 이는 北京의 경우 회수의 용이성이, 吉林의 경우 연구자들이 회수를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할 수 있음.

(6) 중국 진출시점

구 분	90년 이전	91년 이후- 93년 이전	93년 이후	계
건 수	9	22	20	51
(%)	(17.6)	(43.1)	(39.3)	(100)

-91년 이후부터 중국진출이 꾸준히 확대되어 온 것을 반영하고 있음.

3. 朝鮮族同胞 活用現況

(1) 총 종업원 중 조선족의 고용현황

구 분	0-19%	20-49%	50-70%	71-100%	계**
건 수	34	8	5	8*	55
	(61.8)	(14.5)	(9.1)	(14.5)	(100)

* 이중 6개 기업이 延邊所在 기업임.

** 전체 평균은 27.7%.

—총 從業員중 朝鮮族의 비중은 0~19%가 34건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이 고용되어 있으나 延邊의 경우는 대부분이 71~100%의 높은 고용현황을 보임.

(2) 초기 진출과정에서 朝鮮族同胞의 기여도

구 분	큰 도움	약간의 도움	별 도움이 없음	도움보다 피해
건 수	25	27	5	0
(%)	(43.9)	(47.4)	(8.8)	(0)

—정도와 상관없이 도움이 되었다는 답변이 전체 57건 중 52건으로 91.3%를 차지하여 대부분 초기 진출과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됨.

(3) 도움이 있었을 경우 그 도움의 종류(복수선택)*

구 분	A	B	C	D	E	F	계
건 수	40	17	13	7	12	9	98
(%)	(40.8)	(17.3)	(13.3)	(7.1)	(12.2)	(9.2)	(100)

* 복수선택의 경우에는 해당번호를 선택한 모든 기업의 수를 합하여 계산하였음.

- 註 : A.단순통역과 관광안내
 B.시장조사 및 관련정보제공
 C.현지기업인의 소개알선
 D.현지정부상대로 로비활동
 E.상담과정의 구체적 자문 및 중계역할
 F.기타

—“단순통역과 관광안내”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언어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고, 다른 측면도 골고루 선택되었음.

(4) 타 종업원과 비교한 朝鮮族 從業員의 이직율

구 분	높다	비슷하다	낮다	계
건 수	16	25	13	54
(%)	(29.6)	(46.3)	(24.1)	(100)

-조선족 종업원의 이직율이 다른 종업원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5) 타 종업원과 비교한 조선족 종업원의 생산성·기여도

구 분	높다	비슷하다	낮다	계
건 수	23	30	2	55
(%)	(41.8)	(54.5)	(3.6)	(100)

-다른 종업원의 생산성보다는 조선족 종업원의 생산성이 높거나 비슷한 것으로 답하고 있음.

(6) 조선족 종업원의 비증변화 계획

구 분	증가	현수준 유지	감소	기타	계
건 수	8	35	1	3	47
(%)	(17.0)	(74.5)	(2.1)	(6.4)	(100)

-조선족 고용비중에 있어서 현 수준을 유지하려는 기업이 많음을 보여줌.

(7) 각 기업의 조선족 종업원에 대한 만족도

구 분	아주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	아주 불만
건 수	0	23	27	5	1
(%)	(0)	(41.1)	(48.2)	(8.9)	(1.8)

-대부분의 기업이 보통 또는 대체로 만족(50건, 89.3%)하고 있음.

4. 문제점

(1) 조선족 인력을 중간관리자급 이상으로 활용하는데 따른 문제점 (복수선택)

구 분	A	B	C	D	E	계
건 수	38	31	14	4	2	89
(%)	(42.7)	(34.8)	(15.7)	(4.5)	(2.2)	(100)

註: A. 능력있는 조선족 인력의 부족

B. 조선족의 자세에 문제(불성실, 높은 이직율, 과도한 대우요구 등)

C. 한족종업원과의 갈등 우려

D. 다른 한국기업의 스카우트 등 과당경쟁 우려

E.기타

-중간관리자급 이상으로 조선족을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능력있는 조선족의 부족(42.7%)과 조선족의 자세 문제(39.8%)가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조선족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한국 종업원과의 갈등(15.7%)도 적지 않게 지적되고 있음.

(2) 조선족 인력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데 따른 문제점(복수선택)

구 분	A	B	C	D	E	계
건 수	21	26	14	5	1	67
(%)	(31.3)	(38.8)	(20.9)	(7.5)	(1.5)	(100)

- 註: A. 해당지역내 조선족 인력의 부족 및 이동의 어려움(호구문제 등)
 B. 조선족의 자세에 문제(불성실, 높은 이직율, 과도한 대우요구 등)
 C. 한족종업원과의 갈등 우려
 D. 다른 한국기업의 스카우트 등 과당경쟁 우려
 E.기타

-생산적으로 활용하는데 있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문제점은 조선족의 자세문제(38.8%)와 해당 지역내 조선족 인력의 부족(31.3%)이 지적되고 있음.

· 역시 한족 종업원과의 갈등(20.9%)도 많이 지적되고 있음.

(3) 조선족 활용에 있어서의 갈등 경험여부

구 분	있다	없다	계
건 수	26	27	53
(%)	(49.1)	(50.9)	(100)

-갈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

(3-1) 갈등이 있다면 그 종류(복수선택)

구 분	횡령 등 금전적 문제	파업주도 등 노사관계	한족 종업원 과의 갈등	기 타	계
건 수	11	4	11	9	35
(%)	(31.4)	(11.4)	(31.4)	(25.7)	(100)

- 횡령 등 금전적 문제와 한족 종업원과의 갈등이 같은 비율로 지적되고 있음.
- 기타에는 i) 기술을 전수받은 뒤의 잦은 이직 ii) 불성실한 자세 iii) 과도한 대우요구 등이 있음.

(4) 조선족과 한국인들간의 갈등의 원인(복수선택)

구 분	문화적 차이	조선족의 소양 부족	한국인의 오만, 무지	한국인들의 조선족에 대한 과도한 의지	기 타	계
건 수	33	24	19	15	10	101
(%)	(32.7)	(22.8)	(18.8)	(14.9)	(9.9)	(100)

- 언어의 차이 및 사회주의식 사고 등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문제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이어서 조선족 인력의 자질 미흡과 한국인들의 자세 및 능력의 문제가 골고루 지적되고 있음.

- 기타에는 i) 한국기업에 대한 지나친 기대 ii) 조선족의 과도한 요구 iii) 조선족의 수동적 자세 등이 있음.

(5) 한국기업의 조선족 활용방안(복수선택)

구분	A	B	C	D	E	계
건수	22	9	5	9	22	67
(%)	(32.8)	(13.4)	(7.5)	(13.4)	(32.8)	(100)

- 註: A. 각종 지원을 제공하여 적극적으로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
 B. 중국의 한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활용을 줄여야 한다.
 C. 연변 조선족 자치주 등 조선족 집중거주지역에 한하여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
 D. 특별한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
 E. 기타

-조선족의 적극적 활용을 통하여 풍부한 저임노동력과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

-기타에는 i)다른 중국인과 공평한 대우를 하되 우수한 조선족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 ii) 일률적 확대 또는 관심보다는 업종별, 지역별 특수성에 근거한 활용 iii)소수민족문제에 민감한 중국정부 입장을 고려한 활용 iv)활용에 앞서 주인의식과 책임감에 대한 의식개혁 필요 등이 있음.

5. 기타

(1) 조선족 동포가 산업연수생 혹은 기타 경로로 국내에 유입되어 노동력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의견(복수선택)

구 분	확대	의미 들 필요 없음	상대적으로 축소해야	기 타	계
건 수	14	10	20	12	56
(%)	(25)	(17.9)	(35.7)	(21.4)	(100)

-과생문제를 우려해 상대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20건 (35.7%)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이와 반대로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14건(25%)으로 조선족 국내 유입에 대해서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음.

-기타에는 i) 탈선행위나 이직율이 높으므로 제도적 장치 요구됨. ii) 선별적 유입이 요구됨. iii)중국정부가 문제삼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함. 등이 있음.

한국기업의 중국진출과 조선족의 역할 관련 설문조사

I. 진출기업 현황

- 1) 회사명: (원하지 않으면 밝히지 않아도 좋음) 모 기 업: _____
 현지기업: _____
- 2) 모기업 규모: 30대 재벌 계열기업 () 대기업 ()
 중소기업 () 기타 ()
- 3) 진출형태: 지사 () 현지투자기업 ()
 대표사무소 () 기타 ()
- 4) 진출업종 (구체적으로): _____
- 5) 현지 고용 규모: _____
- 6) 중국내 소재지: _____
- 7) 중국진출 시점(사무소·공장 개설시점): _____

II. 조선족 교포 활용 현황

- 1) 귀사의 조선족 교포 고용현황 및 비중:
 - 총 종업원 ()인, 그중 조선족 ()인
 - 고위 관리직 : 조선족 ()인, 총인원중 ()%
 - 중간 관리직 : 조선족 ()인, 총인원중 ()%
 - 기 술 직 : 조선족 ()인, 총인원중 ()%
 - 사 무 직 : 조선족 ()인, 총인원중 ()%
 - 숙련 생산직 : 조선족 ()인, 총인원중 ()%
 - 비숙련생산직 : 조선족 ()인, 총인원중 ()%
 - 통 역 : 조선족 ()인, 총인원중 ()%

- 2) 귀사의 초기 중국진출 과정에서 중국 조선족동포의 도움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큰 도움이 있었다 () ② 약간 도움이 있었다 ()
 ③ 별로 도움이 없었다 () ④ 도움보다 피해가 있었다 ()
- 2)-1 만약 도움이 있었다면 어떤 도움이 있었습니까? (2개까지 선택 가능)
- ① 단순통역과 관광안내 () ② 시장조사 및 관련정보제공 ()
 ③ 현지기업인의 소개알선 () ④ 현지정부상대로 로비활동 협조 ()
 ⑤ 상담과정의 구체적 자문 및 중계역할 ()
 ⑥ 기타 ()
- 3) 귀사의 조선족 종업원의 이직율은 다른 종업원에 비해 어떻습니까?
- ① 높다 () ② 비슷하다 () ③ 낮다 ()
- 4) 귀사의 조선족 종업원의 생산성(기여도)은 평균적으로 다른 종업원에 비해 어떻습니까?
- ① 높다 () ② 비슷하다 () ③ 낮다 ()
- 5) 귀사는 앞으로 조선족 종업원의 비중을 어떻게 조정하려고 계획하십니까?
- ① 증가시킬 계획 ()
 ② 현 수준 유지 ()
 ③ 감소시킬 계획 ()
 ④ 기타 (예: 관리직은 늘리고 생산직을 줄임) ()
- 6) 귀사는 조선족 종업원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아주 만족 () ② 대체로 만족 ()
 ③ 만족도 불만도 아닌 보통 () ④ 대체로 불만 ()
 ⑤ 아주 불만 ()

Ⅲ. 문제점

- 1) 귀사가 중국내 조선족 인력을 활용하는 데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 1)-1 중간관리자급 이상으로 활용하는 경우 (2개까지 선택 가능)
 - ① 능력있는 조선족 인력의 부족 ()
 - ② 조선족의 자세에 문제(불성실, 높은 이직율, 과도한 대우 요구 등) ()
 - ③ 한족 종업원과의 갈등 우려 ()
 - ④ 다른 한국기업의 스카우트 등 과당경쟁 우려 ()
 - ⑤ 기타 ()
- 1)-2 생산직 인력으로 활용하는 경우 (2개까지 선택 가능)
 - ① 해당 지역내 조선족 인력의 부족 및 이동의 어려움 (호구문제 등) ()
 - ② 조선족의 자세에 문제(불성실, 높은 이직율, 과도한 대우 요구 등) ()
 - ③ 한족 종업원과의 갈등 우려 ()
 - ④ 다른 한국기업의 스카우트 등 과당경쟁 우려 ()
 - ⑤ 기타 ()
- 2) 귀사는 조선족 인력을 활용하는 데에 있어서 심각한 갈등·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
- 2)-1 (있다고 대답한 경우) 귀사가 경험한 심각한 문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 ① 횡령 등 금전적 문제 야기 ()
 - ② 파업주도 등 노사관계 문제 야기 ()
 - ③ 한족 종업원과의 갈등 야기 ()
 - ④ 기타(구체적으로:)

- 3) 귀사는 한국인들이 중국내에서 조선족과의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2개까지 선택 가능)
- ① 문화적(언어 포함) 차이 ()
 - ② 중국 조선족의 소양 부족 ()
 - ③ 한국인들의 오만·무지 ()
 - ④ 한국인들의 조선족에 대한 과도한 의존 ()
 - ⑤ 기타 ()
- 4) 전반적으로 한국기업의 중국진출에 있어 조선족을 어떻게 활용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① 각종 지원을 제공하여 적극적으로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 ()
 - ② 중국의 한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활용을 줄여야 한다 ()
 - ③ 연변 조선족 자치주 등 조선족 집중 거주지역에 한하여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 ()
 - ④ 특별한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 ()
 - ⑤ 기타 ()

IV. 기타

- 1) 조선족 동포가 산업연수생 혹은 기타 경로로 국내에 유입되어 노동력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다른 외국인 노동자보다 문제가 작을 것이므로 확대해야 한다 ()
 - ② 다른 외국인 노동자와 비슷한 조건이므로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
 - ③ 오히려 문제가 더 클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축소해나가야 한다 ()
 - ④ 기타(구체적으로:)
- 2) 이밖에 조선족 문제와 관련하여 제기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면 간략히 기술해 주십시오.

KIEP 發刊資料 案內

■ 政策研究

- | | | |
|-------|---------------------------------------|-----|
| 90-01 | GATT 11條國 移行에 따른 政策課題와 對應方案 ('90.03) | 金學洙 |
| 90-02 | EC 經濟統合과 對外貿易政策의 變化 ('90.03) | 閔充基 |
| 90-03 | 換率制度和 外換危險管理 ('90.05) | 金宗萬 |
| 90-04 | 우루과이라운드 知的所有權 協商課題와 우리의 對應方案('90.05) | 孫讚鉉 |
| 90-05 | 韓國經濟의 自由化 現況과 OECD 加入戰略 ('90.06) | 金泰俊 |
| 90-06 | ASEAN 主要國의 貿易·産業政策과 投資環境變化 ('90.09) | 柳在元 |
| 90-07 | 우리나라의 對開途國 中長期 經濟協力 方案 ('90.10) | 金學洙 |
| 90-08 | 美國通商政策의 中長期方向 ('90.10) | 金南斗 |
| 90-09 | 多者間서비스 協商과 우리나라 建設産業의 國際化 ('90.10) | 張義泰 |
| 90-10 | 日本企業의 海外直接投資와 國際化戰略 ('90.12) | 徐相祿 |
| 91-01 | 美日經濟摩擦과 우리의 政策課題 ('91.01) | 姜興求 |
| 91-02 | 主要換率變動의 特性和 政策示唆點 ('91.03) | 金宗萬 |
| 91-03 | EC 貿易構造의 變化 ('91.04) | 金廷洙 |
| 91-04 | 美國金融市場의 構造와 規制制度 ('91.03) | 李長榮 |
| 91-05 | 中國 經濟特區戰略의 評價와 韓國企業의 對應 ('91.04) | 吳勇錫 |
| 91-06 | 蘇聯의 對外貿易 및 金融制度의 改革 ('91.04) | 朴濟勳 |
| 91-07 | 中國의 外國人 直接投資 誘致와 韓國의 進出展望 ('91.04) | 金時中 |
| 91-08 | 우리나라 서비스交易의 構造와 推移 ('91.04) | 李相學 |
| 91-09 | 韓國·臺灣·日本의 換率變動과 輸出競爭 關係分析 ('91.05) | 曹琮和 |
| 91-10 | EC의 直接投資 環境變化와 對應方案 ('91.05) | 閔充基 |
| 91-11 | 韓國의 對外經濟協力에 관한 政策課題와 方向 ('91.07) | 金學洙 |
| 91-12 | 우리나라 세이프가드制度의 改善과 活用方案 ('91.08) | 蔡 旭 |
| 91-13 | 우리나라 서비스産業의 生産性變化와 生産性的 國際比較('91.08) | 俞鎮守 |
| 91-14 | 舊東獨의 價格體系와 市場經濟體制로의 轉換 ('91.08) | 裴眞永 |

91-15	우루과이라운드 金融서비스協商과 證券産業의 競爭力 제고방안 ('91.08)	金泰俊
91-16	폴란드 企業制度 改革과 直接投資與件 ('91.09)	洪裕洙
91-17	韓·美間 直接投資의 구조와 投資環境의 變化 ('91.09)	金南斗
91-18	한국·臺灣·日本의 産業政策과 産業構造調整 ('91.09)	柳在元
91-19	우리나라 株式市場 開放의 效果分析 ('91.10)	金宗萬
91-20	東北亞 經濟協力の 與件과 展望 ('91.12)	共同
92-01	東北亞 地域 貿易構造와 域內 輸出競爭力 比較 ('92.01)	鄭永祿
92-02	貿易관련 政策 및 制度의 現황과 改善方向 ('92.02)	共同
92-03	統獨 1年の 경제적 評價와 展望 ('92.03)	裴眞永
92-04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1] 日本의 貿易障壁 ('92.03)	兪鎭守
92-05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1] 保險産業의 國際化戰略 ('92.03)	蔡 旭
92-06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2] 原產地規程 ('92.03)	韓弘烈
92-07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3] 日本의 輸入品流通과 流通障壁 ('92.03)	趙炳澤 李永俊
92-08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2] 會計서비스産業 國際化 推進方案 ('92.04)	金宗萬
92-09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3] 우리나라 海運産業의 國際化 戰略 ('92.06)	張義泰
92-10	러시아에서의 사유화 進展과 外國人 投資 與件 ('92.06)	朴濟勳
92-11	先進國의 對中 經濟交流 分析 ('92.06)	鄭永祿
92-12	中國의 企業集團 育成現況과 展望 ('92.06)	金益洙
92-13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4] 標準 및 檢査制度 ('92.07)	成克濟
92-14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5] EC의 貿易障壁 ('92.07)	閔充基
92-15	汎유럽經濟圈 形成의 展望과 影響 ('92.07)	金博洙
92-16	OECD 經常貿易外去來 및 資本移動 自由化規約과 韓國의 自由化 現況 ('92.07)	金泰俊

92-17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6] 金融서비스 關聯 障壁 ('92.07)	李長榮
92-18	유럽金融統合과 EC金融市場 進出方案 ('92.07)	李在雄
92-19	東歐 經濟改革의 類型과 成果 ('92.07)	洪裕洙
92-20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4] 流通産業의 開放效果와 對應戰略 ('92.07)	申世敦
92-21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5] 廣告産業의 國際競爭力 提高方案 ('92.07)	李相學
92-22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7] 政府調達 關聯 障壁 ('92.08)	崔仁範
92-23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8] 美國의 貿易障壁 ('92.08)	金南斗
92-24	輸入先多邊化制度의 經濟的 效果 ('92.09)	共 同
92-25	東北亞經濟協力圈 形成을 위한 線形自由貿易地帶 構想과 그 期待效果 ('92.09)	孫炳海
92-26	UR 총점검 ('92.10)	共 同
92-27	換率, 金利 및 貨金變動이 우리나라 輸出에 미치는 영향 ('92.10)	金宗萬
92-28	國內先物去來所 設立·運營에 관한 研究 ('92.10)	共 同
92-29	日本의 産業 및 貿易構造의 變化와 展望 ('92.10)	金昌男
92-30	Korea's Recent Foreign Exchange Rate Systems: ('92.12)	김진천
93-01	GATT 및 主要先進國의 反덤핑制度和 우리나라 制度의 改善方案 ('93.01)	蔡 旭
93-02	우리나라 市場開放政策의 特徵과 效果 ('93.01)	韓弘烈
93-03	中國 國營企業 改革의 展開와 展望 ('93.02)	金時中
93-04	日本의 技術貿易 ('93.02)	俞鎮守
93-05	豆滿江地域 開發構想에 대한 論議와 展望	金學洙
93-06	블럭化時代의 亞·太經濟協力	共 同
93-07	中國의 技術導入 政策과 中日技術協力	吳勇錫
93-08	러시아의 軍需産業 民需轉換에 관한 研究 ('93.03)	朴濟勳

93-09	日本市場에서 韓國의 競爭力 分析 ('93.03)	康仁洙
93-10	日本 換率政策의 方向과 우리나라 輸出入에 미치는 影響 ('93.03)	金宗萬
93-11	日本 自動車産業의 競爭力 強化와 下請分業生産의 役割('93.04)	任千錫
93-12	先物去來 上場品目 選定에 관한 研究 ('93.04)	曹正鉉
93-13	우리의 對舊蘇聯 經濟協力 基本戰略 ('93.04)	李昌在
93-14	外換市場介入政策의 效果分析和 換率政策에 대한 政策示唆點 ('93.05)	金泰俊
93-15	中國의 工業發展戰略과 産業政策 ('93.05)	金益洙
93-16	中國 輸入構造變化와 우리의 對應方向 ('93.05)	鄭永祿
93-17	EC 經濟統合과 우리나라의 輸出構造 變化 ('93.05)	閔充基
93-18	韓美間 産業構造的 特性이 輸出入에 미치는 影響 ('93.08)	成克濟
93-19	NAFTA의 出帆과 美國 輸入市場에서와 韓國과 멕시코의 競爭力 比較 ('93.08)	金尙謙
93-20	EC市場에서의 韓國의 競爭力 分析 ('93.08)	金博洙
93-21	韓·中 環境協力에 관한 研究('93.09)	共同
93-22	知的財産權 國際化의 方向과 課題('93.11)	王允鍾
93-23	日本の 對아시아 技術移轉 戰略과 韓國의 對應 ('93.11)	洪裕洙
93-24	러시아 極東地域의 經濟와 우리의 經濟協力方案('93.11)	李昌在
93-25	UR 총점검(增補版) ('93.12)	共同
93-26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6] 엔지니어링서비스 産業의 現況과 國際化 方向 ('93.12)	孫讚鉉
93-27	南·北韓의 統一에 비추어 본 獨逸 信託管理公社의 役割과 意義 ('93.12)	朴成勳
93-28	臺灣企業 中國投資의 現況과 波及效果 ('93.12)	金時中
93-29	CIS 域內 交易 및 金融關係 分析 ('93.12)	朴濟勳
93-30	日本企業의 對中直接投資의 動向과 戰略 ('93.12)	金益洙
93-31	最近 우리나라의 日本技術 導入現況과 政策方向 ('93.12)	任千錫
93-32	環境關聯 經濟의 手段의 運用 現況 및 展望 ('93.12)	李鎬生

93-33	亞·太經濟協力の 새 方向 ('93.12)	共 同
93-34	交易條件變化와 資本自由화의 效果分析 ('93.12)	表鶴吉 權皓寧
93-35	21世紀를 향한 韓·日間 技術分業과 技術協力の 基本方向 ('93.12)	朴宇熙 森谷正規
93-36	中國의 對外貿易과 韓·中 輸出競爭 ('93.12)	吳勇錫
93-37	資本自由화와 換率政策方向 ('93.12)	孫正植 朴大槿
93-38	東歐改革的 進展과 經濟協力 擴大戰略 ('93.12)	鄭甲泳
93-39	資本自由化에 관한 事例分析：開途國과 先進國의 경험('93.12)	金仁竣
93-40	亞·太經濟協力の 深化方案 ('93.12)	共 同
93-41	東歐 主要國의 民營化 研究 ('93.12)	尹健秀
93-42	우리나라의 對東歐 交易現況과 展望 ('93.12)	權寧燾
94-01	戰略的 提携와 技術革新의 國際化 ('94.01)	洪裕洙
94-02	NAFTA 原產地規程의 意義와 政策示唆點 ('94.01)	韓弘烈
94-03	統一이 東西獨의 産業立地와 産業構造에 미친 影響 ('94.02)	裴眞永
94-04	議題 21과 우리나라의 持續可能開發 戰略 ('94.02)	韓宅煥
94-05	WTO出帆과 新交易秩序-분야별 內容과 示唆點 ('94.07)	共 同
94-06	韓美間 科學技術協力 強化方案 研究 ('94.11)	洪裕洙
94-07	外國人 直接投資의 技術移轉效果에 관한 研究 ('94.11)	王允鍾
94-08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Progress in Conceptualization and in Practice ('94.12)	共 同
94-09	21世紀 東北亞 經濟協力を 위한 推進戰略 ('94.12)	李昌在 編

■ 政策資料

90-01	蘇聯·中國 및 東歐의 變化와 對應 ('90.01)	共 同
90-02	1990年代 國際經濟 環境 變化와 對應戰略 ('90.06)	共 同
90-03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協商的 進展狀況과 우리의 對應方案('90.08)	朴泰鎬

90-04	中國의 經濟改革에 있어서 分權化 및 市場經濟化의 展開 ('90.10)	蘇侖燮
90-05	美國·日本의 金融自由化와 政策示唆點 ('90.11)	李長榮
91-01	北韓의 에너지 需要와 供給 ('91.03)	張榮植
91-02	北韓의 貿易 및 對外經濟 ('91.03)	姜正模
91-03	蘇聯 經濟改革政策과 우리의 對應 ('91.05)	李善煥 方燦榮
91-04	臺灣·日本의 金融自由化와 政策示唆點 ('91.09)	李長榮
91-05	外國人 直接投資의 生産性 效果分析 ('91.10)	崔仁範 玄定澤
91-06	韓國의 對베트남 經濟協力 基本戰略 ('91.11)	金學洙
91-07	蘇聯建設市場과 韓國建設業體의 進出 可能性 分析 ('91.12)	朴康植
91-08	技術障壁에 대한 國際的 論議와 對應方案 ('92.12)	孫讚鉉
92-01	中國工業經濟效率과 工業體制改革에 관한 研究 ('92.01)	共同
92-02	獨立國家聯合의 出帆과 韓·蘇 經濟協力 ('92.01)	朴濟勳
92-03	外國人直接投資의 不振要因과 活性化方案 ('92.03)	金南斗 柳在元
92-04	EEA 創設의 問題點과 域外國들에 대한 影響 ('92.04)	閔充基
92-05	아시아 主要 開發途上國의 非關稅障壁 ('92.07)	魯在峯
92-06	EC 海運産業의 變化와 示唆點 ('92.08)	閔充基
92-07	海外直接投資의 現況과 政策課題 ('92.09)	共同
92-08	클린턴 次期 美國大統領의 經濟政策 ('92.11)	共同
92-09	對內外與件 變化와 韓中經濟協力の 新構圖 ('92.12)	金益洙
92-10	1993年度 國際經濟環境變化展望과 對應戰略 ('92.12)	共同
93-01	南北韓 物資交流와 原產地規程 ('93.05)	韓弘烈
93-02	GATT 最惠國待遇 原則과 南北韓 物資交流 ('93.07)	韓弘烈
93-03	韓國의 無償援助와 有償援助의 連繫方案 ('93.07)	金學洙
93-04	EC 競爭政策 變化와 우리의 對應方案 ('93.08)	閔充基
93-05	최근 世界經濟의 沈滯와 우리經濟에의 示唆點 ('93.09)	共同
93-06	西方의 對러시아 經協전략과 示唆點 ('93.10)	朴濟勳

93-07	主要國의 先物市場 規制定策 ('93.10)	曹正鍊
93-08	國際貿易紛爭의 現況과 GATT의 役割 ('93. 11)	蔡 旭
93-09	主要國의 輸出支援制度 現況과 우리制度의 改善方案 ('93.12)	金準東
93-10	貿易과 競爭政策: OECD의 論議 ('93.12)	金廷洙
93-11	러시아 經濟改革의 進行 狀況과 評價 ('93.12)	李昌在
93-12	地域主義 深化와 韓國의 選擇 ('93.12)	魯在峯
93-13	國內 製造業分野 外國人投資企業의 現況 및 特性 ('93.12)	金寬湍
93-14	日本의 金融自由化와 엔貨의 國際化 ('93.12)	權才重
93-15	競爭政策에 관한 國際的 論議와 獨占禁止法의 域外適用 ('93.12)	兪鎮守
93-16	通貨先物市場 導入에 관한 研究 ('93.12)	金哲三
93-17	OECD 主要國의 科學技術政策 ('93.12)	洪裕洙
94-01	1994年度 世界經濟 展望과 對外經濟政策課題 ('94.01)	
94-02	EC通貨統合의 進展과 波及影響 ('94.01)	曹琮和
94-03	國際金融 環境變化와 企業의 國際金融市場 活用戰略 ('94.01)	曹正鍊
94-04	技術導入과 테크노마트의 活用 ('94.03)	王允鍾
94-05	戰換期의 臺灣經濟 ('94.02)	柳在元
94-06	우리經濟의 國際化 ('94.04)	金博洙 金廷洙
94-07	新三低-舊三低의 比較分析과 政策對應('94.5)	共 同
94-08	主要國의 投資自由地域 運營現況과 우리制度의 改善方案 ('94.05)	金準東
94-09	北韓의 交易現況과 對外經濟政策 ('94.10)	金尙謙
94-10	對日貿易 赤字國의 對應실태와 示唆點-臺灣의 경우 ('94.10)	任千錫
94-11	環境產業의 國際動向 및 政策示唆點 ('94.10)	張台求
94-12	UN 持續開發委員會의 論議現況 및 政策課題 ('94.11)	李鎬生
94-13	1995年度 世界經濟展望과 對外經濟政策課題 ('94.12)	共 同
94-14	서비스產業의 國際化 ('94.12)	王允鍾

- 94-15 서비스交易과 세이프가드 ('94.12) 蔡 旭
 94-16 글로벌化 時代에서의 輸出과 海外直接投資 ('94.12) 金準東

■ 세미나資料

- EC 統合과 政策對應 ('90.1) 共 同
- 우루과이라운드 協商과 우리의 對應方案 ('90.4) 朴泰鎬 編
- 韓國과 社會主義圈의 關係發展 및 南北韓 關係變化의 展望 ('90.6) 吳勇錫 編
- Jang-Won Suh and Jae-Bong Ro (eds.),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The Way Ahead ('90.11)
- EC統合과 우리의 대응방안 ('91.2) 閔充基 編
- Taeho Bark and Wook Chae (eds.), Uruguay Round: Unresolved Issues and Prospects ('91.9)
- Jang-Won Suh (ed.),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Perspectives and Challenges('91.12)
- Chung Ki Min (ed.),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EC and Korea: Problems and Prospects ('92.6)
- Jehoon Park, Russia's Reform an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Russia ('92.9)
- Jin Young Bae (ed.), Two Years Since German Unification ('93.2)
- Chang-Jae Lee, Regional Context for Korea's Dynamism: Certainties vs. Uncertainties ('93.12)
- Bak-Soo Kim, The Asian Dimension of EC Integration ('93.12)
- 94-01 韓日經濟協力の 新構想 ('94.6) 任千錫 編
- 94-02 韓中經濟協力の 新構圖想 ('94.6) 金時中 編
- 94-03 新세계무역체제와 한국 - 서덜랜드 GATT사무총장 초청강연 ('94.09) 孫讚鉉 編
- 94-04 Korea-U.S.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Forum 2 ('94.11) 洪裕洙 編
- 94-05 Trade-Environment Issues and Korea's Alternatives ('94.12) 韓宅煥 編

■ Working Paper

- Chungsoo Kim,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Bodies in the Asia-Pacific: Working Mechanism and Linkages ('90.8)
- Lynn Krieger Mytelka, Strategic Partnering Activity by European Firms through the ESPRIT Program ('90.8)
- Sung Yeung Kwack, Models of Exchange Rate Behavior: Application to the Yen and the Mark ('91.1)
- Taeho Bark, Anti-dumping Restrictions against Korean Exports: Major Focus on Consumer Electronic Products ('91.5)
- Yoo Soo Hong, Implications of Economic Reforms in CEECs for DAEs: with Emphasis on the Korean Case ('91.7)
- Jang Hee Yoo, The ANIEs-an Intermediate Absorber of Intra-regional Exports? ('91.7)
- Taeho Bark, The Uruguay Round Negotiations and the Korean Economy ('91.10)
- Janghee Yoo, Changing World Trade Environment and New Political Economics ('92.9)
- In-Soo Kang, Economic Effects of Import Source Diversification Policy (ISDP) ('93.1)
- Jai-Won Ryou and Byung-Nak Song, Korea's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Southeast Asia ('93.3)
- Sung-Hoon Park, German Economy after Unification-Facts, Prospects and Implications for Korea ('93.6)
- Wook Chae, A Note on Korea's Anti-dumping System and Practices ('93.6)
- Chung-Ki Min, Structural Changes in Korea's Exports and the Role of the EC Market ('93.10)
- Joo-Sung Jun, Tax Implications of International Capital Mobility ('93.12)
- Yoo-Soo Hong, Leveraging Technology for Strategic Advantage in the Global Market : Case of the Korean Electronics Industry ('93.12)

- Chang-Jae Lee,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for Korea-Russian Economic Cooperation ('94.01)
- Je-Hoon Park, Development of Foreign Trade Relations Between Korean and Russia ('94.08)
- Technology Transfer : the Korean Experience ('94.11)

著者略歴

金泰弘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미국 Maryland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제학석사)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 (경제학박사)
韓國經濟新聞 論說委員, 韓國北方經濟學會 會長 歷任
現 東國大學校 貿易學科 教授

金時中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경제학석사)
미국 Brown대학교 대학원 졸업 (경제학박사)
現 對外經濟政策研究院 研究委員

政策研究 94-10

韓中 經濟協力과 在中國 同胞의 役割

1994年	12月	29日	印刷
1994年	12月	31日	發行
1995年	6月	20日	2刷

發行人	柳	莊	熙
發行處	對外經濟政策研究院		
	서울市江南區大峙3洞942-1番地君子빌딩14層-18層		
	電話：528-5555 FAX：528-5511, 5522		
	登錄：1990年 11月 7日 第 16-375號		
印刷	오름시스템(주) 전화：273-7011		

* 本報告書 內容의 無斷 轉載·譯載·複寫書 禁함

ISBN 89-322-1012-8

값 5,000원